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2018. 6.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정 만

●●● 연구참여

연구책임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보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김유찬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영철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심충진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보조

최영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강다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수행 체계	6
제2장 문화재정의 필요성과 문화수요 특성	7
제1절 문화재정의 개념 및 기존 논의	9
1. 정부재정의 기능 변화와 문화재정의 범위	9
2. 문화소비의 특성과 재정투자의 당위성 논의	11
제2절 국민의 기대수준과 현실의 격차	21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21
2. 국민의 문화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실태 분석	29
제3절 소결 : 문화적 국민 수요 확대와 정부의 역할	32
제3장 중기 문화투자 방향과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현안	33
제1절 중기 문화투자 방향	35
1. 중기 문화투자의 특징(국가재정운용계획)	35
2. 문화투자 우선순위 사업 검토(국정과제)	39
제2절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현황	63
1. 일반 현황(중앙정부 예산구조와 문화재정 현황)	63
2. 중앙정부 문화재정의 주요 현안	70
제3절 문화정책 전달체계	77
1.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현황	77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문제점	82

제4장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과 지역의 문화재정 인식 검토	85
제1절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	87
1. 지방분권 추진과 문화재정 역할 변화	87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지방이양 검토시 고려 사항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	93
1. 일반 현황	93
2.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형태별 문화재정 특성	9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인식조사	104
1. 조사 설계	104
2. 조사 결과	105
3. 시사점	119
제5장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운용 사례	121
제1절 프랑스 문화재정운용 사례	123
1. 프랑스 국가재정체계 및 문화정책 동향	123
2. 프랑스 문화분야 재정운용 체계	128
제2절 영국 문화재정운용 사례	136
1. 영국 국가재정체계 및 문화정책 동향	136
2. 영국 문화분야 재정운용 체계	141
제3절 시사점	151

제6장 문화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57
제1절 문화재정운용 개선 원칙과 방향	159
제2절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 개선방안	161
1. 문체부 예산편성 조정 및 성과관리	161
2. 지속가능한 문화재정 확보 노력	169
제3절 재정 및 정책사업 전달 단계 개선방안	187
1. 전달체계 기능 재조정	187
2. 성과관리 중심의 정책사업 지원	193
참고문헌	198
부 록	203
■ 부록 1 : 설문지	203
■ 부록 2 : 문체부 국고보조사업 자체점검	209

표 목차

〈표 2-1〉 정부의 기능별 세출구분	10
〈표 2-2〉 2018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10가지 이유(AFTA 발표)	13
〈표 2-3〉 문화의 효과성 관련 국외 선행연구	17
〈표 2-4〉 문화의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	19
〈표 2-5〉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22
〈표 2-6〉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25
〈표 2-7〉 세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26
〈표 2-8〉 주요 국가(지역)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26
〈표 2-9〉 고령 인구 현황	27
〈표 2-10〉 가구 월 평균소득별 여가활동 개수 및 문화행사 관람률(2016년 기준) ..	31
〈표 2-1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17.1월 기준)	31
〈표 3-1〉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35
〈표 3-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36
〈표 3-3〉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8년 예산안에서의 문화재정 규모 ..	36
〈표 3-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방향과 이행사업	37
〈표 3-5〉 2018년 예산안 편성시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38
〈표 3-6〉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 및 전략 체계	39
〈표 3-7〉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의 내용	41
〈표 3-8〉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43
〈표 3-9〉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43
〈표 3-10〉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44
〈표 3-11〉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44
〈표 3-12〉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45
〈표 3-13〉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	45
〈표 3-14〉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	46
〈표 3-15〉 ‘문화분야에 대한 자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	47

〈표 3-16〉 ‘예술인 권익보장’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47
〈표 3-17〉 ‘공정한 보상체계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48
〈표 3-18〉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48
〈표 3-19〉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49
〈표 3-20〉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49
〈표 3-21〉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0
〈표 3-2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0
〈표 3-23〉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51
〈표 3-24〉 ‘미디어 육성 진흥’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1
〈표 3-25〉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51
〈표 3-26〉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2
〈표 3-27〉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52
〈표 3-28〉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	53
〈표 3-29〉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53
〈표 3-30〉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4
〈표 3-31〉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5
〈표 3-32〉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55
〈표 3-33〉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6
〈표 3-34〉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56
〈표 3-35〉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7
〈표 3-36〉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7
〈표 3-37〉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58
〈표 3-38〉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8
〈표 3-39〉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59
〈표 3-40〉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59
〈표 3-41〉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60
〈표 3-42〉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60
〈표 3-43〉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61

〈표 3-44〉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61
〈표 3-45〉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	62
〈표 3-46〉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62
〈표 3-47〉 정부 재정과 문화재정 규모(2014년~2018년)	64
〈표 3-48〉 국가재정분류 ‘문화 및 관광’ 분야 프로그램 및 소관부처 (2018년도 기준)	65
〈표 3-49〉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07년~2018년)	67
〈표 3-50〉 중앙정부 문화재정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68
〈표 3-51〉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전년대비 증감(2017년 대비 2018년)	70
〈표 3-52〉 부처별 기금 현황(2018년 기준)	73
〈표 3-53〉 문체부 소관 기금의 조성(누계액) 및 운용(당년도) 실적(2014년~2018년)	75
〈표 3-54〉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기금 현황(2018년 기준)	76
〈표 3-5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2018년 기준)	79
〈표 3-5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설립년도 및 목적	79
〈표 3-5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현황(2018 1/4분기 기준, 현원) ..	83
〈표 4-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국정과제	88
〈표 4-2〉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재정 분담 기준 예시	90
〈표 4-3〉 지방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2018년~2018년)	94
〈표 4-4〉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	95
〈표 4-5〉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문화재정(2018년 기준)	96
〈표 4-6〉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2018년 기준)	98
〈표 4-7〉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및 재정활동별 예산규모(2018년 기준)	100
〈표 4-8〉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재정활동별 예산규모 추이(2008년~2018년) ..	101
〈표 4-9〉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재원별 예산규모 추이(2008년~2018년)	102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국비(보조금) 규모(2018년 기준)	103
〈표 4-11〉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106
〈표 4-12〉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	107
〈표 4-13〉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	108

〈표 4-14〉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주요한 예산분야	109
〈표 4-15〉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	110
〈표 4-16〉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	111
〈표 4-17〉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 분야	112
〈표 4-18〉 문화분야 사업 추진 주체	113
〈표 4-19〉 소속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기여도	115
〈표 4-20〉 지역 간 문화격차 체감도	115
〈표 4-21〉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	116
〈표 4-22〉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117
〈표 4-23〉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	117
〈표 5-1〉 프랑스 기능별 세출 현황(MISSIONS DU BUDGET GÉNÉRAL) (2018년 기준)	124
〈표 5-2〉 연도별 프랑스 문화발전협약의 현황	133
〈표 5-3〉 영국 정부 기능별 세출 추이(2012-13~2016-17)	137
〈표 5-4〉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공공유관기관(Public Bodies)	139
〈표 5-5〉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산하기관(ALBs)	140
〈표 5-6〉 ACE 규모별 NPO 예산 현황(16/17)	148
〈표 5-7〉 한국 영국 프랑스 국가별 문화소관 부처 비교	152
〈표 6-1〉 문체부 재정투입 전략(예시)	163
〈표 6-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시 장단점	166
〈표 6-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의 성과목표치 구체성 검토	167
〈표 6-4〉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기금 현황	172
〈표 6-5〉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유형별 주요 사업	188
〈표 6-6〉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산하기관(ALBs)	190

그림 목차

[그림 2-1] 정부재정의 기능	9
[그림 2-2]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21
[그림 2-3]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2016년 기준)	23
[그림 2-4]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증감률(2012년~2017년)	24
[그림 2-5]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8
[그림 2-6]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7년 기준)	28
[그림 2-7]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1순위 기준)	29
[그림 2-8]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행태(2016년 기준)	30
[그림 2-9]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2016년 기준)	31
[그림 3-1] 우리나라 예산과목구조와 국가재정운용계획	63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재정 규모(2014년~2018년)	64
[그림 3-3] 2018년도 중앙정부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그래프 좌) 및 최근 12개년 연평균 증감률(그래프 우)	66
[그림 3-4] 중앙정부 문화재정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68
[그림 3-5]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기금 현황(2018년)	69
[그림 3-6] 정부 총지출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출 추이(2007년~2018년)	71
[그림 3-7] OECD 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구성비(2015년 기준)	72
[그림 3-8]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규모(2018년 기준)	78
[그림 3-9]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2018년 기준)	78
[그림 4-1] 정부 간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비 비교(2018년 기준)	93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	95
[그림 4-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그래프 좌) 및 1인당 문화예산(그래프 우)	97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야별 재정활동별 규모(2018년 기준)	99
[그림 4-5]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재정활동별 예산규모 추이 (2008년~2018년)	101
[그림 4-6] 광역자치단체 문화재정 재원별 예산비중(2018년 기준)	103
[그림 4-7]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1~3순위)	107

[그림 4-8]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1~3순위)	108
[그림 4-9]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주요한 예산분야 (1~3순위)	109
[그림 4-10]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	110
[그림 4-11]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 (1~3순위)	111
[그림 4-12]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 분야 (8~10순위)	112
[그림 4-13] 문화분야 사업 추진 주체	114
[그림 4-14] 소속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기여도	115
[그림 4-15] 지역 간 문화격차 체감도	116
[그림 4-16]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	116
[그림 4-17]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117
[그림 4-18]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	118
[그림 5-1] 프랑스 문화부 소관 문화 미션 프로그램 예산(2018년 기준)	125
[그림 5-2] 프랑스 Drac 설치 현황	130
[그림 5-3] 프랑스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의 절차	132
[그림 5-4] 런던 및 타 지역 NP예산 비중	148
[그림 5-5] 2016-17 영국 문화예술위원회(ACE) NPO 회계정보 분석	149
[그림 5-6] 영국 부처별 공공영역 기관(public body) 현황(2017년 기준)	151
[그림 6-1] 문체부 재정투입 전략(예시)	162
[그림 6-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조정(안)	164
[그림 6-3]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타 기금 전입 현황(2018년 기준)	181
[그림 6-4] 지자체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 사업영역 재정립(안)	191
[그림 6-5] 협약을 통한 사업추진체계(안)	197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 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재정의 양적팽창에 맞물려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 지적

- ④ 문화재정은 경제성장과 문화수요의 확대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2%가 되지 않는 소규모 재정이지만 정부 총지출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④ 그러나 재정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동안 복잡한 회계구조와 재정의 불안정성, 60%이상을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복잡한 재정 전달체계와 재정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관리 미흡 등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분권 강조

- ④ 정부는 국정운영에 요구되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 차원에서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낭비적 재정지출과 부정수급 문제 방지를 위한 재정개혁이 요구되는 실정
- ④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개편, 지역문화진흥기금 마련 등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과거 정부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를 주창하고 있음

■ 증가하는 문화수요, 문화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④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문화적 수요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18년 문화재정은 10여년 만에 첫 하락세로 추세가 전환되었음
- ④ 문화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 구조와 전달체계 상의 한계점과 정부의 지방분권을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목표지향적인 성과체계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문화수요 특성 분석을 통한 문화분야 투자정책 시사점을 도출
 - ⊙ 단순 공급이 아닌 재정효율화 방향으로 확장된 정부재정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문화소비의 특성과 문화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검토하며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문화분야 투자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중기 문화재정 투자방향과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구조 및 현안 분석
 - ⊙ 중앙정부의 재정구조와 문화재정의 특성, 예산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점검과 재원 전달 체계의 검토를 통해 재정구조와 예산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함

- 지자체 문화재정 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해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를 진단
 - ⊙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분야 사업이양 검토 시 고려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특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문화사업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문화재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를 진단함

- 주요국 문화재정운용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재정운용 상의 시사점을 도출
 - ⊙ 주요 국가의 개괄적인 예산 제도를 확인하고, 문화관련 조직(부처)의 역할과 정부 간 관계, 문화분야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와 중앙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함

- 문화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
 - ⊙ 대내외적 문화재정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재정 예산 구조 및 현황 분석, 인식조사를 통한 현실진단, 주요 국가

문화재정운용 시사점을 종합하여 문화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정과제 등 중기 재정 및 정책 계획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언론 등에서 발간 및 보도한 자료,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자료를 분석함
- ④ 문화의 특징과 문화경제학 등에서 논의된 공공투자 관련 선행연구, 각 국가별 문화행정체제와 문화정책의 경향, 그리고 문화재정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각국 홈페이지, 각종 정부백서, 통계자료 등을 검토함

■ 전문가 자문 및 연구협의회 운영

- ④ 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그룹 자문 회의와 연구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따른 문화재정 대응 방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문화사업 관련 담당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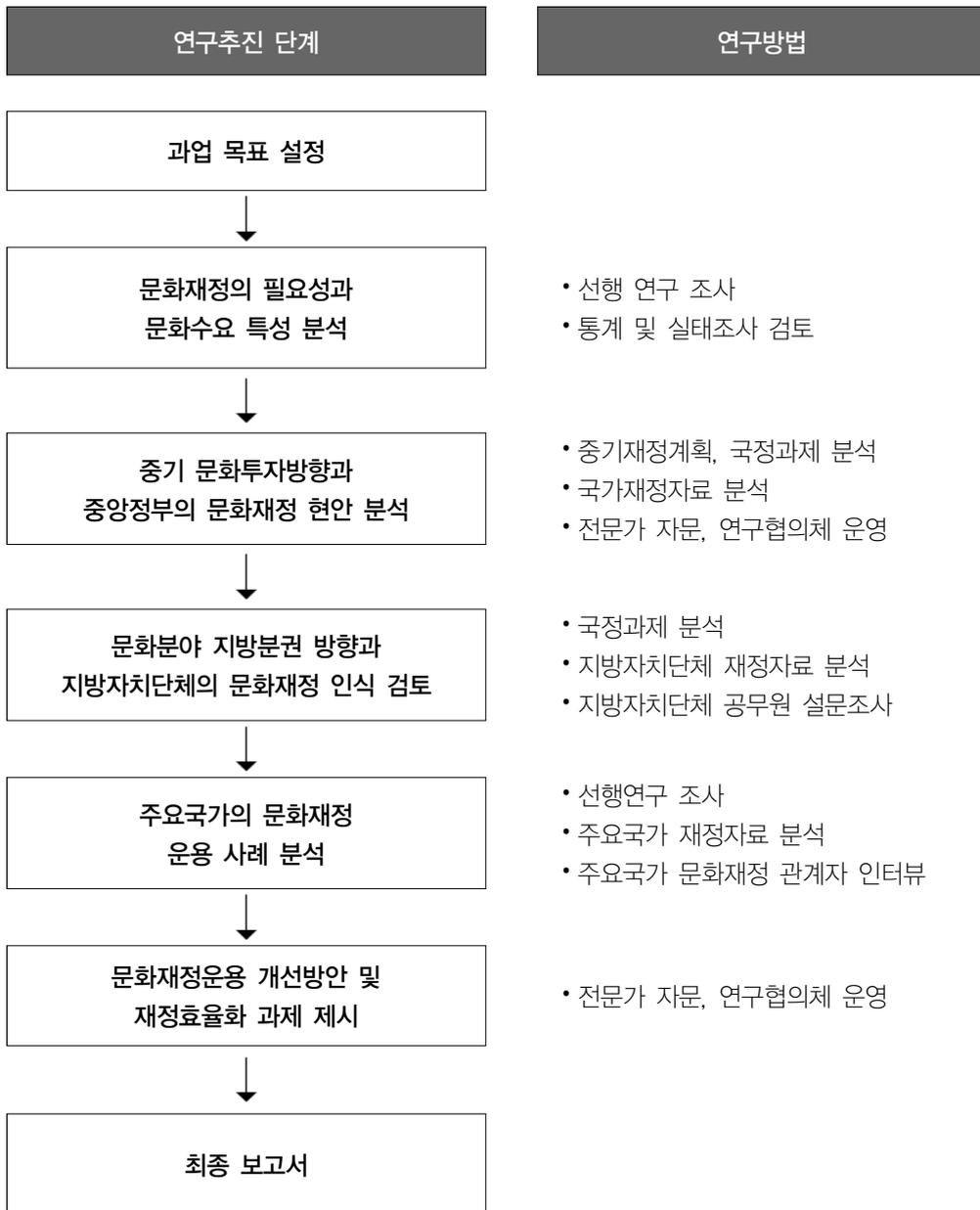
- ④ 지역에서의 문화재정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정부 간 역할,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문화관련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함

■ 주요국 현장 사례 조사

- ④ 경제사회적 환경이 한국과 유사하고 문화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문화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계량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요인을 심층 파악하기 위한 현장 사례 조사를 실시함

3. 연구 수행 체계

🕒 연구기간 : 2017년 11월~2018년 6월(7개월)





제 2 장

문화재정의 필요성과 문화수요 특성

제 1 절 | 문화재정의 개념 및 기존 논의

제 2 절 | 국민의 기대수준과 현실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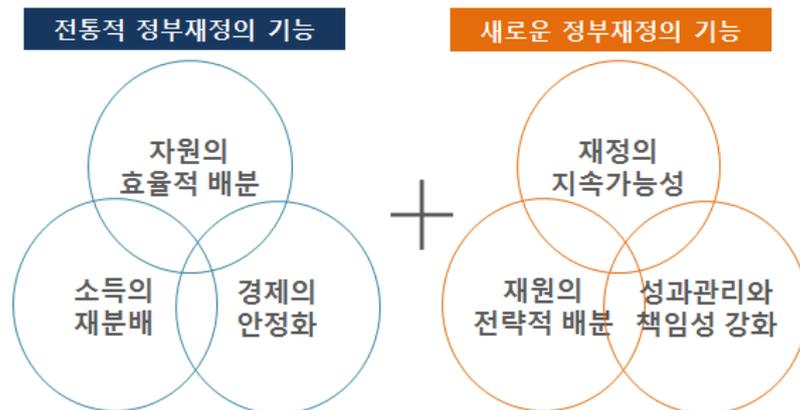
제 3 절 | 소결 : 문화적 국민 수요 확대와 정부의 역할

제1절 | 문화재정의 개념 및 기존 논의

1. 정부재정의 기능 변화와 문화재정의 범위

▣ 정부재정의 기능 확장 : 공급 중심 → 효율성, 경쟁력 추구

- ④ 20세기 들어 정부는 예산 부족, 실업률 증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민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확장됨
- 전통적인 정부재정의 기능은 1) 시장에 의해 공급 불가능한 공공재 생산 및 시장실패 치유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소득의 재분배, 3) 예산 규모 또는 재정수지 조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화 등임(Musgrave, 1959)
-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재정의 기능은 1)안정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 2) 한정된 재원에 대한 전략적 배분, 3) 재정지출의 성과관리와 책임성 강화 등임(Schick, 1997)



[그림 2-1] 정부재정의 기능

- ④ 즉 오늘날 정부는 단순 공급자에서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등의 기준에 의해 정부의 재정활동이 평가되어야 하는 적극적인 정책 실행 주체로 변화되었음

- ④ 과거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방 및 경제 분야에 집중되었다가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중시되면서 문화, 사회복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분야로 확대되었고 적극적이고 경쟁력을 추구하는 정부관을 형성하고 있음
- ④ 따라서 정부 재정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개별적인 조세 정책과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함(국회예산정책처, 2018)

■ 문화재정의 범위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문화

- ④ 재정의 범위는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문화재정은 광의의 문화로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전반을 포괄하고 있음
 - ④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별 세출 구분 16개 분야 69개 부문 중 ‘문화 및 관광’ 분야(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를 ‘문화재정’으로 표현하고 있음
- 2007년 이전 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2007년 정책 분야별 성과관리를 위해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편성이 적용되면서 유사한 부처 사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고 1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됨

〈표 2-1〉 정부의 기능별 세출구분

16분야 69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60. 문화 및 관광	090. 보건	140. 국토및지역개발
011 입법및선거관리	061 문화예술	091 보건의료	141 수자원
012 국정운영	062 관광	092 건강보험	142 지역및도시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63 체육	093 식품의약안전	143 산업단지
014 재정·금융	064 문화재	100. 농림수산	150. 과학기술
015 정부자원관리	065 문화및관광일반	101 농업·농촌	151 기술개발
016 일반행정	070. 환경	102 임업·산촌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20. 공공질서및안전	071 상하수도·수질	103 수산·어촌	153 과학기술일반
021 법원및헌재	072 폐기물	104 식품업	160. 예비비
022 법무및검찰	073 대기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1 예비비
023 경찰	074 자연	111 산업금융지원	
024 해경	075 해양환경	112 산업기술지원	

16분야 69부문

025 재난관리	076 환경일반	113 무역및투자유치
030. 통일·외교	080. 사회복지	114 산업진흥·고도화
031 통일	081 기초생활보장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32 외교·통상	082 취약계층지원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40. 국방	083 공적연금	120. 교통및물류
041 병력운영	084 보육·가족및여성	121 도로
042 전력유지	085 노인·청소년	122 철도
043 방위력개선	086 노동	123 도시철도
044 병무행정	087 보훈	124 해운·항만
050. 교육	088 주택	125 항공·공항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9 사회복지일반	126 물류등기타
052 고등교육		130. 통신
053 평생·직업교육		131 방송통신
054 교육일반		132 우정

- ④ 문화재정이 포괄하는 범위는 정권교체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문화재와 문화예술정책에서 출발하여 93년 체육분야 포함, 94년 관광분야 포함 및 문화산업정책이 본격 시작되었음
- ④ 현재의 문화재정은 국가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목적으로 한 국가 재원 예산 계획에 대해 재원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2. 문화소비의 특성과 재정투자의 당위성 논의

1) 문화소비의 특성

□ 물질 풍요의 사회에서 문화가 소비의 중요한 대상으로 주목

- ④ 문화 소비(cultural consumption)는 문화적 향유를 소비에 적용한 정의로 물질이 풍요한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가 중요한 소비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자 부상한 개념
- 인류 사회가 농촌 사회, 산업사회, 경제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물질이 풍족한 사회에 진입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도 소비의 대상이 되는 문화 소비 시대 도래(Toffler, 1964)

■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경험)이 문화소비의 지배적인 효용

- ④ 상징물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효용보다 경험하는 과정 자체에서의 효용이 더 큰 경험적 소비의 특성으로 인해 무형적이고 기억으로 확인 가능한 경험재적 특성을 지님
- ④ 경험재는 본인이 직접 소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비(실용 소비, 물질 소비)와 달리 다른 사람이 대신 소비할 수 없으므로 돈보다 시간 할당이 중요하고 물리적, 인지적 노력이 요구됨
 - 경험재(experience goods)이자 가치재(merit goods)인 '문화'는 타 영역과 달리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일단 경험하기 전에는 만족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 조건임

■ 지속적인 경험에 의해 취향과 선호가 개발

- ④ 일단 경험하기 전에는 그 결과(만족)를 알기 어렵고 지속적인 경험에 의해 취향과 선호가 개발됨
 - 예를 들어 전시, 공연, 여행 등과 같은 문화 소비는 실제로 경험해 보고 감성적 충족과 행복을 느껴보아야 문화 소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것이므로 진입장벽이 높음

2) 문화재정 투입의 당위성 관련 기존 논의

■ 공공재 및 가치재(Merit Good)로 시장 보완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중요

- ④ 공공재 및 가치재(Merit Good)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문화서비스에는 시장 보완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중요하며, 특히 문화분야 민간투자나 기부가 비활성화된 국가에서는 필수적 수단임
- ④ 문화서비스는 그 재화의 특성상 시장경제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공공재 및 가치재(Merit Good)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 보완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중요
- ④ Baumol과 Bowen 비용질환(Cost Disease) 가설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노동집약적이고 기술 발달에 의한 노동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로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여타 분야와의 격차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동 분야

의 발전 저해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내재

- ④ Netzer(1978)의 문화예술의 긍정적 외부효과에 의하면 예술 장르 간 상호의존적으로 물자 이동, 고용기회가 교환되고, 문화예술의 보존이 미래세대까지 이익을 주며, 지역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소임
 - 도서관 및 예술회관 건립, 문화적 도시재생의 결과로 해당 지역에 관광객이 증대하고 이로 인해 지역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영역은 경제적 배후효과를 가져옴
 - 더하여 국가 및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함
- ④ 미국예술연합(American for the Arts: AFTA)¹⁾가 매년 발표하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10가지 이유(10 Reasons to Support the Arts, 2018)에서는 예술은 인류의 근원이자 사회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요소임을 밝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표 2-2〉 2018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10가지 이유(AFTA 발표)

- ① 예술은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향상시킨다. 조사에서 전체의 63%는 예술이 “매일의 경험을 넘어서 자신을 위로하게 한다”고 응답했고, 73 %는 예술이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 ② 예술은 공동체를 통합시킨다. 미국인의 67%는 “예술이 연령, 인종 및 민족성에 상관없이 지역 사회를 통합시킨다”고 응답했고 62%는 예술이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였다.
- ③ 예술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 예술계 학생들은 GPAs 점수가 높고 탈락률이 낮고 이러한 학업 성취도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는 결과이다.
- ④ 예술은 경제를 강화한다. 미국의 예술 및 문화 상품은 2015년에 210억 달러의 국제 무역 흑자를 포함하여 764억 달러의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예술은 교통, 관광 및 농업 보다 국가 경제(GDP의 4.2 %)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출처 : 미국 경제분석국,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비영리 예술 산업은 매년 1,663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한다. 단체와 관객의 지출은 4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75억 달러의 정부 수입을 창출한다.
- ⑤ 예술은 지역에 관광객 유입을 통한 수입을 창출한다. 비영리 예술 행사 참석자는 입장료 이외에 행사 당 1 인당 31.47달러 상당의 식사, 주차 및 베이비시터와 같은 지역 상업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지출을 한다. 참석자의 34%가 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밖에서

1)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의 강력한 후원자이자 국가의 문화관련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연구하는 기관

살고 있고 그들의 이벤트 관련 지출은 평균 47,57 달러이다. 예술관련 여행자는 이상적인 관광객이며 더 오래 머무르면서 진정한 문화적 경험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 ⑥ **예술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발시킨다.** 창의성은 컨퍼런스 보드의 Ready to Innovate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리더가 추구하는 상위 5가지 기술 중 하나이다. 72%는 채용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는 다른 과학자보다 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17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⑦ **예술은 창조 산업을 주도한다.** Creative Industries는 비영리 박물관, 교향악단, 극장에서 영리 영화, 건축 및 디자인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사업이다. Dun & Bradstreet 2017년 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예술 창작 또는 유통과 관련된 사업은 673,656건으로 전체 사업의 4.0%, 전체 직원의 2.0%를 차지한다.
- ⑧ **예술은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한 도시에서 예술의 집중이 시민 참여, 사회적 응집력 향상, 아동 복지 향상, 빈곤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 ⑨ **예술은 건강 관리를 향상시킨다.** 전국의 의료기관 중 거의 절반이 환자, 가족 및 직원을 대상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환자의 치유 효과, 입원 기간 단축, 통증 관리 개선, 투약 감소를 위해 78%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⑩ **예술은 군대의 건강과 행복을 지원한다.** 예술은 군대 징병들과 재향 군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한다.

■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과 관련된 가치를 우선함에 따른 문화적 가치 중요

- ①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s Paradox)로 알려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후속연구들에 의하면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는 기본욕구(의식주) 이상의 상위 욕구 충족이 필요(Inglehart 1997; Kenny 1999; Frey and Stutzer 2002; Layard 2003, 2005)
- ② 즉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사람들은 효율성보다는 감성적 만족감을 중시하고 삶의 질에 중점을 두는 탈물질주의(post materialism)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됨(Inglehart, 2008)
 - 탈물질주의는 경제성장, 치안, 국방과 같은 삶의 양적인 측면 보다 직접 참여, 발언권 신장, 미적 추구, 자아실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가치에 우선성을 두는 경향을 말함(Inglehart, 1990; 1997)
- ③ 현재 한국은 1인당 GDP 2만 9천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상위 욕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보다 문화적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더 큰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3) 문화의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중심으로

■ 문화관련 활동의 참여와 삶의 질 간에 긍정정인 영향 관계

- ④ Enzo & Pier et al(2010)는 이탈리아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문화예술참여 및 문화소비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화 참여 및 소비 정도가 높은 지역의 거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④ Matarasso(1997)는 6가지 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커뮤니티차원의 예술참여의 사회적 영향력 검증을 통해 개인적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은 동기를 부여하여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공포와 고립 또는 긴장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며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④ Coffman & Adamek(1999)은 52개 라이브 밴드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이들의 삶에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삶의 질의 영역 중 육체적,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④ Wood & Smith(2004)는 공연에 참여하는 관객과 예술가의 정서적 영향력과 유대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연에 참여한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정서적 탄력성(an injection of resilience)과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이 공연을 통하여 생산된다고 파악하였고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힘
- ④ Michalos(2005)는 Prince George British Columbia(CA)에 거주하는 315명의 18세 이상의 거주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예술과 관련된 66개의 활동을 정의하고 예술참여 빈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활동이 삶의 질에 5%~11%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함
- ④ Michalos & Zumbo(2000)는 삶의 질과 여가활동이 갖는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문화예술참여가 긍정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만족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 ④ Silverstein & Parker(2002)는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년층의 10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하여 여가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영역별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④ Fujiwara(2013)는 영국의 문화매체부가 수행하는 Taking Part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박물관 관람 여부가 행복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이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 참여 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④ Tepper et al(2014)는 미국의 3개의 national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예술 활동과 삶의 질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예술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하며, 삶의 변화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타인에 대하여 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점과 단순히 예술 활동을 관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술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창작 활동을 할 경우 삶의 질이 제고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예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함
- ④ O'Brien (2010)은 영국의 CASE 프로그램(the Culture & Sport Evidence Program)을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추정하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 관람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삶의 질의 증가가 연간 가구당 9000파운드의 소득보상(income compensation)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④ Wheatley, Bickerton(2017)는 예술,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와 참여 간에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예술,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 참여는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주며, 삶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일반적인 행복도 있음을 밝힘

〈표 2-3〉 문화의 효과성 관련 국외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연구 대상	연구 결과
Enzo&Pier et al(2010), Italy	문화 참여 및 소비와 개인의 안녕감 사이의 관계	이탈리아 내 Bolzano와 Siracusa 거주민3,000명 (여자-1,651, 남자-1,349)	문화 참여 및 소비 정도가 높은 지역의 거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심리적 안녕감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Matarasso (1997), U.K	6가지 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커뮤니티차원의 예술참여의 사회적 영향력 검증: 개인적 성장/사회적 응집력/공동체의 역량강화와 결정력/지역적 이미지와 정체성/비전과 환상/건강과 웰빙	아마추어, 커뮤니티 차원의 예술 참여 구성원/(600명 중 513명이 설문조사 참여)	문화예술 활동은 동기를 부여하여 협동심을 증진시키고, 공포와 고립 또는 긴장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며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Coffman& Adamek(1999), N. America	관악기 밴드 참여가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음악창작활동을 하는 노년층(52개 밴드단체의 멤버)	문화예술 참여 활동이 삶의 질의 영역 중 육체적,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
Wood& Smith(2004), U.K	“정서적 콘텐츠”의 맥락으로서의 라이브 공연, 특별히 정서적 안녕감 연구	라이브공연에 참여한 예술가와 관객	정서적 탄력성(an injection of resilience)과 안녕감(sense of well-being)이 공연을 통하여 생산된다고 파악, 이러한 요소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Micahlos (2005), N. America	거주자들의 예술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된 삶의 만족 측정	성인-캐나다 프린스조지 거주자(2500가구 무작위 표본 추출 대상 중 315 가구 (13%) 응답)	예술과 관련된 66개의 활동이 삶의 질에 5%~11%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함
Michalos& Zumbo(2000), N. America	여가시간 활동의 건강, 안녕감 등의 전반적인 영향측정과 이러한 활동의 영향력 설명, 개인의 삶의 인지된 삶의 질 측정	성인-캐나다 프린스조지 거주자(2500가구 무작위 표본 추출 대상 중 440가구 (17%) 응답)	문화예술참여가 긍정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만족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 도출
Silverstein & Parker(2002), Sweden	삶의 질에 대한 회고적 접근으로 지난 10년간 여가활동을 통한 변화 연구(스웨덴)	노년층 (1906~1915생 324명)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영역별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연구 대상	연구 결과
Fujiwara(2013), U.K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Taking Part survey	문화예술 관람이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 참여 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Tepper et al(2014), N. America	표본 간의 예술적 관행과 삶의 질 간의 상관 관계	DDB Needham Life Style Survey (DDB), Double Major Student Survey, Strategic National Arts Alumni Project (SNAAP)	예술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하며, 삶의 변화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타인에 대해 더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예술 활동의 직접참여의 경우 삶의 질이 제고됨
O'Brien (2010) U.K	영국의 CASE 프로그램(the Culture & Sport Evidence Program)을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의 가치를 추정	CASE 프로그램(the Culture & Sport Evidence Program)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영화 혹은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이 삶의 질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Wheatley, Bickerton, (2017) U.K	예술,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의 참여와 참여 간에 관계 분석	Understanding Society Wave 2, (2010-2011)에서 추출한 사회 조사 데이터	예술, 문화 및 스포츠의 참여는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주며, 삶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일반적인 행복도 있음을 밝힘

■ 국내에서도 문화활동과 삶의 질, 행복에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

- ④ 양혜원(2013)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OECD 22개 국가들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한 결과 문화재정 비율의 확대가 2년 뒤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
- ④ 김경식, 이루지(2011)의 연구에서 2010년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원자료 남은영 이재열분석 결과 여가활동 정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수록 행복은 높은 반면,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행복의 근원이 되는 여가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에 참가하고, 활동 빈도, 시간,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여가활동에 참가하도록 배려하는 여가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

- ④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2012)는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휴식이나 오락과 같은 소극적,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해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을 밝힘
- ④ 조성경, 김세준(2012)은 서울의 문화자원 밀집지역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연예술 관람빈도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 ④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는 2012년 여가활동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유형에 따라 여가만족도 및 행복의 차이가 있고, 여가유형 중 적극적이면서 활동적인 여가 유형의 경우에만 여가만족 및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함
- ④ 서우석(2015)은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여가활동이 저소득층의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행복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④ 최상미, 전재현, 정무성(2015)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화 복지프로그램 이용기간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주관적 사회통합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문화의 효과성 관련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연구 대상	연구 결과
양혜원(2013)	문화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연구	OECD 22개국 패널 자료	문화재정 비율의 확대가 2년 뒤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
김경식, 이루지(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의 관계 연구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여가활동 정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수록 행복은 높은 반면,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함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2012)	여가활동 유형과 참여 정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문화예술활동, 스포츠참여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휴식이나 오락과 같은 소극적, 수동적 여가활동에 비해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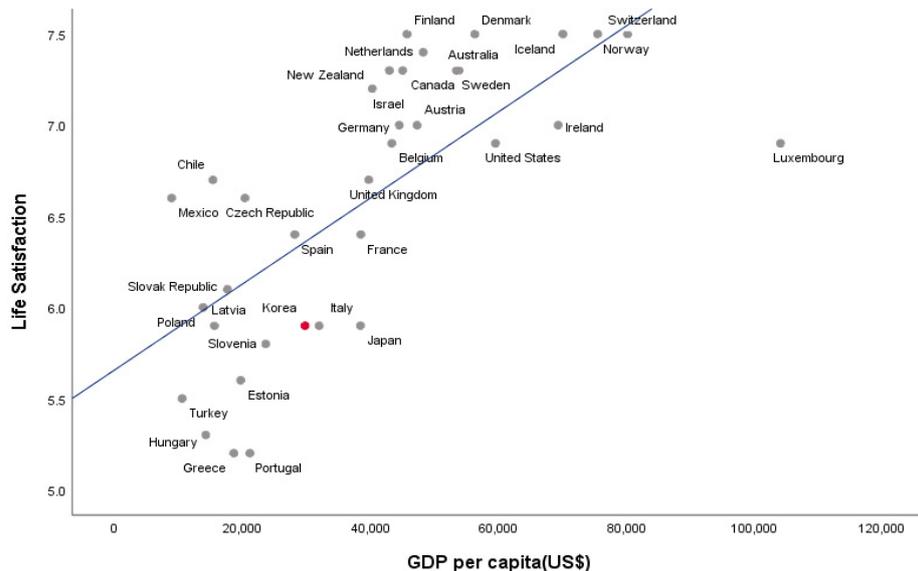
연구자	연구 주요내용	연구 대상	연구 결과
조성경, 김세준(2012)	공연예술 관람빈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울 문화자원 밀집지역 대상 일반인 322명	공연예술 관람빈도가 삶의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됨
이명우 · 홍윤미 · 윤기웅(2016)	여가활동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2년 여가활동실태조사 자료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유형에 따라 여가 만족도 및 행복의 차이가 있고, 여가유형 중 적극적이면서 활동적인 여가 유형의 경우에만 여가만족 및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함
서우석(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 분석 저소득층 집단	문화여가활동이 저소득층의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통해 행복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최상미, 전재현, 정무성(2015)	사회통합적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13명	문화 복지프로그램의 이용기간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매개로 주관적 사회통합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 국민의 기대수준과 현실의 격차

1.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 2018년 1인당 GDP 3만불 달성 전망에도 낮은 삶의 질 수준

- ④ 2017년 1인당 GDP(국내 총생산량)는 2만 9,743달러로 집계되었고, 2018년에는 1인당 GDP 3만달러 시대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성장 만큼 삶의 질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임
- ④ 대체로 경제지표(GDP, GNI)가 올라갈수록 삶의 질도 함께 상승하나 한국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경제성장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2017년 기준 OECD BLI(Better Life Index) 지수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한국은 35개 국가 중 26번째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 OECD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주 1)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2017년 OECD의 BLI 지수 중 Life Satisfaction 점수임

2) 파란선은 회귀선을 의미($y=5.66+2.36E-5*x$, $R^2=0.503$)

[그림 2-2]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표 2-5〉 GDP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2017년 기준)

(단위 : 점, US 달러)

국가명	삶의 만족도	1인당 GDP	국가명	삶의 만족도	1인당 GDP
Australia	7.3	53799.9	Korea	5.9	29742.8
Austria	7	47290.9	Latvia	5.9	15594.3
Belgium	6.9	43323.8	Luxembourg	6.9	104103
Canada	7.3	45032.1	Mexico	6.6	8902.8
Chile	6.7	15346.4	Netherlands	7.4	48223.2
Czech Republic	6.6	20368.1	New Zealand	7.3	42940.6
Denmark	7.5	56307.5	Norway	7.5	75504.6
Estonia	5.6	19704.7	Poland	6	13811.7
Finland	7.5	45703.3	Portugal	5.2	21136.3
France	6.4	38476.7	Slovak Republic	6.1	17605
Germany	7	44469.9	Slovenia	5.8	23597.3
Greece	5.2	18613.4	Spain	6.4	28156.8
Hungary	5.3	14224.8	Sweden	7.3	53442
Iceland	7.5	70056.9	Switzerland	7.5	80189.7
Ireland	7	69330.7	Turkey	5.5	10540.6
Israel	7.2	40270.3	United Kingdom	6.7	39720.4
Italy	5.9	31953	United States	6.9	59531.7
Japan	5.9	38428.1			

자료 : OECD Statistics; World Bank Open Data

주 :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OECD의 BLI 지수 중 Life Satisfaction 점수임

■ 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수요 확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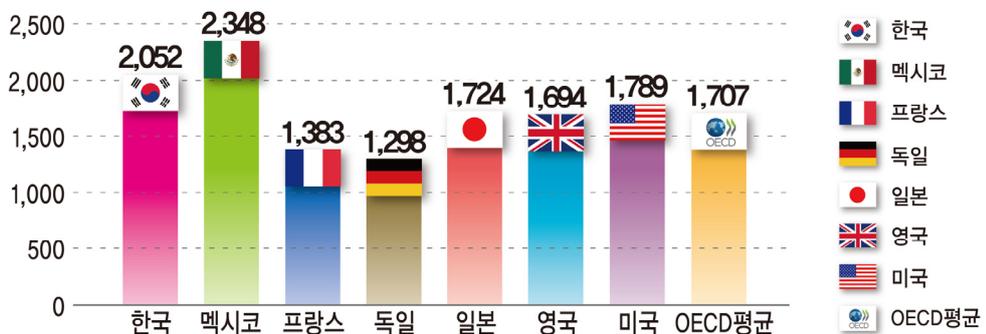
- ④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²⁾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휴일근로 수당의 할증률을 50%로 확정하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여 유급휴일로 의무화됨

2) 국회 본회의 통과(2.28) → 국무회의 의결(3.13) → 법제처 공포(3.20) → 시행('18.7.1.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 5)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⑤보건업
-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 7) 부대의견 및 부차: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 지원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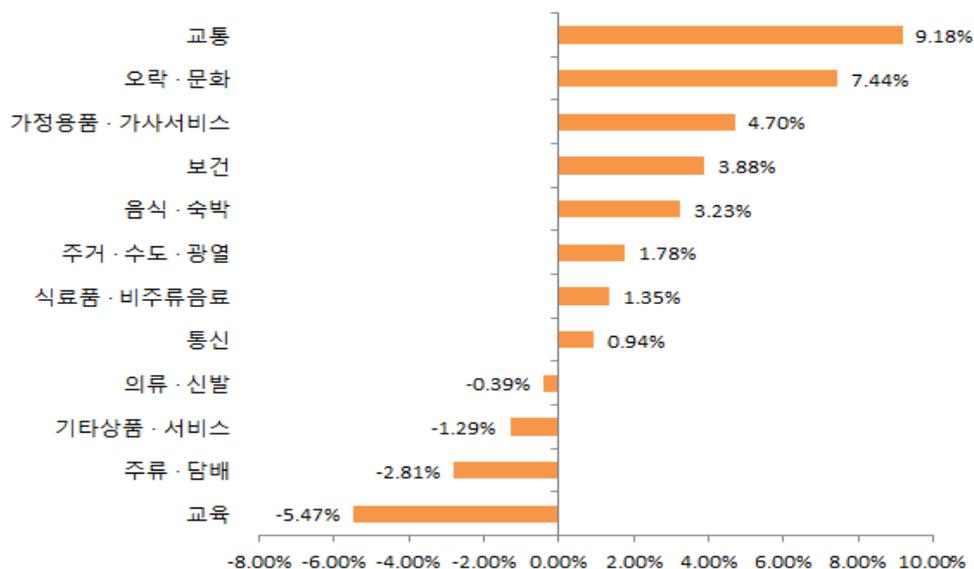
- ❖ 근로시간 단축은 그간 OECD 최고수준의 노동시간에 노출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추진되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음
 -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자료 : OECD Statistics
 주 : 임금근로자 기준

[그림 2-3]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2016년 기준)

- ④ 실제로 자신의 여가시간 내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중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 되는 등 개인의 여유와 만족을 중시하고 있음
- ④ 특히 문화 향유는 경험재로서 직접 소비에 참여하는 특징으로 인한 시간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돈보다 시간의 효용가치가 높으므로, 여가 시간의 물리적 확대는 문화향유의 수요와 긴요한 관계라 할 수 있음
- ④ 앞서 시간정책인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가 완전 도입된 2011년 이후 소비지출은 여가와 관련된 교통, 오락·문화 영역은 지속 증가한 반면 교육, 주류·담배 등 소비는 감소 추세를 나타냄
 - 2004년~2011년까지 주5일 근무제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201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되었음
 - 2012년부터 2017년 기간동안 연평균 가계소비지출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오락·문화가 연평균 7.44% 증가하여, 교통(연평균 9.18% 증가)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1) 2012~2017년 연평균 증가율
 주2)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 실질)

[그림 2-4]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증감률(2012년~2017년)

- ☞ 따라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시간확대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낮추게 되므로 문화에 대한 수요를 보다 확장시킬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족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정서적 유대 중요

- ☞ 한국사회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인적구성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로움, 고독감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정서적 유대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해짐
- ☞ 가구유형은 2016년 1인 가구가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4인 혹은 3인 가구 유형을 2015년 1인가구가 추월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가구유형을 나타내고 있음
 - 1인가구는 1995년 164만 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520만 가구로 약 3.2배 증가하였고, 2016년 기준 가구유형에서 27.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 5인 이상 가구(6.2%) 등 순임
 - 2016년 1인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0.7%p, 0.1%p 증가하였으며,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여 평균 가구원수도 2.51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함

〈표 2-6〉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 천가구, %, 명)

년도	일반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2000	14,312	100.0	15.5	19.1	20.9	31.1	10.1	3.3	3.12
2005	15,887	100.0	20.0	22.2	20.9	27.0	7.7	2.3	2.88
2010	17,339	100.0	23.9	24.3	21.3	22.5	6.2	1.8	2.69
2015	19,111	100.0	27.2	26.1	21.5	18.8	4.9	1.5	2.53
2016	19,368	100.0	27.9	26.2	21.4	18.3	4.8	1.4	2.51

자료: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 합계출산율은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의 1.17명보다 0.12

명 감소하였으며, 2005년 1.08명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2015년에 기록된 1.23명은 세계에서 4번째 낮은 수준임

〈표 2-7〉 세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분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
미국	2.03	1.77	1.80	1.91	2.03	2.00	2.04	2.05	1.88	1.89
프랑스	2.30	1.87	1.87	1.81	1.71	1.76	1.88	1.98	1.98	1.97
브라질	4.68	4.28	3.82	3.16	2.72	2.47	2.13	1.86	1.78	1.70
영국	2.01	1.73	1.78	1.84	1.78	1.74	1.66	1.87	1.88	1.87
중국	4.77	3.00	2.55	2.73	1.90	1.51	1.55	1.58	1.60	1.63
캐나다	1.98	1.73	1.63	1.62	1.69	1.56	1.52	1.64	1.61	1.56
스페인	2.85	2.55	1.88	1.46	1.28	1.19	1.29	1.39	1.33	1.39
이탈리아	2.32	1.89	1.52	1.35	1.27	1.22	1.30	1.42	1.43	1.49
독일	1.71	1.51	1.46	1.43	1.30	1.35	1.35	1.36	1.43	1.47
일본	2.13	1.83	1.76	1.65	1.48	1.37	1.30	1.34	1.41	1.48
한국	4.00	2.92	2.23	1.57	1.68	1.50	1.21	1.17	1.23	1.32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합계출산율 2018.6월 기준

주 :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한편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³⁾에 진입하였고,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세계 국가(지역) 중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5년 51번째에서 2060년 2번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표 2-8〉 주요 국가(지역)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p)

구분	국가	1960년	2015년	2030년	2060년	증감		정점연도
		(A)	(B)	(C)	(D)	(B-A)	(D-B)	
계속	중국	4.0	9.5	16.2	28.1	5.5	18.6	
증가	인도	3.1	5.5	8.2	15.6	2.4	10.1	

3)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에 따르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14%~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으로 구분됨

구분	국가	1960년	2015년	2030년	2060년	증감		정점연도
		(A)	(B)	(C)	(D)	(B-A)	(D-B)	
	미 국	9.1	14.7	20.2	22.4	5.5	7.7	
	인도네시아	3.6	5.4	9.2	17.4	1.8	12.0	
	한 국	2.9 (152위)	13.1 (51위)	24.3 (15위)	40.1 (2위)	10.2	27.0	
증가 후 감소	러시아	6.1	13.2	18.1	22.2	7.1	9.0	2057년
	일 본	5.7	26.4	30.7	36.9	20.7	10.5	2055년
	독 일	11.4	21.4	28.2	33.2	10.0	11.7	2055년
	이탈리아	9.5	21.7	26.8	32.2	12.2	10.5	2050년
	스페인	8.2	18.3	24.1	33.7	10.1	15.4	2052년
감소 후 증가	나이지리아	2.8	2.7	2.8	4.3	-0.1	1.6	
	북 한	3.2	9.5	12.2	20.9	6.3	11.3	
	카메룬	3.6	3.2	3.4	6.8	-0.4	3.6	
	니제르	1.1	2.6	2.7	2.8	1.5	0.2	
	부르키나파소	2.3	2.4	2.7	5.3	0.1	2.9	

자료 : 통계청(2015), 장래인구추계

-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8%이며, 2030년 24.5%, 2040년 32.8%, 2060년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9〉 고령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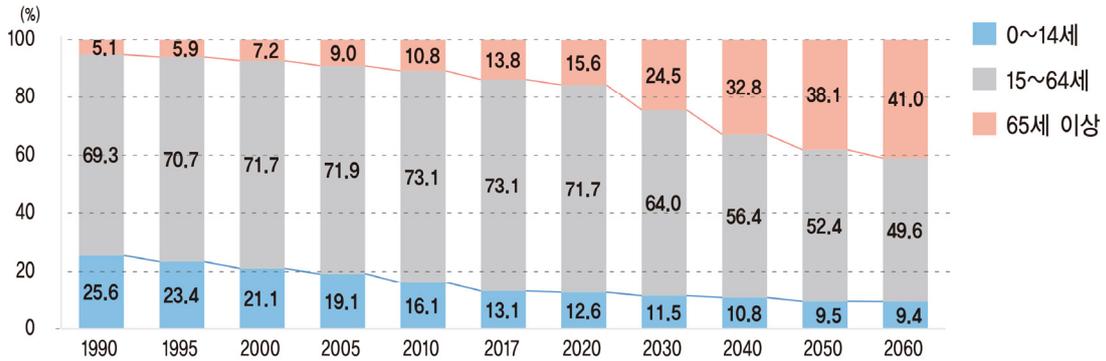
(단위: 천명, %, 해당인구 100명당 명)

년도	총인구	65세 이상	비율	노령화지수 ¹⁾	노년부양비 ²⁾
1990	42,869	2,195	5.1	20.0	7.4
2000	47,008	3,395	7.2	34.3	10.1
2010	49,554	5,366	10.8	67.2	14.8
2017	51,446	7,076	13.8	104.8	18.8
2020	51,974	8,134	15.6	123.7	21.8
2030	52,941	12,955	24.5	212.1	38.2
2040	52,198	17,120	32.8	303.2	58.2
2050	49,433	18,813	38.1	399.0	72.6
2060	45,246	18,536	41.0	434.6	82.6

자료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주 : 1)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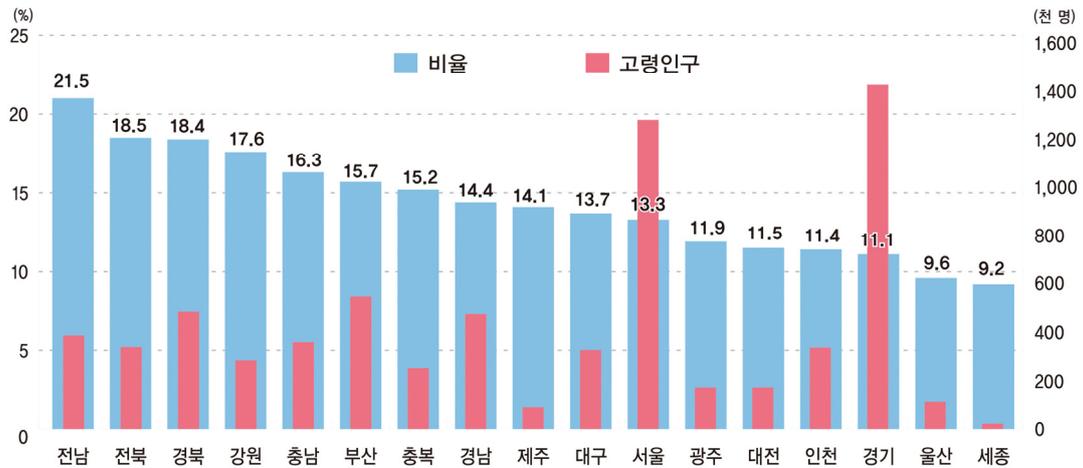
2)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2-5]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지역별 고령화 비율 격차도 상당한데, 2017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북(18.5%), 경북(18.4%) 순이며, 세종(9.2%), 울산(9.6%), 경기(11.1%)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음



자료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그림 2-6] 지역별 고령인구 및 비율(2017년 기준)

2. 국민의 문화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실태 분석

■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 증가에도 실제 여가시간은 소극적 활동에 그침

- ④ 국민들은 일보다 여가시간에 대한 기대와 문화적 욕구가 다양하게 증폭하고 있으나 일과 휴식에 대한 사회적 관습과 높은 피로도로 인해 적극적인 문화여가 활동이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 근로자 휴가일수는 평균 15일 이나 연간 7.9일만 사용, 연간 1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OECD, 2017)
- ④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경우 56.0%가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 여가활동은 TV시청, 인터넷 검색 등 소극적 휴식활동으로 채우고 있음
 -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사람들은 향후 시간 활용에 대해서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 노동시간이나 학업시간을 늘리는 것(12.3%)보다 '다양한' 여가시간에 투자(56%)하기를 원함
 -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1년 동안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은 대부분 TV시청 46.4%, 인터넷(SNS) 14.4%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어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불충족되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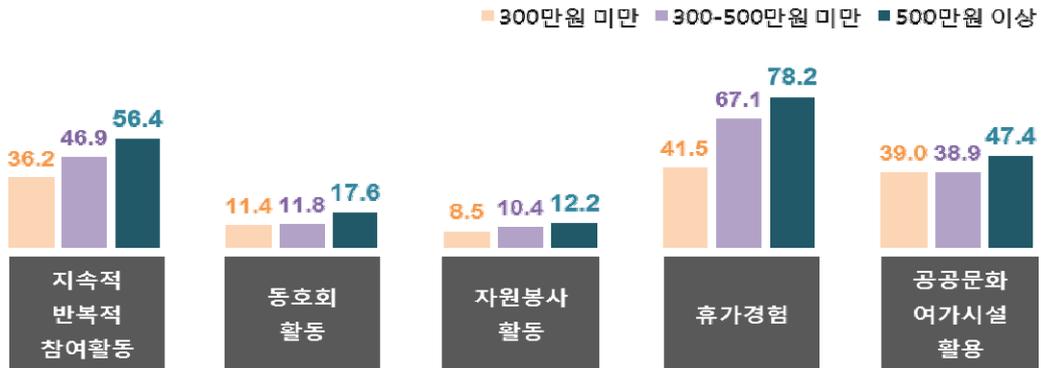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2-7]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한 개별 여가활동(1순위 기준)

□ 지역별, 소득별 문화적 격차의 심화

- ☞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반복적 여가활동,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활동 비율 등 여가활동은 가구 소득에 따라 격차가 존재하고 저소득일수록 소극적이고 단순한 여가 행태를 나타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2-8]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행태(2016년 기준)

- ☞ 또한 문화여가행복지수⁴⁾를 보면, 20대(20대 69점), 고소득자(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 68.6점), 대도시 거주자(대도시 68.3점)들의 문화여가행복지수가 계층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국민여가활동조사와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와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의 평균 개수는 600만원 이상 19.6개, 500~600만원 18.6개, 400~500만원 18.0개, 300~400만원 17.0개, 200~300만원 16.0개, 100~200만원 13.3개, 100만원 미만 11.0개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00만원 이상 89.5%, 500~600만원 89.1%, 400~500만원 86.7%, 300~400만원 86.7%, 200~300만원 81.0%, 100~200만원 71.2%, 100만원 미만 30.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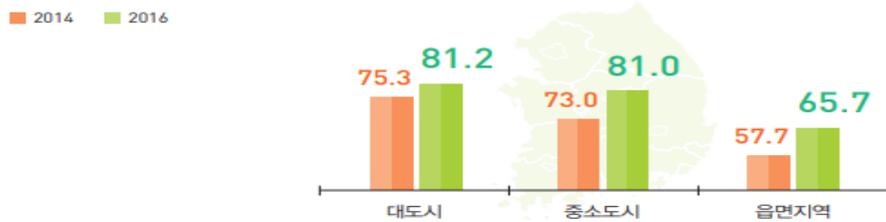
4) 문화여가행복지수란 국민들이 문화여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으로서 2014년에 관련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음. 문화여가행복지수는 ▲개인여건(여가시간, 비용)과 ▲자원지수(여가시설 등), ▲참여(여가활동 참여 빈도 등), ▲태도(여가에 대한 인식), ▲만족도(여가생활 전반) 등 5가지 지수로 구성

〈표 2-10〉 가구 월 평균소득별 여가활동 개수 및 문화행사 관람률(2016년 기준)

구분	여가활동 평균 개수(개)	문화행사 관람률(%)
100만원 미만	11.0	30.9
100~200만원	13.3	45.7
200~300만원	16.0	71.2
300~400만원	17.0	81.0
400~500만원	18.0	86.7
500~600만원	18.6	89.1
600만원 이상	19.6	8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

- 한편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대도시 81.2%, 중소도시 81.0%, 읍면지역 65.7%로 나타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그림 2-9]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2016년 기준)

- 전국 1개 시·도당 평균 문화시설 수는 156개이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321개, 그 외 14개 시·도는 120개로 문화 인프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상당함(문화체육관광부, 2017)
- 인구 백만 명당 시설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65.4%, 그 외 시·도 38.0%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전국 51.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도권과 그 외 지방과의 지역적 문화 인프라 격차가 있음을 볼 수 있음

〈표 2-11〉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17.1월 기준)

(단위 : 개, %)

구분	총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1개 시도당 평균 문화시설 수	인구 백만명당 시설 수
	개	비율								
계	2,657	100	1,011	853	229	236	228	100	156	51.82
(수도권)서울경기인천	965	36.3	439	288	95	64	64	15	321	65.38
그 외 14개 시도	1,692	63.7	572	565	134	172	164	85	120	38.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제3절 | 소결 : 문화적 국민 수요 확대와 정부의 역할

- ④ 20세기 들어서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정부 역할은 단순 공급에서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정책서비스 영역도 복잡해졌음
- ④ 경제적 성장으로 삶의 질이 중시되기 시작하였고, 정책 영역도 문화, 사회복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이 중요해졌으며, 특히 문화가 중요한 향유 대상이자 보편적 권리로서 요구되기 시작함

 -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등의 조사에 의하면 여가시간 및 활동에 대한 욕구,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격차가 심한 실정
- ④ 문화에 대한 투입 당위성 주장으로는 문화가 가진 공공재 및 가치재 성격에 의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 경우 민간투자가 비활성화된 한국의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특히 중요해짐
- ④ 그러나 문화분야는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과 탁월성에 대한 성과측정의 한계, 효과와의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정한 공공 문화투자의 수준(문화재정 규모)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함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적 활동(문화 관련 관람 및 참여)은 주관적 만족감 향상과 행복감 증진 등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됨
- ④ 경제성장 규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삶의 질, 여가시간 확대에 인한 시간 기회비용 감소, 1인 가구·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성 변화로 인한 고독감, 외로움 팽배 등은 문화적 수요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됨
- ④ 따라서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만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쟁력 있는 투자 방안이 중요할 것임



제 3 장

중기 문화투자 방향과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현안

제 1 절 | 중기 문화투자 방향

제 2 절 |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현황

제 3 절 | 문화정책 전달체계

제1절 | 중기 문화투자 방향

1. 중기 문화투자의 특징(국가재정운용계획)

▣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착을 표방, 반면 문화재정 투자는 감소 전망

-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7~2021년 중기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017년 6.9조원→ 2021년 6.6조원)

〈표 3-1〉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17	'18	'19	'20	'21	'17~'21 연평균
보건·복지·고용	129.5	146.2	159.4	172.7	188.4	9.8
교육	57.4	64.1	68.1	72.7	75.3	7.0
문화·체육·관광	6.9	6.3	6.4	6.5	6.6	△1.0
R&D	19.5	19.6	19.7	19.8	20.0	0.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15.7	15.4	15.1	△1.5
SOC	22.1	17.7	17.0	16.5	16.2	△7.5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5	19.4	19.2	△0.5
환경	6.9	6.8	4.7	6.6	6.5	△1.6
국방(일반회계)	40.3	43.1	45.3	47.7	50.4	5.8
외교·통일	4.6	4.8	4.9	5.0	5.0	2.3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0	19.2	19.5	1.9
일반·지방행정	63.3	69.6	74.2	77.9	81.3	6.5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7),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7년~2021년 5년 동안 연평균 증감률은 문화예술 -0.2%, 관광 -1.5%, 체육 -5.3%씩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는 반면, 문화재는 0.8%,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은 8.5%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부문별 향후 투자계획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사업 관련 예산에서 투자 감축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 관련 예산인 문화 및 관광일반에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나타냄
 - 연평균 8.5%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는 문화 및 관광 일반 부문은 본부와 소속 기관(국립 예술기관 등)의 인건비, 기본경비, 정보화 사업비, R&D,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통계생산 및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3-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계획

(단위: 십억 원, %)

구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문화·체육·관광 분야	6,893	6,328	6,426	6,526	6,627	△1.0
- 문화예술	2,750	2,640	2,678	2,707	2,732	△0.2
- 관광	1,554	1,403	1,419	1,437	1,461	△1.5
- 체육	1,502	1,157	1,170	1,187	1,207	△5.3
- 문화재	789	775	787	803	814	0.8
- 문화 및 관광일반	298	353	372	392	413	8.5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7),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실제로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나, 문화예산(문화·체육·관광)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측치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6.3% 대폭 감소한 6조5천억 원 수준임
 - 문화예산(문화·체육·관광)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측치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대비 -6.3% 대폭 감소한 6조5천억 원 수준임

〈표 3-3〉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8년 예산안에서의 문화재정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2021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6.9	6.3	6.4	6.5	6.6
2018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분야	6.9	6.5	-	-	-

■ 재정투자 중점 방향은 국정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임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임

- ④ 재정투자 중점 방향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밀착형 생활체육 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재정투자 방향은 안정적 예술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강화를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체감제고,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속적 확대,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 조성을 위한 금융 등 간접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지원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임

〈표 3-4〉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방향과 이행사업

재정투자 방향	이행사업
1) 안정적 예술창작여건 조성 및 예술인 복지 강화를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작가창작지원, 문예지발간, 공연장 대관료지원, 공연 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노후공연장 리모델링, 복합 문화예술공간 확충, 창작준비금 확대, 예술인 복지금고 추진, 긴급생계비지원 등 복지 환경 개선 등
2)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체감제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3)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속적 확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에 교육지원 사업 등
4)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조성을 위한 금융 등 간접지원	문화콘텐츠 창업/성장/인재양성 지원, 해외시장개척,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지원 확대 등
5)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학교 등 개방형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농어촌 학생 프로그램지원,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확충 등
6) 융복합 관광콘텐츠개발지원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주민 공동사업체(숙박,음식,기념품 등), 주민사업체 발굴/창업지원, 웰니스 관광 등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7),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재정의 지출구조조정 및 강력한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 ④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중기 계획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방식 개선 등 세출 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국민의 문화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 ④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의 증가 또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④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기준을 분야별로 명확히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④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할 예정임
- ④ 2018년 예산에서는 11.5조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0.5조를 포함하여 SOC 4.4조, 산업 1조, 농림 및 환경 각각 0.5조원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성과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채 자체점검 결과 반영
 - [집행부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를 감안하여 구조조정
 -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 연례적 행사비용 절감, R&D 일몰제 실시
 - [외부지적 등] 유사중복 정비, 국회·감사원 지적사업

〈표 3-5〉 2018년 예산안 편성시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분야	SOC	산업	농림	환경	R&D	문화
(조원)	△4.4조	△1.0조	△0.6조	△0.5조	△1.0조	△0.5조
분야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행정
(조원)	△1.4조	△0.3조	△1.5조	△0.1조	△0.3조	△0.5조

주 : 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있음

2. 문화투자 우선순위 사업 검토(국정과제)

1)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현황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5개 과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및 20대 국정전략 중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에 포함되어 있음

〈표 3-6〉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 및 전략 체계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③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더불어 잘 사는 경제	① 소득 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①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③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⑤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②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③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①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 남북간 화해협력과 핵 없는 한반도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중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은 5개의 국정과제(67번, 68번, 69번, 72번, 73번), 26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문체부 주관 5대 국정과제 중 2개 실천과제는 문화재청 주관(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및 교육부 주관(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으로 분류
- 기타 타부처 주관 2개 실천과제가 문체부 협조 과제로 설정 :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법무부)” 중 “3.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문체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복지부)” 중 “6. 장애인 교육, 문화·여가, 정보 접근성 강화(문체부)”

■ 문체부 주관 5개 국정과제는 국민과 삶의 영역에 초점

- ④ 국정과제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는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확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함

 - 실천과제는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문화재청 주관),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등임
- ④ 국정과제 68번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실천과제는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등임
- ④ 국정과제 69번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은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실천과제는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미디어 육성 진흥,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등임
- ④ 국정과제 72번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조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목표로 함

- 실천과제는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교육부 주관), 체육분야 남북 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임
- ④ 국정과제 73번은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을 목표로 함
- 실천과제는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등임

〈표 3-7〉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의 내용

국정과제	실천과제	과제목표	기대효과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문화재정 주관) -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인 자원 확보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 미디어 육성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

국정과제	실천과제	과제목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교육부 주관) - 체육분야 남북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 (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 성과목표치 검토

- 다음에서 문화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정투자와 효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행해야 하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검토하였음
 - 문체부 주관의 국정과제인 67번, 68번, 69번, 72번, 73번의 과제별 실천과제에 해당되는 사업별로 2017년부터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치를 확인함
 - 각 실천과제별 장기적 예산편성에 있는 집행금액 및 예산금액은 문체부 내부 예산편성자료를 기술한 것이며, 사업별 달성해야 될 장기적인 목표달성치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둠
-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치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구체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재설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국정과제 67번의 실천과제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의 통합문화이용권 성과목표치는 ‘21년, ‘22년 10만원 지급 목표가 확정되어 있으나, ‘18년, ‘19년, ‘20년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의 목표치 설정 필요

〈표 3-8〉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6만원 지급	-	-	-	10만원 지급	10만원 지급

〈표 3-9〉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69,882	82,103	86,208	-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문화여가정책개발-문화영향평가제운영)	1,268	1,501	2,000	-
소계	71,150	83,604	88,208	-

- ④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범위, 문화여가 정책개발 진흥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④ 실천과제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목표치는 '22년까지 360만 명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으나, '17년~'21년 기간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④ 현재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확인하고 연도별 달성 가능한 수혜자 수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3-10〉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증대	-	-	-	-	-	360만 명

〈표 3-11〉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출판산업육성 (출판통합시스템구축, 2018책의해, 지역서점활성화, 책읽는지하철운영)	163	4,163	5,920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3,841	13,949	13,962	-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7,327	7,490	12,510	-
국학진흥정책기반 조성	4,096	4,378	4,597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818	7,758	15,350	-
문화여가정책개발및진흥 (청년문화활동활성화)	0	0	2,000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지원)	0	50	1,945	-
미술진흥기반구축 (메이커스페이스 (지역공예클러스터)조성)	0	0	-	-
문화예술교육활성화*예술동아리제외 (학교/사회/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	119,733	122,926	201,560	-
전통문화 진흥	7,493			-
소계	160,471	160,714	257,844	-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인문정신문화, 국민독서문화, 전통스토리 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천과제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연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④ 실천과제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의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문화마을(읍면동단위)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목표달성치 설정이 필요

〈표 3-12〉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	-	-	-	-	구체적 달성치 없음
문화마을(읍면동단위) 조성	-	-	-	-	-	구체적 달성치 없음

〈표 3-13〉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국립박물관단지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행복청	-	-	-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균형지수개발)	0	100	0	-
문화시설확충및운영 (문화특화도시조성사업)	7,490	8,966	8,966	-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배치)	1,480	1,628	2,700	-
지역문화진흥 (문화적도시재생)	0	400	5,000	-
문화여가정책개발및진흥 (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	2,882	3,173	6,095	-
산업단지, 폐재생문화사업 (생활및세종계정)	10,116	4,770	12,957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0	880	5,000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공연 나눔- 소외계층문화순회)	21,046	21,016	22,067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7,858	55,265	74,694	-
아시아문화역량 강화 지원(ODA)	0	850	2,600	-
소계	90,872	97,048	140,079	-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도시와 문화마을(동, 읍, 면) 조성사업이 되지 않고 있음
- ④ 실행과제 '지역간 문화균형발전과 문화다양성확대'는 문화균형발전과 문화다양성의 두 가지 과제로 구분하여 재정배분 기준(예: 6:4 등)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④ 실천과제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는 목표치 설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업내역에 대한 목표가 국정과제 목표치와 연결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함

〈표 3-14〉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국민문화향유권확대(특화도서관육성지원)	0	50	2,700	-
문화시설확충및운영(공공도서관건립지원)	72,140	70,159	72,870	-
문화시설확충및운영(생활문화센터조성)	6,082	8,036	8,036	-
콘텐츠 누리터 조성	0	1,000	2,000	-
영상산업육성(지역영상미디어센터활성화지원)	160	160	500	-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90	1,590	500	-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작은영화관건립)	4,915	5,043	5,000	-
국민문화활동지원 (문화가있는날기획프로그램운영-생활속문화활동지원)	1,800	2,500	2,500	-
체육·문화예술사업의지원 (문화예술취약분야육성-작은미술관운영지원)	630	700	800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예술동아리교육지원)	0	1,500	3,000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4,209	3,788	4,167	-
소계	90,426	94,526	102,073	-

- ④ 실천과제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은 사업내역에서 인력지원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목표치 설정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사업내역에 대한 목표가 국정과제 목표치와 연결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함

- ☞ 학교예술강사지원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가 계획된 가운데, 국정과제 최종 목표치와 연동될 수 있도록 연차별 예산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

〈표 3-15〉 ‘문화분야에 대한 재원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인문정신 문화사회적 확산지원 (인문활동가양성·파견)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에 포함	2,923	3,000	-
예술창작활동지원 (지역문화관 전문인력지원)	0	0	1,000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학교예술강사지원)	54,779	54,779	89,779	-
소계	54,779	57,702	93,779	-

■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 국정과제 68번의 실천과제 ‘예술인 권익보장’의 목표 공정성 협약 발표는 '17년 이행하였고,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은 '22년까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목표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 예산계획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며, 실천과제 ‘예술인 권익보장’은 사각지대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목표치와 세부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예산계획을 수립 할 필요
 - (예) 법률(가칭) 제정 여부만을 목표치로 할 경우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이 요구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목표치는 달라질 수 있음

〈표 3-16〉 ‘예술인 권익보장’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공정성 협약 발표	○	-	-	-	-	-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	○	-	-	-	법률제정

- ④ 실천과제 ‘공정한 보상체계구축’의 목표는 표준계약서 의무화(목표치 : 18년 예상),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공연, 미술)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달성계획은 미흡한 실정
- ④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사전조사,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의 종류를 설정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의 강제이용 기준의 설정을 통해 예술인에게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④ 실천과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에 있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시각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 사업은 본 실천사업의 사업내역으로 배치하여 성과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표 3-17〉 ‘공정한 보상체계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표준계약서 의무화	-	○	-	-	-	-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공연, 미술)	-	-	-	-	-	구체적 달성치 없음

- ④ 실천과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의 목표는 고용보험제도 시행으로 '19년까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을 목표달성치로 설정하고 있음

〈표 3-18〉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국정목표 달성치	목표치		
	'17	'18	'19	'20	'21	'22
고용보험제도 시행	-	-	○	-	-	-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지원센터 건립에 초점이 있으며, 실천과제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보험료 지원의 방법(대상자선정, 지원의 범위 등 확정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매년 부담해야 될 예산의 범위가 달라짐을 고려해야 함

〈표 3-19〉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예술인복지금고)	0	1,000	30,500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불공정관행개선)	1,202	1,065	1,200	-
미술진흥기반구축(시각예술분야표준계약서개발)	0	150	180	-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예술인지원센터건립)	0	0	10,000	-
소계	1,202	2,215	41,880	-

- ☞ 실천과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는 일반예산 및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에 초점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국정 목표 달성치를 제시하지는 않음
- ☞ 실천과제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는 목표치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각 주요 사업별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산출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심사투명성의 경우 이의제기의 숫자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치를 설정할 수 있음

〈표 3-20〉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	-	-	-	-	구체적 달성치 없음
심사투명성 확대	-	-	-	-	-	
현장의 정채결정 참여확대	-	-	-	-	-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	-	-	-	-	

- ☞ 실천과제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은 내역사업이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목표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21〉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공연예술진흥 기반조성(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	5,682	6,271	6,600	-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육성-시각예술창작산실-시각예술공간지원)	1,000	1,000	1,300	-
소계	6,682	7,271	7,900	-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 국정과제 69번의 실천과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의 성과목표치는 없으나 중장기 예산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므로, 목표달성치를 설정하고 이에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표 3-22〉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제도 확대’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53,000	54,000	50,000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332	13,332	25,804	-
소계	59,332	67,332	75,804	-

- ☞ 실천과제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의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영화,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개선,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 등 계약서보완, 대중문화예술인 계약서제정, 방송 집필표준계약서)은 17년 이행되었음
- ☞ 문화분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각 분야(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만화 등)별로 불공정 관행의 개선사업(표준계약서 포함)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표 3-23〉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환경 구축’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불공정 관행개선(영화, 애니메이션), 계약서보완(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 등) 계약서제정(대중문화예술인) 집피료준계약서(방송)	○	-	-	-	-	구체적 달성치 없음

- ☞ 실천과제 ‘미디어 육성 진흥’의 사업내역은 뉴스미디어진흥, 지역신문발전지원,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등으로 예산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표 3-24〉 ‘미디어 육성 진흥’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뉴스미디어진흥	9,874	11,288	15,848	-
지역신문발전지원	8,224	7,721	10,000	-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8,222	8,000	15,000	-
소계	26,320	27,009	40,848	-

- ☞ 실천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의 흥릉시연장, 콘텐츠 멀티유즈랩은 17년 이행되었고, 콘텐츠 스테이션 청계천은 18년까지 이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음
- ☞ 목표달성 측정치는 일자리 창출 숫자, 관련 창업자 수 또는 창업기업 수,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 관광)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25〉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	○	-	-	-	-
흥릉시연장, '17년 흥릉	○	-	-	-	-	-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	-	-	-	-	-
VR콘텐츠 종합 지원센터	-	-	-	-	-	-

-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기술연구개발, CT기반조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대폭적인 CT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26〉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육성'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문화기술연구개발	47,176	49,364	82,500	-
CT기반조성	7,420	5,920	16,000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3,677	68,515	70,000	-
소계	118,273	123,799	168,500	-

- ☞ 실천과제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의 한류 팬 성과목표치는 '17년 6천만명, '22년까지 1억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콘텐츠 수출액과 세종학당을 확충하고자 하나 구체적 목표치는 없음
- ☞ 다만 본 국정과제인 69번 기대효과에서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을 제시하고 있음
- ☞ 실천과제 목표치 설정에서 콘텐츠 수출액과 연계산업의 수출액, 세종학당의 지속 확대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표 3-27〉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한류 팬 증대	6천만 명	-	-	-	-	1억 명 달성
콘텐츠 수출액	-	-	-	-	-	-
세종학당 지속 확대	-	-	-	-	-	-

-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출판산업육성,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재외한국문화원운영,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 사업, 국제문화 정책지원, 한국어진흥기반조성 및 확산 등에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음
- ☞ 콘텐츠 수출액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세부사업을 부각시키고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표 3-28〉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출판산업육성 (출판콘텐츠국제교류)	3,032	2,897	6,897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9,938	23,053	41,505	-
재외한국문화원운영 (운영/인프라확충/우수브랜드)	73,170	61,972	95,400	-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 사업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 사업)	5,716	6,573	6,600	-
국제문화정책지원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 양성사업)	0	0	900	-
한국어진흥기반조성 및 확산 (한국어보급및세계화-세종학당지정및운영지원, 세종 학당재단운영)	21,867	22,443	27,297	-
소계	123,723	116,938	178,599	-

■ (국정과제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실천과제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의 성과목표는 '16년 59.5%인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을 '22년 64.5%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달성치를 제시하고 있음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포함하여 목표치 등을 설정함
 -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 (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하고자 함

〈표 3-29〉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생활체육 지원확대:	-	-	-	-	-	국민생활 체육참여 율 64.5%
체육시설 확충	-	-	-	-	-	
지도자 배치	-	-	-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	-	-	-	-	

- ④ 국정과제 72의 핵심은 국민생활체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예 국민이 스포츠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국민체육센터건립, 생활체육프로그램, 국민체력인증,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등에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용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④ 국민생활체육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한 후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표 3-30〉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생활체육프로그램 (스포츠클럽육성)	13,000	13,400	25,200	-
국민체육센터건립 (장애인체육센터포함)	29,100	32,600	42,021	-
생활체육프로그램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4,590	4,131	4,131	-
국민체력인증 (장애인체력인증센터)	300	651	1,383	-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	6,032	7,734	10,409	-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활동지원)	4,242	4,288	10,288	-
소계	57,264	62,804	93,432	-

- ④ 실천과제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은 성과목표치는 없으나 중장기 예산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므로, 목표달성치를 설정하고 이에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표 3-31〉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0,865	11,817	11,817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회원종목단체인건비)	8,461	11,600	11,600	-
체육인복지	10,238	12,138	16,766	-
은퇴선수 지원,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2,128	2,193	4,913	-
경기단체 예산지원방식 변경 및 클린스포츠센터운영	비재정	-	-	-
스포츠공정위 기능강화	비재정	-	-	-
소계	31,692	37,748	45,096	-

- 실천과제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성공적 대회운영은 18년 이행되었고, 사후관리에 대한 성과계획을 '19년 이행하고자 함

〈표 3-32〉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성공적 대회운영:	-	○	-	-	-	-
법정부 협조강화, 홍보강화	-	-	-	-	-	-
사후 관리	-	-	○	-	-	-

- 특히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와 예산편성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행사를 관광 및 문화사업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예: 국가이미지 제고, 관광 및 소비의 융합하는 사업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표 3-33〉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260,653	43,420	종료	-
도핑방지활동지원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검사비)	1,756	4,005	종료	-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국제체육지원-패럴림픽국제방송신호제작)	9,000	4,100	종료	-
국제체육교류협력 (평창동계올림픽 국내외홍보)	23,000	0	종료	-
전통문화체험지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조성)	-	-	-	-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53,984	12,100	종료	-
소계	348,393	63,625	-	-

- ❖ 실천과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는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자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을 '18년 이행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성과목표치가 없음
- ❖ 태권도관련 보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한 후 향후 5년 동안 목표치를 명확히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3-34〉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	-	-	-	-

-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남북체육교류, 태권도문화콘텐츠 개발·보급, 생태권도세계화 등에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사업 내용을 보면 실천과제명을 ‘태권도 문화콘텐츠화’에서 ‘남북체육교류 및 태권도 관련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표 3-35〉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국제체육교류지원 (남북체육교류)	0	100	5,000	-
태권도진흥 (태권도문화콘텐츠 개발,보급)	0	150	4,050	-
태권도진흥 (태권도세계화)	9,900	9,750	9,750	-

- ④ 실천과제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성과목표치는 없으나 중장기 예산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므로, 목표달성치를 설정하고 이에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 ④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인에 지원, 체육인 강사 등 양성에 대한 지원,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지원범위, 대상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포지셔닝(position)을 검토한 후 문재인 정부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36〉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스포츠기업 확인제도)	0	3,000	6,000	-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창업지원센터확대)	2,485	3,580	3,580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지원)	33,717	35,336	36,752	-
소계	36,202	41,916	46,332	-

■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④ 국정과제 73번의 실천과제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의 성과목표는 ‘18년까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2년까지 5년간 열린관광지 100개 조성 지원을 목표달성치로 제시하고 있음
- ④ 실천과제 주요 내용에 대한 연차별 달성목표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계된 연차별 예산편성이 필요함

〈표 3-37〉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	○	-	-	-	-
열린관광지 확대	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근로자휴가비 지원사업의 예산지출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정하여야 함
-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편성은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체계구축에 예산이 편성되어 국정목표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함

〈표 3-38〉 ‘쉽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 (근로자휴가비 지원사업)	0	2,500	10,000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 (열린관광 환경조성)	1,300	2,414	3,094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 (청소년관광활성화)	500	300	500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지원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체계구축)	0	0	1,500	-
소계	1,800	5,214	15,094	-

- ❖ 실천과제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는 ‘22년까지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목표치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표 3-39〉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확대	-	-	-	-	-	관광품질 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
맞춤형 관광코스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	-	-	-	-	

-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한국관광 해외광고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한 연간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확대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음

〈표 3-40〉 ‘관광산업 질적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관광활성화기반구축 (한국관광품질인증제운영)	2,050	2,240	3,200	-
전통문화체험지원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	788	750	750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FIT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캠페인)	0	572	572	-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6,492	7,315	8,423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관광교통편의성제고)	0	940	1,500	-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올림픽관광인프라조성)	1,120	0	0	-
한국관광해외광고 (한국관광외국어사이트운영)	2,413	2,870	5,894	-
소계	12,863	14,687	20,339	-

- ④ 실천과제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은 '22년까지 관광벤처기업 800개 발굴, '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④ 관광벤처기업 발굴은 쉽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목표치를 타당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3-41〉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국가관광 전략회의 신설·운영	-	-	-	-	-	-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	-	-	-	-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	-	-	-	-	테마여행 10선 추진	-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범위, 순위 등이 사전에 결정될 필요가 있고, 관광경쟁력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함

〈표 3-42〉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관광활성화기반구축 (한국관광품질인증제운영)	2,050	2,240	3,200	-
스마트관광활성화 (주요관광제IoT인프라구축)	380	1,404	1,404	-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0	2,208	2,208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발굴 및 지원)	2,200	2,090	7,500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구축)	0	2,000	3,000	-
소계	4,630	9,942	17,312	-

- ④ 실천과제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특화 관광명소 집중육성에서 ‘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을 목표로 하고, 관광두레 지속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은 성과목표치가 없음
- ⑤ 따라서 지역특화관광명소 육성, 관광두레 지속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후 연계하여 예산 편성이 필요함

〈표 3-43〉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육성	-	-	-	-	테마여행 10선 추진	-
관광두레 지속확대	-	-	-	-	-	-
‘글로컬’ 관광지 육성	-	-	-	-	-	-

〈표 3-44〉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핵심관광지 육성	24,000	24,001	24,000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7,650	8,600	17,375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0	0	5,000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117	6,735	7,423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여행주간 및 국내관광 캠페인 추진)	12,023	11,551	15,043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1,179	1,094	1,179	-
관광활성화기반구축 (관광두레조성)	3,551	6,000	10,000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글로벌 관광육성)	1,100	1,620	2,260	-
전통문화체험지원 (전통문화관광활성화지원)	3,896	3,796	4,546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한국형 DMO 육성, 지원)	0	0	3,000	-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평화관광기반조성)	0	0	1,000	-
소계	58,516	63,397	90,826	-

- ④ 실천과제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는 '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은 성과목표치가 없음
- ④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에서 그 대상의 명확화, 목표달성치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관광산업 펀드 조성 규모 및 사용방안,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3-45〉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관련 사업 목표치 설정 현황

주요 내용	현재		목표치		국정목표 달성치	
	'17	'18(예상)	'19	'20	'21	'22
방한관광객의 다변화	-	-	-	-	-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	-	-	-	-
관광산업 펀드 조성	-	-	-	-	-	-

- ④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웰니스 관광클러스터지원 규모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연도별 펀드규모를 명확히 해야 하며, 후속조치로 펀드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46〉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관련 사업 예산계획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집행	예산		
	'17	'18	'19	'20~'22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분야 중소기업투자유치활성화지원)	1,550	987	1,500	-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관광기업펀드조성)	15,000	17,000	17,000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활성화지원 (중화권·일본·아중동 시장유치확대)	22,328	22,426	23,756	-
MICE산업육성지원	22,944	24,978	26,978	-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6,100	7,442	7,842	-
외래관광객유치 및 마케팅활성화지원 (크루즈관광활성화)	767	887	887	-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한국문화관광대전)	2,850	2,850	2,850	-
소계	71,539	76,570	80,813	-

제2절 |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현황

1. 일반 현황(중앙정부 예산구조와 문화재정 현황)

■ 문화재정은 예산과목구조 '문화 및 관광', 혹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의미

- ④ 『국가재정법』에서 예산과목구조를 16개 분야(69개 부문)로 구분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에서 12개 분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재정'은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을 의미함
 - ④ 2007년 이전 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2007년 『국가재정법』에 의한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편성이 적용되면서 유사한 부처사업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되고 1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편성됨
- 2007년 이전에는 문화재정(혹은 문화예산)이라 함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었음

예산과목구조(국가재정분류)	국가재정운용계획
1. 일반·지방행정	1. 보건·복지·고용
2. 공공질서및안전	2. 교육
3. 통일·외교	3. 문화·체육·관광
4. 국방	4. 환경
5. 교육	5. R&D
6. 문화및관광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 환경	7. SOC
8. 사회복지	8. 농림·수산·식품
9. 보건	9. 국방
10. 농림수산	10. 외교·통일
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1. 공공질서·안전
12. 교통및물류	12. 일반·지방행정
13. 통신	
14. 국토및지역개발	
15. 과학기술	
16. 예비비	

[그림 3-1] 우리나라 예산과목구조와 국가재정운용계획

- 5) 재정분류의 이해를 돕기 위해 16개 분야를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고 관심분야를 별도 분류하여 12개 분야로 재구성하여 발표하며, 사회복지와 보건을 통합하여 보건복지로 구분,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을 통합하여 SOC로 구분하고, R&D는 별도분류하고 있음

■ 18년 기준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은 1.51% 문체부 재정은 1.23% 수준, 문화재정 전체의 81.4%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기금

- 2018년 기준 6조 4,606억 원인 문화재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중앙부처의 예산·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정의 약 81.4%(5조 2,578억 원)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음
- 정부 총지출 428.8조 원에서 문화재정은 1.5%(6조 4,606억 원) 수준이고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1.23%(5조 2,578억 원) 수준임

〈표 3-47〉 정부 재정과 문화재정 규모(2014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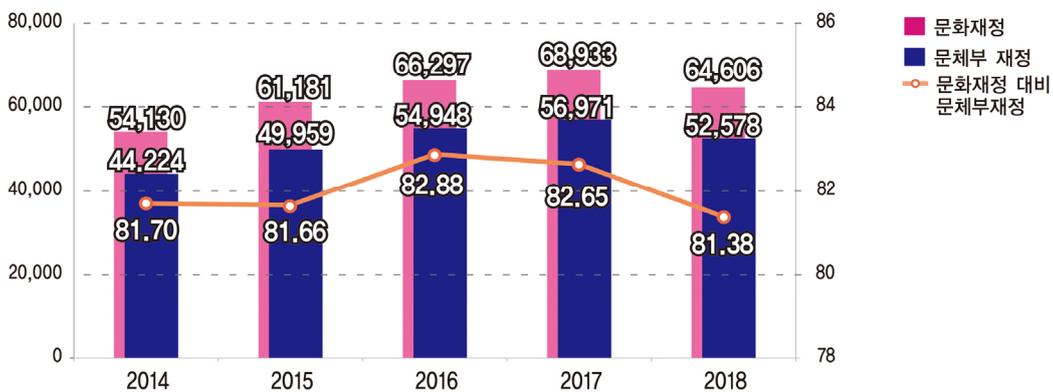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정부 재정(총지출)	3,558,051	3,754,033	3,863,996	4,005,459	4,288,339
문화재정(문화체육관광분야)	54,130 (1.52)	61,181 (1.63)	66,297 (1.72)	68,933 (1.72)	64,606 (1.51)
문체부 재정	44,224 (1.24)	49,959 (1.33)	54,948 (1.42)	56,971 (1.42)	52,578 (1.23)
문화재청 재정	6,199 (0.17)	6,887 (0.18)	7,311 (0.19)	7,891 (0.20)	8,017 (0.19)
과기부·중기부 문화부문 ¹⁾	3,707 (0.10)	4,335 (0.12)	4,038 (0.10)	4,071 (0.10)	4,010 (0.09)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017년 이전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에 해당됨
2) () 는 구성비

(단위: 억 원, %)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본예산 기준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재정 규모(2014년~2018년)

- ④ 문화재정 관련 부처별 재정사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콘텐츠 포함),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을 관할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부문을 관할하고 있음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화예술부문에서 디지털 및 방송통신,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관할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서 중소기업 행정지원 사업을 관할하고 있음

〈표 3-48〉 국가재정분류 ‘문화 및 관광’ 분야 프로그램 및 소관부처(2018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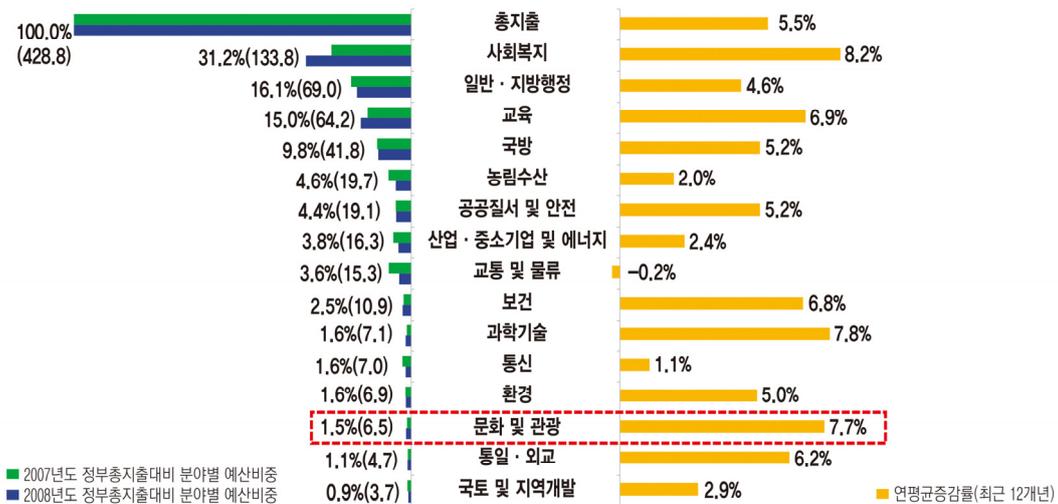
부문	내용(프로그램)	소관부처	
문화예술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국립국어원운영	예술원지원	
	국립민속박물관운영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국립박물관운영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국립중앙극장운영	종교문화지원	
	국립중앙도서관운영	창의적문화정책구현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콘텐츠산업 육성	
	국립현대미술관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국정홍보기획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관광행정지원		
	디지털방송전환기반구축	정보통신방송기반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콘텐츠방송산업육성	
	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			
관광	관광레저도시육성	관광진흥기반확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기금융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관광산업육성	외래관광객유치	
체육	생활체육육성	장애인체육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전문체육육성	
문화재	궁능원관리	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자원개발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국제교류	문화재활용	
	문화재보존관리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문화재보호		
문화 및 관광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운영비	문화·관광행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행정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 문화재정은 총 지출 대비 1.51%로 소규모이나, 최근 12년간 연평균 7.7% 급증

- 2018년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규모는 6조 4,606억 원으로 정부총지출(428조 8천억 원) 대비 1.51% 수준으로 소규모 재정이지만, 최근 12년간(2007~2018년) 연평균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7.7%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규모(1.51%)는 국가재정 16개 분야 중 국토 및 지역개발(0.9%), 통일·외교(1.1%) 다음으로 소규모 재정임
 - 최근 12년간(2007~2018년)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 수준이며, 동 기간 문화재정의 연평균 증가율 7.7%는 국가재정 16개 분야 중 사회복지(8.2%), 과학기술(7.8%)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증가세임

(단위: 조 원, %)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 주 : 1)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그래프는 2018년도 분야별 자원배분 기준 내림차순 정렬로 작성
- 2) 분야별 구성비 및 최근 12개년 연평균증감률은 원자료 단위(천 원)를 기준으로 작성

[그림 3-3] 2018년도 중앙정부 분야별 자원배분 비중(그래프 좌) 및 최근 12개년 연평균 증감률(그래프 우)

〈표 3-49〉 중앙정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2007년~2018년)

(단위 : 조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일반·지방행정	42.3	45.7	48.7	48.7	52.4	55.1	55.8	57.2	58.0	59.5	63.3	69.0	4.6
공공질서및안전	10.9	11.7	12.3	12.9	13.7	14.5	15.0	15.8	16.9	17.5	18.1	19.1	5.2
통일·외교	2.4	2.8	3.0	3.3	3.7	3.9	4.1	4.2	4.5	4.7	4.6	4.7	6.2
국방	23.9	25.9	27.7	29.0	30.9	32.0	33.3	34.7	36.7	37.8	39.0	41.8	5.2
교육	30.7	35.5	38.3	38.3	41.2	45.5	49.8	50.7	52.9	53.2	57.4	64.2	6.9
문화및관광	2.9 (1.21)	3.2 (1.23)	3.5 (1.22)	3.9 (1.33)	4.2 (1.36)	4.6 (1.41)	5.0 (1.47)	5.4 (1.52)	6.1 (1.63)	6.6 (1.72)	6.9 (1.72)	6.5 (1.51)	7.7 -
환경	4.0	4.5	5.1	5.4	5.8	6.0	6.3	6.5	6.8	6.9	6.9	6.9	5.0
사회복지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05.3	112.9	119.1	133.8	8.2
보건	5.3	5.9	6.9	7.3	7.5	7.9	8.7	9.2	10.4	10.5	10.4	10.9	6.8
농림수산	15.9	16.4	16.7	17.3	17.6	18.1	18.4	18.7	19.3	19.4	19.6	19.7	2.0
산업·중소기업및 에너지	12.6	12.6	16.2	15.1	15.2	15.1	15.5	15.4	16.4	16.3	16.0	16.3	2.4
교통및물류	15.8	16.1	20.2	17.5	16.8	17.5	19.0	18.9	20.3	19.8	18.6	15.3	△0.2
통신	6.2	6.5	6.1	6.2	6.6	7.0	7.2	7.4	7.6	7.5	7.0	7.0	1.1
국토및지역개발	2.7	3.1	4.5	7.6	7.6	5.6	5.3	4.8	4.5	3.9	3.5	3.7	2.9
과학기술	3.1	3.3	3.6	4.3	4.7	5.4	5.9	6.1	6.6	6.8	7.0	7.1	7.8
예비비	2.3	2.3	4.0	2.1	2.4	2.4	3.9	3.5	3.0	3.2	3.0	3.0	2.4
정부 총지출	237.0	257.2	284.5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428.8	5.5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1) 본예산 기준

2) 문화및관광 분야 구성비는 원자료 단위(천 원)를 기준으로 총지출 대비 구성비 작성

3) 연평균증감률 또한 원자료 단위(천 원)를 기준으로 작성

■ 부문별 예산 구성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순임

- ④ 18년 기준 문화 및 관광분야의 부문별 예산 구성비는 문화예술 42.1%(64,606억 원), 관광 21.7%(14,021억 원), 체육 18.3%(11,850억 원), 문화재 12.4%(8,018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5.4%(3,517억 원) 순임
- ④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문화예술부문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반면 관광부문과 체육부문이 각각 9.8%(1,517억 원), 21.1%(3,171억 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종교와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때문임

〈표 3-50〉 중앙정부 문화재정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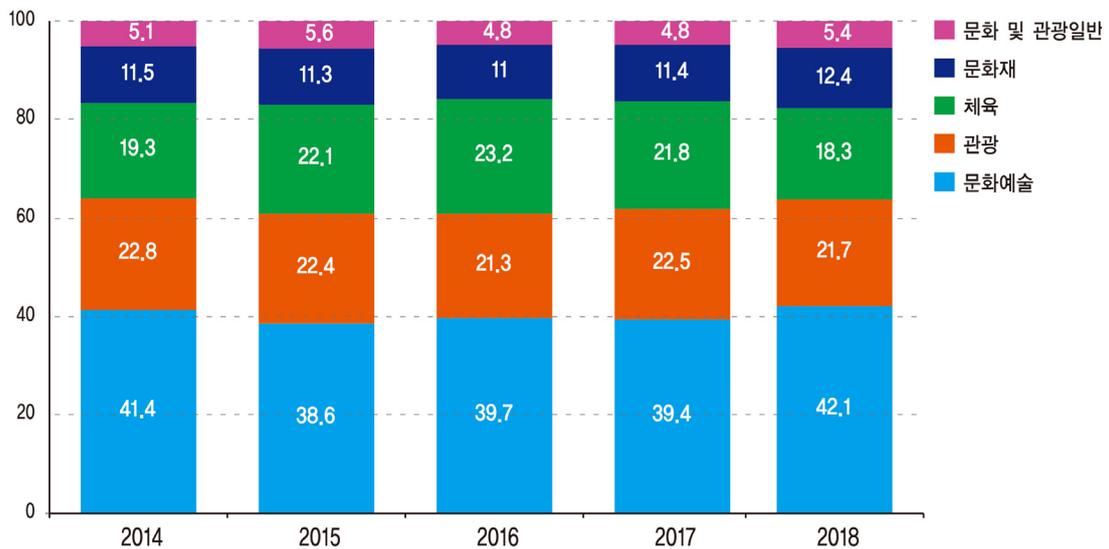
(단위: 억 원, %)

		2014	2015	2016	2017(A)	2018(B)	17년대비 18년증감	
							증감액(B-A)	증감률(B/A)
문화 및 관광	소계	54,130	61,181	66,297	68,933	64,606	△4,327	△6.3%
	문화예술	22,404 (41.4)	23,590 (38.6)	26,319 (39.7)	27,166 (39.4)	27,200 (42.1)	34 -	0.1% -
	관광	12,316 (22.8)	13,719 (22.4)	14,111 (21.3)	15,538 (22.5)	14,021 (21.7)	△1,517 -	△9.8% -
	체육	10,463 (19.3)	13,541 (22.1)	15,386 (23.2)	15,021 (21.8)	11,850 (18.3)	△3,171 -	△21.1% -
	문화재	6,199 (11.5)	6,887 (11.3)	7,311 (11.0)	7,891 (11.4)	8,018 (12.4)	127 -	1.6% -
	문화 및 관광일반	2,748 (5.1)	3,444 (5.6)	3,170 (4.8)	3,317 (4.8)	3,517 (5.4)	200 -	6.0% -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1) 본예산 기준
2) ()는 구성비

(단위: %)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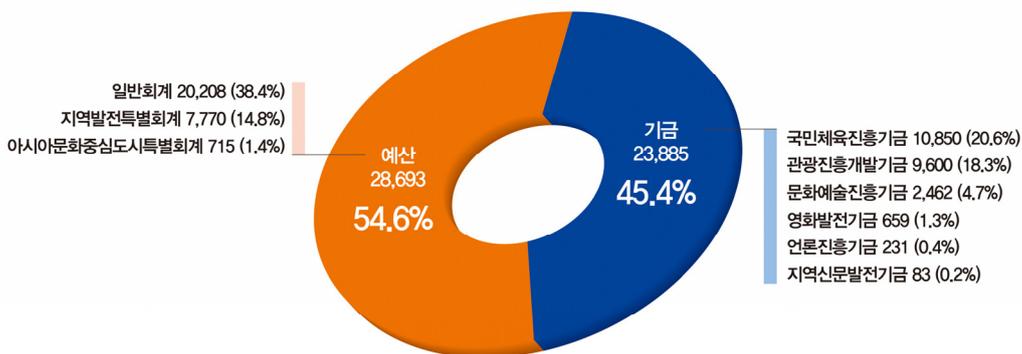
주 : 본예산 기준

[그림 3-4] 중앙정부 문화재정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6개 기금으로 구성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국세 등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일반회계, 이외에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된 다소 복잡한 회계구조를 지니고 있음⁶⁾
 -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운영, 기타 특정한 지출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이 해당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운영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 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해당
- ④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된 예산은 총 5조 2,578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예산과 기금이 각각 54.6%(2조 8,693억 원), 45.4%(2조 3,885억 원)로 구성되어 기금 의존도가 높은 편임
- ④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재정에서 각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0.6%(1조 850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8.3%(9,6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4.7%(2,462억 원), 영화발전기금 1.3%(659억 원), 언론진흥기금 0.4%(231억 원), 지역신문발전기금 0.2%(83억 원)순으로 나타남

(단위: 억 원,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주 : 본예산 기준

[그림 3-5]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기금 현황(2018년)

6) 국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2. 중앙정부 문화재정의 주요 현안

1) 문화재정의 하락세 전환

■ 문화재정 규모는 2007~2017년까지 지속 확대, 18년 전년대비 6.3% 감소

- 정부총지출에서 문화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1.21%에서 2017년 1.72% 수준으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서 문화재정은 10여 년 만에 삭감된 1.51% 수준
 - 2018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2017년(6조 8,933억 원)대비 6.3%(4,327억 원) 감소한 6조 4,606억 원이며, 이는 국가재정 16개 분야 중 교통 및 물류 분야(-17.7%) 다음으로 크게 감소한 수준임
 - 국가재정분류 상의 16개 분야 중 전년대비 증감률이 가장 낮은 분야는 교통 및 물류이지만 SOC분야는 2015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예산을 축소시켜오던 추세였음

〈표 3-51〉 중앙정부 분야별 자원배분 전년대비 증감(2017년 대비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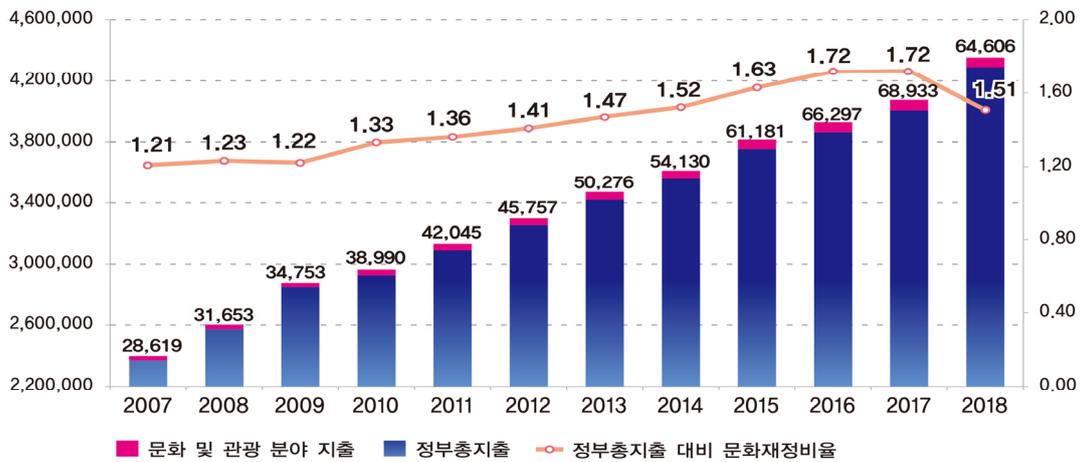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17예산(A)	'18예산(B)	'17대비 18년 증감	
			증감액(B-A)	증감률(B/A)
정부총지출	4,005,459	4,288,262	282,803	7.1
공공질서및안전	181,397	190,678	9,281	5.1
과학기술	70,176	70,568	392	0.6
교육	574,123	641,898	67,775	11.8
교통및물류	186,240	153,307	△32,933	△17.7
국방	390,233	418,270	28,037	7.2
국토및지역개발	35,115	36,609	1,494	4.3
농림수산	196,221	197,184	963	0.5
문화및관광	68,933	64,606	△4,327	△6.3
보건	103,558	108,574	5,016	4.8
사회복지	1,191,272	1,338,014	146,742	12.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0,238	162,588	2,350	1.5
예비비	30,000	30,000	0	0.0
일반·지방행정	633,379	689,858	56,479	8.9
통신	69,756	69,887	131	0.2
통일·외교	45,660	47,238	1,577	3.5
환경	69,160	68,984	△176	△0.3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본예산 기준

(단위: 억 원, %)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fiscaldata.go.kr/>)

주 : 1) 본예산 기준

2)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율은 원자료(단위: 천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작성

[그림 3-6] 정부 총지출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출 추이(2007년~2018년)

- 앞서 살펴본 중기재정계획(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화재정의 양적 규모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낭비적 재정지출,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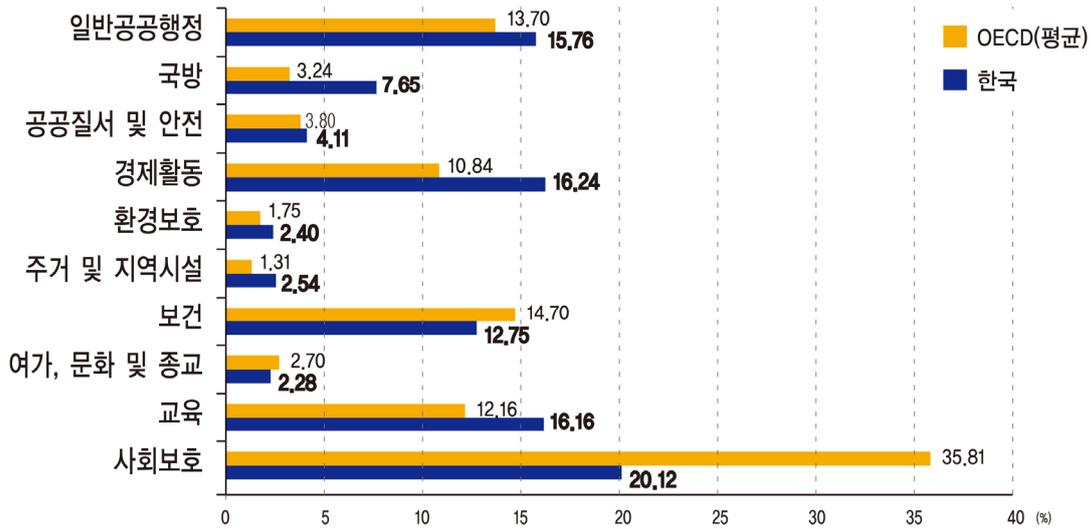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와 비교할 때 문화에 대한 낮은 투자 비중

-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문화재정 투자를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와 비교할 때 여러 정책 분야 중에서도 문화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제기준인 COFOG 분류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10개 정부기능분류에서 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7)분야와 보건, 사회보호 분야가 OECD 평균 이하임
- 이외의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 시설, 교육 재정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함

7) 국제기준 분야별 재정분류(COFOG) 중 문화분야(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정(문화, 체육, 관광)범위의 많은 부분을 담고 있으나 관광부문 일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국제기준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은 국내의 문화재정 범위가 넓고 통계량이 상회할 수 있음

- ☞ 즉 한국은 OECD와 비교할 때 정부가 문화를 포함한 사회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경제분야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함

(단위: %)



자료 : OECD Statistics

주 : 1) 2015년도 일반정부 기준, OECD 회원국 30개국 자료로 구성(검색일:2018.05.27.)

2) 자국통화 기준 구성비, 국가별 가장 최근 데이터 활용

[그림 3-7] OECD 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 구성비(2015년 기준)

2) 재정칸막이와 기금 간 재정격차 심화

☐ 전 부처에서 가장 사업성 기금운용 개수가 가장 많은 문체부

- ☞ 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1.23% 소규모 수준이나 6개의 사업성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사업성기금⁸⁾을 소관⁹⁾하고 있는 수준임
 - 국가재정 전체의 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외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¹⁰⁾이 운용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8)

8) 기금은 그 성질에 따라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

9) 농림축산식품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개수인 6개 사업성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18년 예산은 14조 4,996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2.6배를 초과하는 예산 규모임

10) 사회보장성기금 6개, 사업성기금 48개, 계정성기금 5개, 금융성기금 8개

〈표 3-52〉 부처별 기금 현황(2018년 기준)

(단위: 억 원)

소관 부처	기금명	유형	2018 지출계획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1,011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성	583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사업성	6,00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성	1,246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22,34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성	9,84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성	847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77,1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성	74,10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성	44,556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성	1,657,268
	복권기금	계정성	53,976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823,43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금융성	4,019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11,229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성	11,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성	2,030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성	7,2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	8,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금	사업성	3,799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보험성	116,775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5,56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12,113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성	15,764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3,481
	언론진흥기금	사업성	331
	영화발전기금	사업성	3,262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86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성	1,270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사업성	1,493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성	85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16,182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보험성	32,776
	군인복지기금	사업성	13,724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231,477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5,10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23,73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성	3,305
	농지관리기금	사업성	25,798
	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기금	사업성	11,020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사업성	7,060
	축산발전기금	사업성	10,529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성	7,269

(단위: 억 원)

소관 부처	기금명	유형	2018 지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	금융성	36,16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성	43,377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	37,810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성	1,3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성	79,59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성	22,760
	기술보증기금	금융성	25,8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1,180,658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40,615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3,614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1,25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2,50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872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5,450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성	33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172,69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보험성	149,573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성	3,56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성	14,48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성	13,905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업성	737,283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업성	2,34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사업성	2,378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1,41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재정 2018

-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복잡한 칸막이식 회계구조를 나타내고 있을 수 있는데, 소규모 재정 대비 칸막이식 재정구조로 인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융합·연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

■ 문체부 내 기금 간 여유재원(적립금) 형편에 편차가 심각

-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재정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금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금 간 여유재원(적립금) 형편에도 편차가 심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자체 세입원 없이 내부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스포츠토도 수익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자체수입원이 안정적이라 충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

- 1973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1년 이후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고 2004년 이후 기금 조성 자원 중 이자수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기금의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현재는 적립금이 고갈된 상황임

- ④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규모가 지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16년부터 체육·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에 연간 1,000억 원을 이관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있으나 단기간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실정

〈표 3-53〉 문체부 소관 기금의 조성(누계액) 및 운용(당년도) 실적(2014년~2018년)

(단위 : 억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규모	1,547	1,110	814	546	993
	운용실적	3,602	3,350	3,909	5,321	3,481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규모	17,937	20,960	19,625	20,464	21,292
	운용실적	10,181	14,216	15,059	15,885	12,113
영화발전기금	조성규모	3,198	3,362	3,539	3,499	3,467
	운용실적	3,221	3,189	2,924	3,116	3,262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규모	32	37	17	14	12
	운용실적	133	134	109	101	86
언론진흥기금	조성규모	352	181	114	48	18
	운용실적	513	358	324	265	331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규모	12,873	13,140	12,422	16,127	19,812
	운용실적	12,579	14,765	16,593	20,035	15,247

자료 : 기획재정부(각 연도), 기금현황

주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2016년이후 조성규모(순조성액)는 재무결산기준으로 계상한 값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 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54〉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기금 현황(2018년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영화발전 기금	언론진흥 기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설치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역신문발전지 원특별법 제13조
설치 년도	1973년	1972년	1989년	2007년	2010년	2004년
관리 주체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국민체육진흥 공단	영화진흥 위원회	한국언론진흥 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 한국언론진흥 재단에 위탁
설치 목적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 기타 경비지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및 영화, 비디오 산업의 진흥	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	지역신문발전 지원
구성 재원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타기금(복권)전 입금 민간기부금 운용수입, 가타 수입 골프장 운영 수익금, 경륜경정 수익금 등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국외여행자 납부금 운용수입, 기타수입	민간출연금 법정부담금 골프장 부가금 입장료 운용수입, 기타수입 경륜경정 수익금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 등	정부 출연금 개인 법인의 기부금 영화 입장권 부과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	정부출연금 타기금 전입금 개인 법인의 기부금 등 운용수익, 기타수입	정부출연금 타기금 전입금 개인 법인의 기부금 운용수입, 기타수입
■ 자체 재원	·뉴서울골프장 입장료 ·아르코 예술극장 대관료	·카지노 사업자 매출액의 10% ·출국납부금	·경륜경정 판매금의 12% 수준 ·체육진흥투표권 판매금의 33% 수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3%)	-	-
■ '18 여유재원	994	1,850	4,414	1,853	100	3
■ '18 수지차 (A-B)	△1,849	△740	2,669	60	△26	△81
- 자체수입(A)	613	8,860	13,519	719	206	1
- 지출(B)	2,462	9,600	10,850	659	232	82
· 사업비	2,279	9,594	10,564	553	229	76
· 기금운영비	183	6	286	106	3	6

제3절 | 문화정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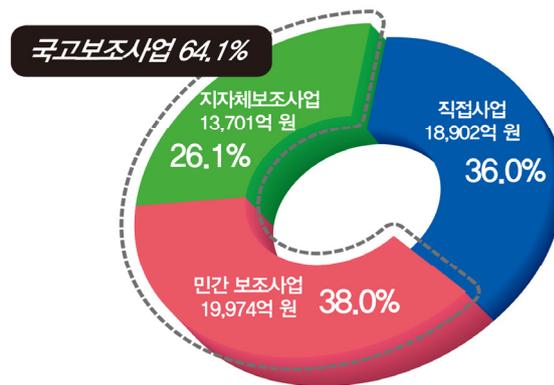
1.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현황

▣ 정책서비스는 중앙정부 직접, 지자체 및 민간 보조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

- ④ 정책사업 전달 유형을 구분하면 크게 직접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전달체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④ 중앙정부 직접 추진 방식은 정부가 시설을 건립·소유하고 수요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6%가 직접 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직접추진은 정책의도가 신속하고 통일되게 전달·실행되고 필요한 재정확보가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획일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문화가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나 지역별 선호에 부응한 사업 추진이 곤란한 단점이 있음
-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추진방식은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건립·소유하고 주민욕구에 맞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38%가 자치단체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자체를 통한 전달 방식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사업 기획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보조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사업의 질보다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④ 민간 보조사업 추진방식은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성이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을 민간에서 생산·공급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26%가 민간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 보조는 다양한 전문영역에 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기관부터 소규모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 문체부 전체 예산의 64.1%는 보조사업으로 정책을 전달

-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5조 2,578억 원)의 64.1%(3조 3,676억 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대상 국고보조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38.0%(1조 9,974억 원), 민간이 26.1%(1조 3,702억 원) 수준임



자료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주 : 본예산 기준

[그림 3-8]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 규모(2018년 기준)

■ 18개 소속기관, 33개 소속공공기관을 통해 정책서비스를 전달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기준 18개 소속기관(국립문화예술단체)과 33개 소관 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다수의 기관들을 통해 정책사업이 전달되고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그림 3-9]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2018년 기준)

〈표 3-5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2018년 기준)

구분		대상기관
공기업(2)	준시장형공기업(2)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기관(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24)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정동극장,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표 3-5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설립년도 및 목적

기관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2006	-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재)정동극장	1997	- 공연예술진흥사업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발전 사업을 통해 사회 일반의 이익 공여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게임물관리위원회	2013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 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013.11.22.시행)됨에 따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설(2013.12.2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04	-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 및 이용촉진과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증진에 기여함 -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시(2004년)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화하고 자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2010년12월)으로 2011년 1월 법정법인「국립박물관문 화재단」으로 설립됨
국제방송교류	1996	-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종합적인 이해 증진과 국가브랜드 이미지

기관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재단		제고함 - 체류 및 방한 외국인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고 내국인의 세계화를 선도함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2005	-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 증대,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발전 지원
대한장애인체육회	2005	-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 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
대한체육회	1920	-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 올림픽운동을 보호, 증진, 발전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함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1989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 및 국민체육진흥
세종학당재단	2012	- 외국어 또는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보급을 통해 문화간 교류 촉진 및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가 이미지 제고
아시아문화원	2015	-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 기여
영상물등급 위원회	1999	-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추천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폭력성 등을 포함한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영화진흥위원회	1973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와 영화산업 진흥
예술의전당	1987	-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
재단법인 국악방송	2000	-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 보급, 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향상에 이바지함
태권도진흥재단	2005	- 태권도원 조성·운영·관리 및 태권도 진흥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2010	-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한국관광공사	1962	-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
한국도박문제	2013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기관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관리센터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
한국문학번역원	1996	- 체계적인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해외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발전과 세계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문화정보원	2002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촉진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임 - 문화정보의 지식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구축 및 문화경쟁력을 강화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1984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읽기문화 확산 및 언론산업의 진흥에 기여함
한국영상자료원	1974	-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2	-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수행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990	- 88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복합레저 및 문화 공간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기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2	-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 지자체 보조는 광역-기초를 통해 매칭, 지역의 적합한 민간단체로 재교부

- ④ 지방자치단체의 전달 경로를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보조사업은 광역 시·도가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고 시도의 여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재교부하며, 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적합한 민간단체로 재교부하기도 함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문제점

■ 지자체와 민간의 재교부, 공공기관의 행정과 집행 역할 혼재

- ④ 지자체와 민간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유사한 보조사업이 지자체, 민간 각각 전달되기도 하여 최종 수혜자가 중복될 여지가 있고 분산된 사업들로 인해 종합적인 정책 파급효과 측정이 어려움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유사한 사업을 각각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최종 사업 실행자 혹은 수혜자가 두 개의 행정 체계에 속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수혜 받거나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임
- ④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이 장르별, 기능별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복 우려도 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이외에 소규모 민간단체로 전달되기도 함
- ④ 또한 사업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재교부하기도 하는데, 수행 주체를 개별 사업마다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 지자체와 민간, 민간과 민간이 서로 불필요한 재교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민간전달체계는 정책을 사업 서비스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방향에 맞춰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다른 조직(지자체, 민간 등)에 재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행정체계(보조금 배분)이자 집행체계(사업수행)를 원칙 없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즉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적합한 조직에 재교부하는 행정체계 역할과 사업을 실행하는 집행체계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임

■ 민간 전달체계의 영세한 조직구조로 성과관리에 한계

- ④ 민간 전달체계는 대부분 영세한 조직구조로 운영되어 공공자금의 투입이 전제됨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사업수행 상의 성과관리를 기대하기에 어려운 형편임
- ④ 문체부 소관 33개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1/3은 정규직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단위의 정책전달과 본연의 사업영역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하기 어려운 환경임

〈표 3-5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 현황(2018 1/4분기 기준, 현원)

기관명	정규직 수	기관명	정규직 수
정동극장	23	대한장애인체육회	68
예술경영지원센터	29	한국저작권위원회	80.5
세종학당재단	30	아시아문화원	88
한국문화정보원	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31	영화진흥위원회	99
영상물등급위원회	31	예술의전당	118
한국문학번역원	31	한국문화진흥	12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34.8
게임물관리위원회	40	한국언론진흥재단	15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3	국제방송교류재단	19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4	대한체육회	207
태권도진흥재단	54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219
국악방송	54.3	한국콘텐츠진흥원	229.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55	한국관광공사	589.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6.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95.2
한국영상자료원	59	그랜드코리아레저	1,660
한국저작권보호원	63		

자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 ④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전달체계는 장르별로 임의단체 형태를 띠고 있거나 10인 미만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다수로, 본연의 사업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회계 및 행정에 대한 인력 배치는 당연히 부족한 실정



제 4 장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과 지역의 문화재정

인식 검토

제 1 절 |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

제 2 절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

제 3 절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인식조사

제1절 |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

1. 지방분권 추진과 문화재정 역할 변화

▣ 정부의 강력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 ④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20여 년 동안 지방재정 자립도가 계속 하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지방 재정분권을 포함하여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
- ④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할 계획임
- ④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를 결정하였고 그 중 네 번째가 '고르게 잘 사는 지역'임
 - 이를 실행하는 전략으로는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제시함.
 - 자치분권에 관한 국정과제로는 1.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2.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4.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선정함.
- ④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재정분권과 연관이 되는 과제는 74 번째의 획기적 자치분권의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75번째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등 두 가지임
- ④ 지방재정 분권 강화 관련 정책이행에 요구되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아니라, 재정운용과 관련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근본 체질 개선과 재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개편, 지역문화진흥기금 마련 등 문화분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과거 정부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를 주창하고 있음

〈표 4-1〉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국정과제

국정과제	실행계획
74) 획기적 자치분권의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자치권(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보장 등 자치분권 기반 조성 - 지방이양일괄별의 단계적 제정 등을 통한 국가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 주민투표확대, 주민소환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민자치회 중심의 마을자치 활성화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핵심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의 자율통제 강화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지자체 재정개혁 추진 -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한 지출구조개혁 필요 ○ 국가-지자체 간 적정 자원 분담으로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재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자원조달 방안 마련 - 사업 우선순위 전면 조정, 재정사업 성과평가 반영 등 지출구조 개혁과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문화분야의 재정지출의 지방이양사업 검토 필요

- ☞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재정분권을 요약하면 ①국가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분권적 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지방이 담당하도록 전환하고 ②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간 재정지출책임을 조정하며 ③국가와 지방간 세원 재 배분을 통하여 지방의 재원을 확충함
- ☞ 그리고 ④국고보조사업의 정비를 통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지방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공하고(국세의 지방세 이양), ⑤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는 지방교부세 확충을 통해 해소함(이전재원의 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④ 이에 따라 중앙정부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역사전통, 자연환경적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정투자가 중요한 문화분야는 중앙의 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검토가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지방이양 검토시 고려 사항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분담의 판단기준 마련 필요

- ④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담은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를 판단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사업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로서 대응 지방비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임
- ④ 사업의 성격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것인지, 지방분권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사업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④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분담 비율은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을 검토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에 가까울수록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업무 성격을 갖는 사무일수록 국고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④ 국고보조사업 재정분담 기준은 국가정책 여부, 의무/재량 여부, 사업의 파급범위, 공공재적 성격, 국가최저수준, 정책유형, 사업의 규모 등의 유형에 맞춰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국가사무 집행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 법에 의한 의무 사업 여부, 사업의 파급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 지역으로 파급되는 사업, 사업의 공공재적 성격의 정도
 -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내지 재량적 집행이 어려운 성격의 사업, 사업 예산 규모가 커서 지방자치단체만의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잔류할 사업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정해야 할 것임

〈표 4-2〉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재정 분담 기준 예시

유형화 지표	내 용
국가정책 여부	국가사무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의무/재량 여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파급범위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공공재적 성격	보조사업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질 경우 높은 보조율 적용
국가최저수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는 현금지급성 복지사업에 높은 보조율 적용
정책유형	지역개발, 복지 등 사업내용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해야 하며, 복지정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지 않는 정책에 대하여 높은 보조율 적용
사업의 규모	사업비 규모가 커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부담이 클수록 높은 보조율 적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 일률적 기준에 입각해서 지방이양 사업을 선정할 경우 부작용 우려

- ④ 문화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어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정분권과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임. 즉 지방분권화로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 그에 따라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임
- ④ 그러므로 지방재정 분권화는 재정수입과 지출이 패키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재정수입과 지출의 지방이양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④ 재정수입과 지출의 지방이양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임
- ④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수입 규모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성격상 지방이양을 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여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받으려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④ 지방이양은 세부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방식 등 구체적 내용 분석으로

사업의 기획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면밀히 따져 본 후 결정해야 함

- ④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어떤 일률적 기준에 입각해서 선정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④ 문화분야 사업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을 선별한 다음, 국고보조사업 분류 기준에 입각해서 선별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④ 즉 사업담당자들이 각 국고보조사업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잔류할 사업과 지방에 이양할 사업을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 담당자의 판단이 적합한 것이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문화분야 지방이양 검토 시 국가 최저기준 검토 필요

- ④ 문화분야 지방이양 검토 시 국민의 최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문화 최소기준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술인 긴급생계비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확충 사업 등은 지역 간 보편적 문화 권리 및 균등한 문화 향유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적 차이와 관계없이 문화 최소 기준을 누리도록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 ④ 특히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도 커질 수 있으므로 문화재정 분야의 문화 최소기준 문제가 중요해질 수 있음
- ④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 최소기준과 관련된 사업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재정자립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④ 앞의 분류 기준 중 국민의 최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문화 최소기준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문화 최소기준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 특성 상 지방이양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 없어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축소 조정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문화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 따라서 보편적 문화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최소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재정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점진적 진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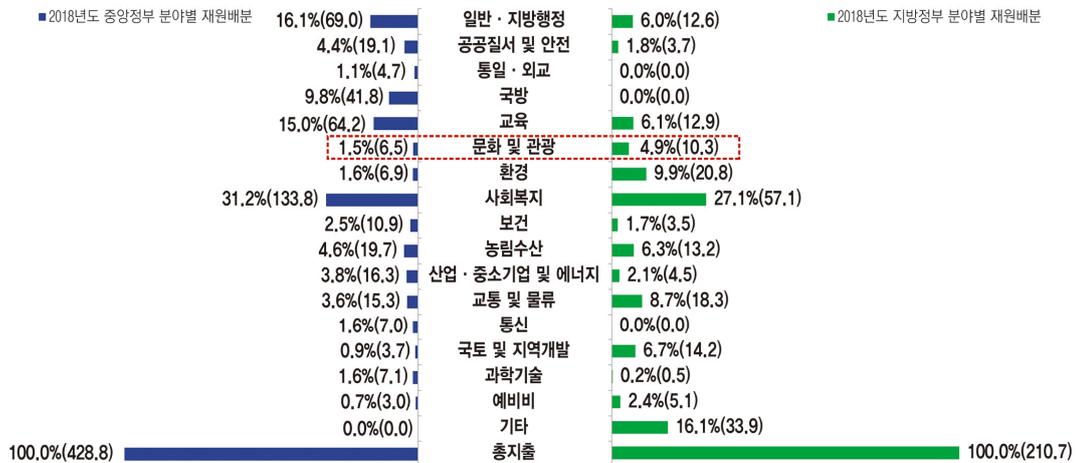
- ☞ 문화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서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문화분야 재정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따라서 문화재정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조정은 그 부작용 및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이양을 신속히 진행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크지 않고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즉시 지방이양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은 지방이양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양 과정 로드맵을 작성
- ☞ 따라서 문화재정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조정은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즉시 이양 사업, 이양 준비사업, 국고보조 유지 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이양 준비 사업은 지방이양을 하기 전 단계에서 우선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점진적으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이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국고보조율을 낮추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도 좀 더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현황

1. 일반 현황

-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은 4.88% 수준, 동 기간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비중(1.51%)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
- 2018년 지방정부의 문화재정 규모(10조 3천억 원)는 지방정부 총지출 210조 6천억 원 대비 4.88% 수준으로 동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인 1.51%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

(단위: %, 조 원)



자료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통합재정개요(예산)

주 : 당초예산, 순계기준

[그림 4-1] 정부 간 분야별 재원배분 구성비 비교(2018년 기준)

- 지자체의 문화재정은 연평균 5%대 증가, 지자체의 지출은 대규모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이끄는 것으로 판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규모는 최근 11년간(2008년~2018년) 연평균 5.5% 증가하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증가는 지출 규모도 18년 기준 21.7%로 기능별 재정 구분 중 가장 크고 속도도 지난 11년간(2008년~2018년) 연평균 10.2%씩 급성장한 사회복지가 이끄는 것으로 보임

〈표 4-3〉 지방정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2018년~2018년)

(단위 : 조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11.0	10.3	12.0	12.5	12.9	13.0	13.8	14.2	15.4	11.9	12.6	1.4
공공질서및안전	2.0	2.0	2.2	2.3	2.8	2.9	2.7	3.0	3.4	3.4	3.7	6.5
교육	7.0	7.9	8.1	9.0	9.8	10.0	9.7	10.1	10.7	11.7	12.9	6.4
문화및관광	6.0 (4.84)	7.1 (5.16)	7.8 (5.57)	7.0 (4.95)	7.4 (4.93)	7.8 (5.00)	8.0 (4.89)	8.6 (4.99)	9.0 (4.90)	9.8 (5.08)	10.3 (4.88)	5.5 -
환경보호	13.7	14.4	14.9	15.0	15.4	15.8	16.3	17.1	18.2	19.1	20.8	4.3
사회복지	21.7	24.1	26.5	28.5	30.9	35.0	40.1	44.1	46.6	49.5	57.1	10.2
보건	1.9	1.9	2.2	2.0	2.1	2.3	2.4	2.7	2.9	3.2	3.5	6.4
농림해양수산	8.1	9.3	9.7	9.8	10.4	10.9	11.2	11.5	11.8	12.3	13.2	5.1
산업·중소기업	2.6	2.9	3.0	3.0	3.3	3.2	3.0	3.2	3.5	4.0	4.5	5.8
수송및교통	16.3	18.4	16.5	15.1	15.7	15.5	15.2	15.6	16.5	17.3	18.3	1.2
국토및지역개발	12.9	14.5	12.8	11.6	12.6	12.2	11.5	11.5	12.4	13.2	14.2	0.9
과학기술	0.7	0.7	0.4	0.3	0.5	0.6	0.6	0.5	0.5	0.5	0.5	△4.0
예비비	2.2	2.4	2.2	2.3	3.1	3.1	3.0	3.4	4.5	4.9	5.1	8.5
기타	19.0	21.6	21.4	22.5	24.2	24.5	26.1	27.6	29.3	32.6	33.9	6.0
합계	125.0	137.5	139.9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5.4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통합재정개요(예산)

주 : 1) 당초예산, 순계기준

2) ()는 구성비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부문별 구성비는 체육>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 순임

- 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부문별 구성비는 체육 35.1%(36,116억 원), 문화예술 33.2%(34,159억 원), 관광 16.2%(16,701억 원), 문화재 10.5%(10,786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 5.0%(5,104억 원) 순임
- 이는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부문별 구성비가 문화예술(42.1%), 관광(21.7%), 체육(18.3%), 문화재(12.4%) 문화 및 관광일반(5.4%) 순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문화재정의 체육부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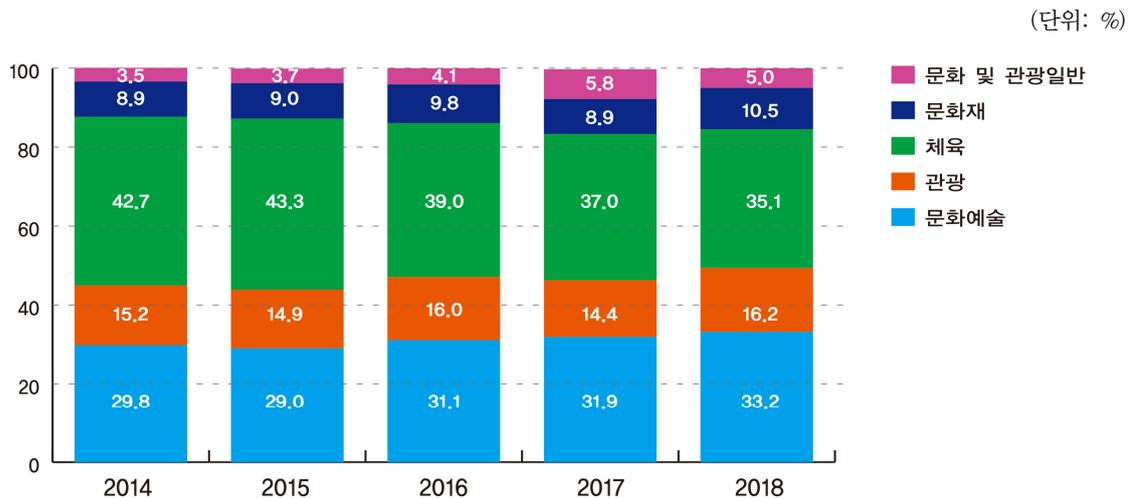
- 전년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문화재 부문 23.6%(2,060억 원), 문화예술 부문9.0%(2,813억 원), 관광 부문 3.5%(568억 원)가 증가한 반면, 문화 및 관광일반, 체육 부문이 각각 9.6%(541억 원), 0.5%(180억 원)감소함

(표 4-4)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A)	2018(B)	17년대비 18년증감		
						증감액	증감률	
문화 및 관광	소계	79,981	86,489	90,403	98,145	102,866	4,721	4.8%
	문화예술	23,805 (29.8)	25,092 (29.0)	28,106 (31.1)	31,346 (31.9)	34,159 (33.2)	2,813	9.0%
	관광	12,147 (15.2)	12,891 (14.9)	14,457 (16.0)	16,133 (14.4)	16,701 (16.2)	568	3.5%
	체육	34,078 (42.7)	37,478 (43.3)	35,283 (39.0)	36,296 (37.0)	36,116 (35.1)	△180	△0.5%
	문화재	7,152 (8.9)	7,798 (9.0)	8,845 (9.8)	8,726 (8.9)	10,786 (10.5)	2,060	23.6%
	문화 및 관광일반	2,800 (3.5)	3,230 (3.7)	3,712 (4.1)	5,645 (5.8)	5,104 (5.0)	△541	△9.6%

자료 : 행정안전부(각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 :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주 : 순계 기준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부문별 예산비중(2014년~2018년)

■ 자치단체별 문화재정 비율은 서울(3.2%)이 가장 낮고, 강원과 울산이(7.1%) 가장 높으며 지역별 문화재정 비중이 2배 이상의 편차를 나타냄

- ④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계(3.2%)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강원계 및 울산계(7.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지역별 비율 편차가 2배이상 나타남
- ④ 각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문화재정(인구수 대비 자치단체 문화재정) 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대구,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문화재정 규모가 작게 나타남

〈표 4-5〉 지방자치단체별 1인당 문화재정(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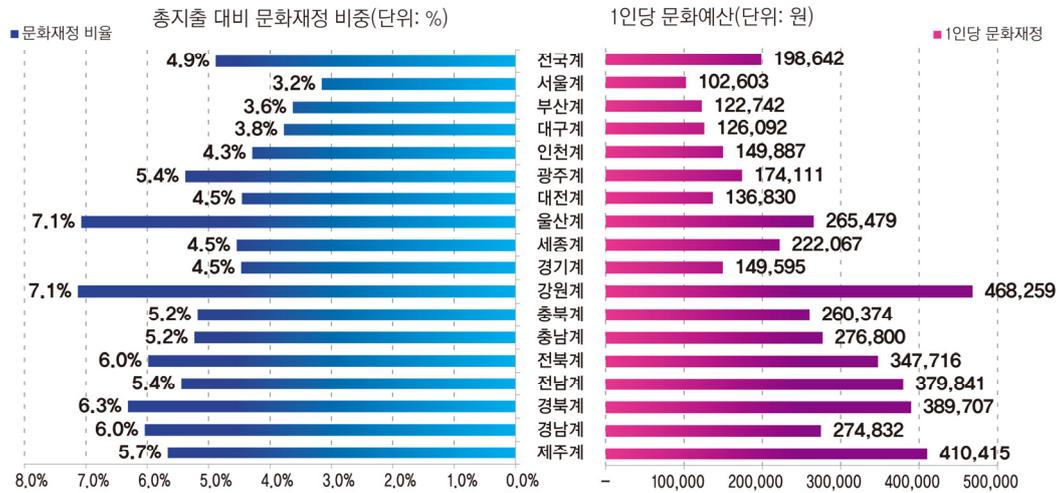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천 명, 원)

자치단체	총지출 (A, 백만원)	문화및관광 지출 (B, 백만원)	인구 수 (C, 천명)	문화재정 비율 (B/A, %)	1인당 문화재정 (B/C, 원)
전국계	210,678,389	10,286,626	51,785	4.9	198,642
서울계	31,985,643	1,009,496	9,839	3.2	102,603
부산계	11,717,637	425,068	3,463	3.6	122,742
대구계	8,258,854	311,721	2,472	3.8	126,092
인천계	10,316,113	442,382	2,951	4.3	149,887
광주계	4,731,653	254,556	1,462	5.4	174,111
대전계	4,596,154	204,913	1,498	4.5	136,830
울산계	4,361,542	308,506	1,162	7.1	265,479
세종계	1,423,055	64,662	291	4.5	222,067
경기계	43,263,495	1,933,624	12,926	4.5	149,595
강원계	10,154,992	723,999	1,546	7.1	468,259
충북계	8,016,426	415,221	1,595	5.2	260,374
충남계	11,213,849	586,669	2,119	5.2	276,800
전북계	10,738,754	642,603	1,848	6.0	347,716
전남계	13,185,409	718,060	1,890	5.4	379,841
경북계	16,565,209	1,045,841	2,684	6.3	389,707
경남계	15,365,527	928,251	3,378	6.0	274,832
제주계	4,784,074	271,055	660	5.7	410,415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3월 말 기준)

주 : 당초예산, 순계기준

(단위: %, 원)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3월 말 기준)

주 : 2018년도 순계 기준

[그림 4-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그래프 좌) 및 1인당 문화예산(그래프 우)

□ 자치단체 유형별 문화재정 비중에도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재정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율을 구간별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1%미만 구간부터 13%이상 15%미만 구간까지 지자체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재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으로 전체 예산의 13.28%를 문화 분야에 투자하는 반면, 문화재정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부산진구로 문화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0.57%에 불과함
 -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최고 광주 9.31%, 최저 경남 2.78%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시는 최고 경북안동시 11.95%, 최저 경기시흥시 2.18%, 군은 충북단양군 13.28%, 경남거창군 3.15%, 구는 울산북구 5.77%, 부산진구 0.57%의 격차를 나타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정 비율은 3%이상 7%미만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구의 경우 1%미만부터 5%미만까지의 구간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표 4-6〉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총지출 대비 문화재정 비중(2018년 기준)

(단위: 단체 수, %)

구분	합계	구성비	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
1%미만	8	(3.3)	0	0	0	8
1%이상 3%미만	47	(19.3)	1	4	0	42
3%이상 5%미만	73	(30.0)	8	28	20	17
5%이상 7%미만	75	(30.9)	7	32	34	2
7%이상 9%미만	19	(7.8)	0	6	13	0
9%이상 11%미만	17	(7.0)	1	3	13	0
11%이상 13%미만	3	(1.2)	0	2	1	0
13%이상 15%미만	1	(0.4)	0	0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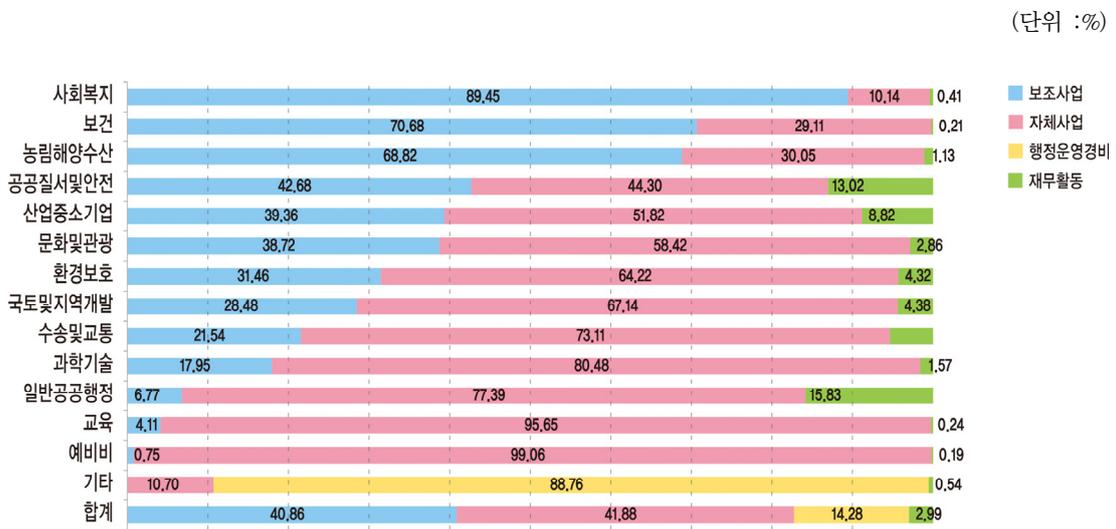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 2018년도 자료, 순계 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형태별 문화재정 특성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38.72%는 보조사업으로 지출

- ④ 18년 기준 문화재정의 38.72%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는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전체 보조사업 비중(40.86%)보다 작은 규모임
- ④ 재정지출 분야별(세출 항목별) 보조사업 비중이 크게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많은 부분(자체 41.88%, 보조 40.86%)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지출 분야에서 보조사업 비중은 89.45%(사회복지)에서 4.11%(교육)으로 지출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격차가 상당함
 - 지방자치단체 전체 보조사업 비중보다 높은 재정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89.45%, 보건 70.68%, 농림해양수산 68.82%, 공공질서 및 안전 42.68%임



자료 : 2008~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 기능별 및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규모
 주 : 본예산, 순계기준

[그림 4-4]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야별 재정활동별 규모(2018년 기준)

〈표 4-7〉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및 재정활동별 예산규모(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

구분	합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소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합계	210,678,389	174,306,238	86,078,754 (40.86)	88,227,484 (41.88)	30,077,144	6,295,007
일반공공행정	12,600,330	10,605,234	853,259 (6.77)	9,751,976 (77.39)	-	1,995,095
공공질서및안전	3,731,835	3,245,886	1,592,686 (42.68)	1,653,200 (44.30)	-	485,950
교육	12,939,577	12,908,554	532,059 (4.11)	12,376,494 (95.65)	-	31,023
문화및관광	10,286,626	9,992,726	3,983,130 (38.72)	6,009,596 (58.42)	-	293,900
환경보호	20,832,376	19,933,351	6,554,359 (31.46)	13,378,993 (64.22)	-	899,025
사회복지	57,129,338	56,894,577	51,103,138 (89.45)	5,791,439 (10.14)	-	234,761
보건	3,521,653	3,514,139	2,489,001 (70.68)	1,025,138 (29.11)	-	7,514
농림해양수산	13,207,393	13,058,665	9,089,837 (68.82)	3,968,828 (30.05)	-	148,728
산업중소기업	4,523,713	4,124,888	1,780,755 (39.36)	2,344,133 (51.82)	-	398,825
수송및교통	18,287,816	17,308,949	3,939,200 (21.54)	13,369,748 (73.11)	-	978,867
국토및지역개발	14,181,630	13,560,302	4,038,939 (28.48)	9,521,364 (67.14)	-	621,328
과학기술	468,520	461,161	84,079 (17.95)	377,082 (80.48)	-	7,359
예비비	5,080,055	5,070,641	38,312 (0.75)	5,032,329 (99.06)	-	9,414
기타	33,887,528	3,627,165	-	3,627,165 (10.70)	30,077,144	183,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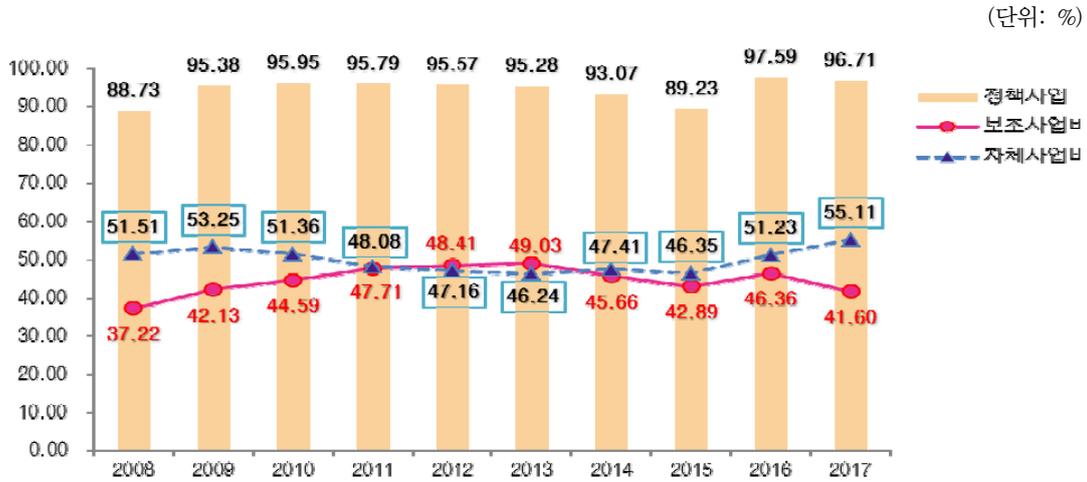
자료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 기능별 및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규모

주 : 1) 당초예산, 순계기준

2) ()는 합계 대비 구성비

- ❖ 최근 1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보조사업 지출비중 추이를 보면 2008년 37.22%(2조 2,510억 원)에서 2013년 49.03%(3조 8,447억 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때 자체사업 지출비중을 추월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38.72%(3조 9,831억 원)수준에 이릅니다.

제4장 문화분야 지방분권 방향과 지역의 문화재정 인식 검토



자료 : 2008~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 기능별 및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규모
 주 : 본예산, 순계기준

[그림 4-5]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재정활동별 예산규모 추이(2008년~2018년)

<표 4-8>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의 재정활동별 예산규모 추이(2008년~2018년)

(단위: 백만 원, %)

년도	합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소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2008	6,047,481 (100.00)	5,366,027 (88.73)	2,251,029 (37.22)	3,114,998 (51.51)	655,620 (10.84)	25,835 (0.43)
2009	70,938 (100.00)	67,660 (95.38)	29,883 (42.13)	37,777 (53.25)	-	3,278 (4.62)
2010	7,794,872 (100.00)	7,478,971 (95.95)	3,475,857 (44.59)	4,003,114 (51.36)	-	315,901 (4.05)
2011	6,987,203 (100.00)	6,693,324 (95.79)	3,333,747 (47.71)	3,359,577 (48.08)	-	293,879 (4.21)
2012	7,444,117 (100.00)	7,114,517 (95.57)	3,604,039 (48.41)	3,510,478 (47.16)	-	329,600 (4.43)
2013	7,840,758 (100.00)	7,470,397 (95.28)	3,844,707 (49.03)	3,625,690 (46.24)	-	370,361 (4.72)
2014	7,998,142 (100.00)	7,443,665 (93.07)	3,652,010 (45.66)	3,791,655 (47.41)	-	554,477 (6.93)
2015	8,648,889 (100.00)	7,717,762 (89.23)	3,709,336 (42.89)	4,008,426 (46.35)	-	931,127 (10.77)
2016	9,040,340 (100.00)	8,822,232 (97.59)	4,190,935 (46.36)	4,631,297 (51.23)	-	218,108 (2.41)
2017	9,814,540 (100.00)	9,491,309 (96.71)	4,082,651 (41.60)	5,408,658 (55.11)	-	323,231 (3.29)
2018	10,286,626 (100.00)	9,992,726 (97.14)	3,983,130 (38.72)	6,009,596 (58.42)	-	293,900 (2.86)

자료 : 2008~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 기능별 및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규모
 주 : 본예산, 순계기준

■ 문화재정의 재원별¹¹⁾ 구성은 국비 13.7%, 시도비 32.3%, 시군구비 53.9%

- ④ 2018년 문화재정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 13.7%(14,121억 원), 시도비 32.3%(33,210억 원), 시군구비 53.9%(55,435억 원)으로 기초단위로 갈수록 재원부담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④ 2008년과 비교해 보면 시군구비 비중은 6.4%p 증가(2008년 47.5%→2018년 53.9%)하였고, 시도비는 7%p 감소(2008년 39.3%→2018년 32.3%), 국비는 0.6% 증가(2008년 13.1%→2018년 13.7%)함

〈표 4-9〉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재원별 예산규모 추이(2008년~2018년)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60,465 (100.0)	70,938 (100.0)	77,949 (100.0)	69,872 (100.0)	74,441 (100.0)	78,408 (100.0)	79,981 (99.98)	86,489 (100.0)	90,403 (100.0)	98,145 (100.0)	102,866 (100.0)
국비	7,936 (13.13)	9,170 (12.93)	11,502 (14.76)	11,711 (16.76)	12,270 (16.48)	13,744 (17.53)	14,001 (17.51)	15,214 (17.59)	17,121 (18.94)	16,565 (16.88)	14,121 (13.73)
시도비	23,781 (39.33)	26,769 (37.74)	30,555 (39.20)	24,341 (34.84)	26,749 (35.93)	27,153 (34.63)	27,685 (34.61)	31,473 (36.39)	28,950 (32.02)	32,278 (32.89)	33,210 (32.28)
시군구비	28,747 (47.54)	34,657 (48.86)	35,888 (46.04)	33,820 (48.40)	35,422 (47.58)	37,510 (47.84)	38,281 (47.86)	39,788 (46.0)	44,322 (49.03)	49,294 (50.23)	55,435 (53.89)
기타	1 (0.00)	343 (0.48)	4 (0.01)	0 (0.00)	0 (0.00)	0 (0.00)	14 (0.02)	14 (0.02)	11 (0.01)	9 (0.01)	99 (0.10)

자료 : 2008~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 기능별 및 재원별 순계 예산규모

주 : 1) 본예산, 순계기준
2) ()는 구성비

1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비,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시도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시군구비로 구성됨

■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국비(보조금)¹²⁾ 비중이 큰 차이를 나타냄

- 2018년 문화재정의 국비(보조금) 비중은 광역자치단체별로 크게 다르며, 국비비중은 최저 6.6%(인천)에서 최고 66.69%(전남)으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냄

〈표 4-10〉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재정의 국비(보조금) 규모(2018년 기준)

(단위: 백만원)

시·도	총계(A)	국비 계(보조금)(B)		지방비(시도비)	지방채	기타
		구성비(B/A)				
서울본청	746,322	121,386	16.26%	624,935	0	0
부산본청	351,131	44,743	12.74%	275,542	30,846	0
대구본청	240,008	46,394	19.33%	180,713	12,900	0
인천본청	437,373	28,852	6.60%	408,521	0	0
광주본청	251,852	49,042	19.47%	202,810	0	0
대전본청	179,929	22,123	12.30%	157,807	0	0
울산본청	155,019	21,286	13.73%	112,733	21,000	0
세종본청	64,662	12,956	20.04%	43,780	0	7,926
경기본청	504,596	136,334	27.02%	368,261	0	0
강원본청	236,511	94,035	39.76%	142,476	0	0
충북본청	139,743	54,536	39.03%	85,206	0	0
충남본청	245,230	135,150	55.11%	108,236	0	1,845
전북본청	294,252	131,142	44.57%	163,111	0	0
전남본청	306,039	204,085	66.69%	101,954	0	0
경북본청	451,125	275,263	61.02%	175,862	0	0
경남본청	215,399	108,201	50.23%	107,199	0	0
제주본청	271,055	39,903	14.72%	231,151	0	0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 본예산, 순계기준



자료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 2018년도, 세출 총계기준

[그림 4-6] 광역자치단체 문화재정 자원별 예산비중(2018년 기준)

12) 지방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되는 자원인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교부세(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포함

제3절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인식조사

- ④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 우선순위,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분담, 문화의 지역격차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 ④ 인식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재정적 측면에서의 효율적 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1. 조사 설계

1) 설문방법 및 대상

- ④ 설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12일까지 11일 동안 243 개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지를 공문으로 배포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해당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구진은 설문지 문항 설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획, 재정 관련 부서와 문화, 관광 관련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이루어졌음
- ④ 설문의 대상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획, 재정 관련 부서의 공무원, 문화,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음
- ④ 설문을 통해 문화분야 재정지출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견해를 알아봄으로써 문화분야 정책 수요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2) 설문지의 구성

- ④ 문화분야 재정지출과 관련된 공무원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④ 본 설문지의 구성은 세 가지 범주 이하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항목의 범주는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에 관한 인식,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에 관한 인식, 문화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됨
 -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에 관한 인식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10개(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의 재정지출 분야 중 문화 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에 관한 인식은 17가지의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추진 주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 문화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은 지역 간 문화격차, 문화격차의 책임, 추후 지방분권과 관련 문화적 격차에 대한 영향, 문화격차에 대한 실현가능한 방안 등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2. 조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 ④ 총 151개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과 근무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재정운영과 관련한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의 응답을 고려)를 제외한 126개 유효표본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항목별 결측치가 있음
- ④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대 36.8%, 50대 12.0%, 20대 10.4% 순으로 나타남
- ④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자치시가 66.7%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자치군·구 19%, 광역시도 15% 순임
- ④ 현재 근무부서는 문화, 관광, 체육 관련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부서가 74.2%, 기획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부서가 25.8%를 차지함
 - 예산부서는 기획예산과, 기획조정실, 기획감사실, 예산법무과, 정책기획과, 재정운영과 등 기획 및 재정운영과 관련된 예산부서가 해당됨
 -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과, 문화공보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산업과 등 문화, 관광, 체육 관련 사업부서가 해당됨

- ④ 공무원으로서의 총 근속기간은 10년 이상이 65.3%로 대부분의 응답자의 공직생활 경험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며, 6개월 이상~5년 미만이 18.5%, 5년 이상~10년 미만이 16.1%를 차지함
- ④ 현재의 부서에서 업무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 33.1%, 1년 이상~5년 미만 31.5%, 5년 이상~10년 미만 21%, 10년 이상 14.5%로 업무기간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

〈표 4-11〉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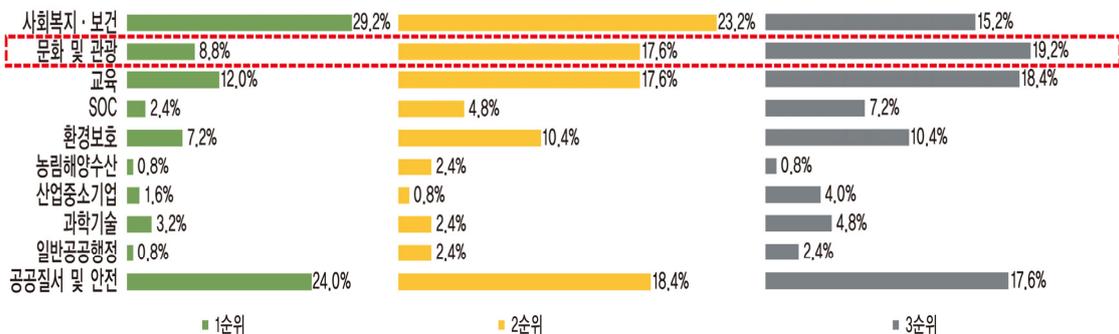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연령	20대	13	10.4
	30대	46	36.8
	40대	51	40.8
	50대	15	12.0
	합계	125	100
자치단체 구분	광역시도	18	15.0
	자치시	84	66.7
	자치군구	24	19.0
	합계	126	100
현재 근무부서	예산부서	32	25.8
	사업부서	92	74.2
	합계	124	100
근속기간	6개월 이상~5년 미만	23	18.5
	5년 이상~10년 미만	20	16.1
	10년 이상	81	65.3
	합계	124	100
현재 업무기간	6개월 이상~1년 미만	41	33.1
	1년 이상~5년 미만	39	31.5
	5년 이상~10년 미만	26	21.0
	10년 이상	18	14.5
	합계	124	100

2)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에 관한 인식

-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정책분야)로서 1순위, 2순위는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각각 39.2%, 23.2%로 가장 높았고, 3순위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2〉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복지·보건	49	39.2	29	23.2	19	15.2
문화 및 관광	11	8.8	22	17.6	24	19.2
교육	15	12.0	22	17.6	23	18.4
SOC	3	2.4	6	4.8	9	7.2
환경보호	9	7.2	13	10.4	13	10.4
농림해양수산	1	.8	3	2.4	1	.8
산업중소기업	2	1.6	1	.8	5	4.0
과학기술	4	3.2	3	2.4	6	4.8
일반공공행정	1	.8	3	2.4	3	2.4
공공질서 및 안전	30	24.0	23	18.4	22	17.6
N	125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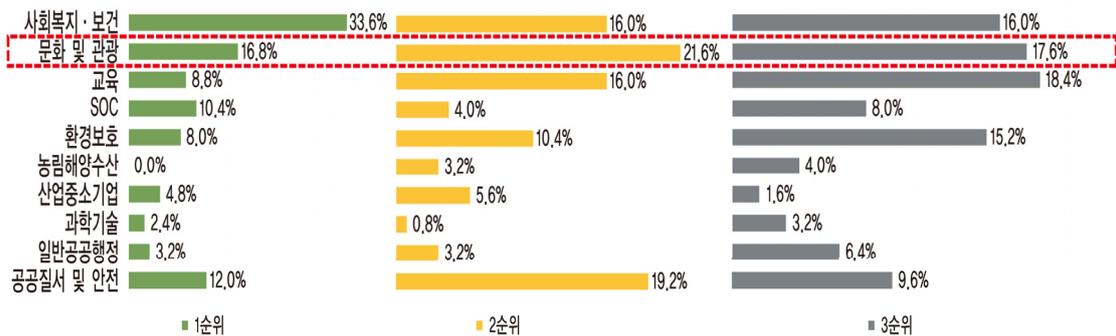


〔그림 4-7〕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1~3순위)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에서도 1순위가 사회복지·보건 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는 교육 분야가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3〉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복지·보건	42	33.6	20	16.0	20	16.0
문화 및 관광	21	16.8	27	21.6	22	17.6
교육	11	8.8	20	16.0	23	18.4
SOC	13	10.4	5	4.0	10	8.0
환경보호	10	8.0	13	10.4	19	15.2
농림해양수산	0	0	4	3.2	5	4.0
산업중소기업	6	4.8	7	5.6	2	1.6
과학기술	3	2.4	1	0.8	4	3.2
일반공공행정	4	3.2	4	3.2	8	6.4
공공질서 및 안전	15	12.0	24	19.2	12	9.6
N	125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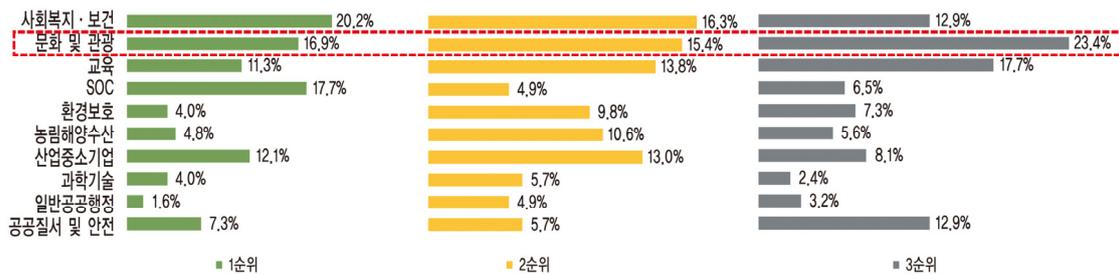


[그림 4-8]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1~3순위)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중요한 예산 분야는 사회 복지·보건 분야가 1순위와 2순위 각각 20.2%, 16.3%로 가장 높았고, 3 순위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4〉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주요한 예산분야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복지·보건	25	20.2	20	16.3	16	12.9
문화 및 관광	21	16.9	19	15.4	29	23.4
교육	14	11.3	17	13.8	22	17.7
SOC	22	17.7	6	4.9	8	6.5
환경보호	5	4.0	12	9.8	9	7.3
농림해양수산	6	4.8	13	10.6	7	5.6
산업중소기업	15	12.1	16	13.0	10	8.1
과학기술	5	4.0	7	5.7	3	2.4
일반공공행정	2	1.6	6	4.9	4	3.2
공공질서 및 안전	9	7.3	7	5.7	16	12.9
N	124		123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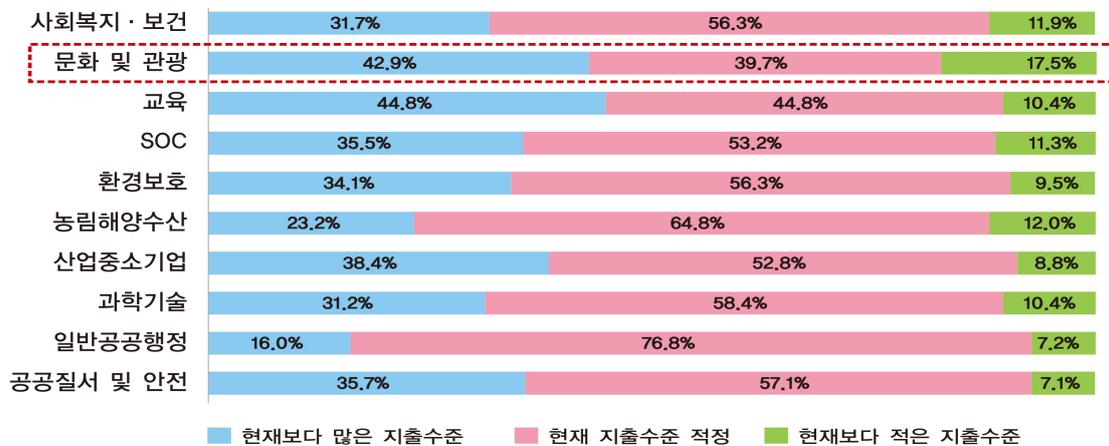


[그림 4-9]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주요한 예산분야(1~3순위)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에 대해 교육 44.8%, 문화 및 관광 42.9%, 산업중소기업 38.4% 순으로 '현재보다 많은 지출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4-15〉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

분야		현재보다 많은 지출수준	현재 지출수준 적정	현재보다 적은 지출수준	N
사회복지·보건	빈도	40	71	15	126
	%	31.7	56.3	11.9	
문화 및 관광	빈도	54	50	22	126
	%	42.9	39.7	17.5	
교육	빈도	56	56	13	125
	%	44.8	44.8	10.4	
SOC	빈도	44	66	14	124
	%	35.5	53.2	11.3	
환경보호	빈도	43	71	12	126
	%	34.1	56.3	9.5	
농림해양수산	빈도	29	81	15	125
	%	23.2	64.8	12.0	
산업중소기업	빈도	48	66	11	125
	%	38.4	52.8	8.8	
과학기술	빈도	39	73	13	125
	%	31.2	58.4	10.4	
일반공공행정	빈도	20	96	9	125
	%	16.0	76.8	7.2	
공공질서 및 안전	빈도	45	72	9	126
	%	35.7	57.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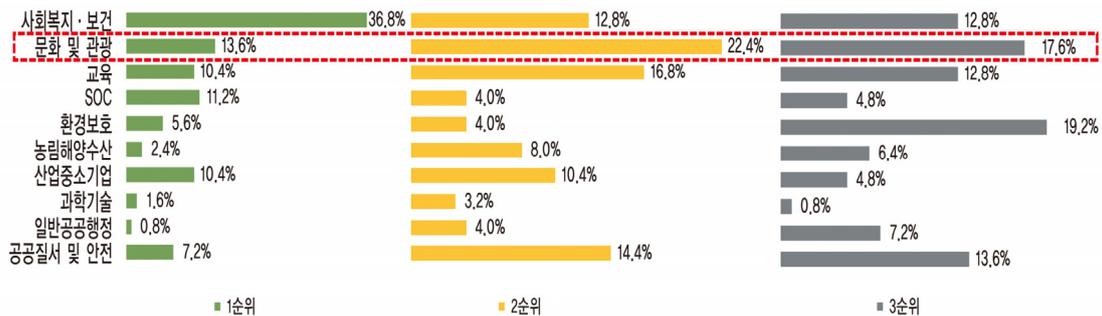


[그림 4-10]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

-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로 1순위는 사회복지·보건(36.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4%, 3순위는 환경보호가 1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6〉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복지·보건	46	36.8	16	12.8	16	12.8
문화 및 관광	17	13.6	28	22.4	22	17.6
교육	13	10.4	21	16.8	16	12.8
SOC	14	11.2	5	4.0	6	4.8
환경보호	7	5.6	5	4.0	24	19.2
농림해양수산	3	2.4	10	8.0	8	6.4
산업중소기업	13	10.4	13	10.4	6	4.8
과학기술	2	1.6	4	3.2	1	.8
일반공공행정	1	.8	5	4.0	9	7.2
공공질서 및 안전	9	7.2	18	14.4	17	13.6
N	125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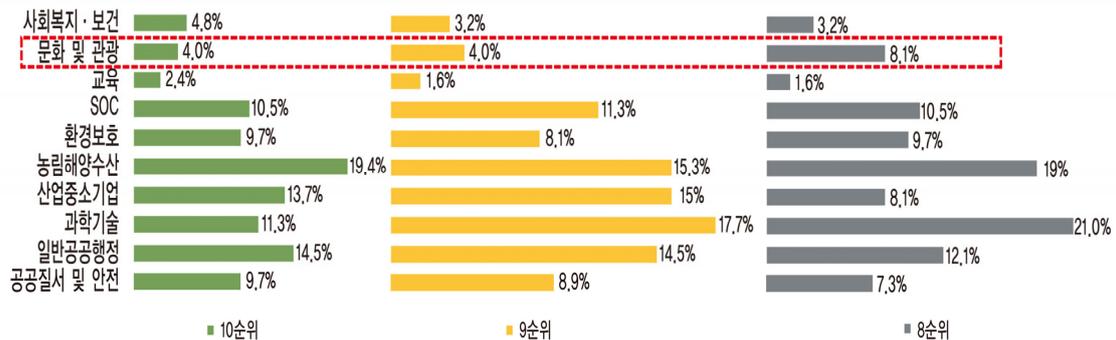


[그림 4-11]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1~3순위)

-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10순위에는 농림해양수산업이 19.4%로 가장 높고, 9순위와 8순위는 과학기술이 각각 17.7%, 21%로 후순위에서 높게 나타남

〈표 4-17〉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 분야

분야	10순위		9순위		8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사회복지·보건	6	2,4	4	3,2	4	3,2
문화 및 관광	5	4,0	5	4,0	10	8,1
교육	3	2,4	2	1,6	2	1,6
SOC	13	10,5	14	11,3	13	10,5
환경보호	12	9,7	10	8,1	12	9,7
농림해양수산업	24	19,4	19	15,3	23	18,5
산업중소기업	17	13,7	19	15,3	10	8,1
과학기술	14	11,3	22	17,7	26	21,0
일반공공행정	18	14,5	18	14,5	15	12,1
공공질서 및 안전	12	9,7	11	8,9	9	7,3
N	124		124		124	



[그림 4-12]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 분야(8~10순위)

3)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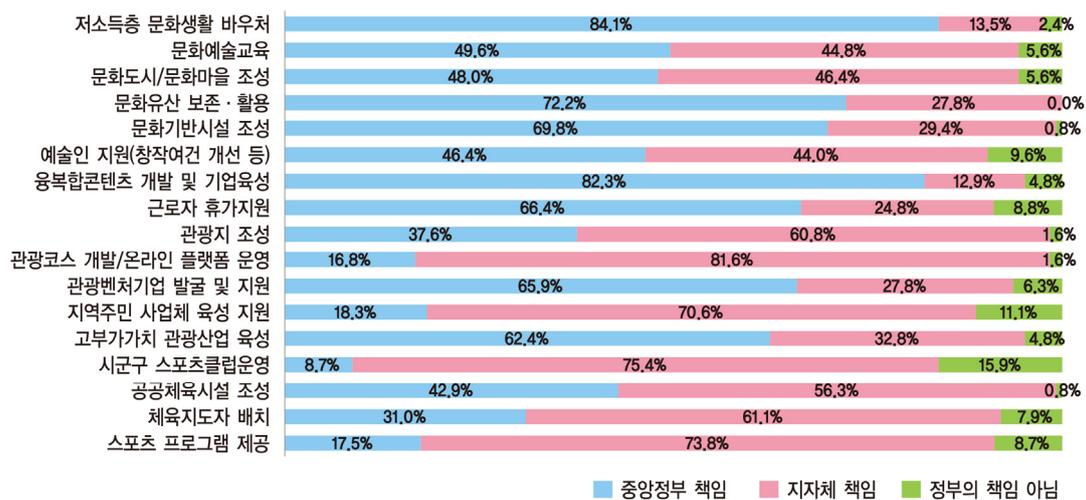
- ④ 문화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④ 1/2 이상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업은 저소득층 문화생활 바우처 84.1%,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기업육성 82.3%, 문화유산 보존·활용 72.2%, 문화기반시설 조성 69.8%, 근로자 휴가지원 66.4%,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65.9%,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62.4% 등으로 나타남
- ④ 중앙과 지자체가 비슷하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중앙 49.6%, 지자체 44.8%),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중앙48%, 지자체 46.4%), 예술인 지원(중앙 46.4%, 지자체 44%), 공공체육시설 조성(중앙 42.9%, 지자체 56.3%) 등으로 나타남
- ④ 1/2 이상 대부분이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업은 관광지 조성 60.8%, 관광코스 개발/온라인 플랫폼 운영 81.6%, 지역주민 사업체 육성 지원 70.6%, 시군구 스포츠클럽 운영 75.4%, 체육지도자 배치 61.1%,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73.8% 등으로 나타남

〈표 4-18〉 문화분야 사업 추진 주체

구분		중앙정부 책임	지자체 책임	정부의 책임 아님	N
저소득층 문화생활 바우처	빈도	106	17	3	126
	%	84.1	13.5	2.4	
문화예술교육	빈도	64	56	7	125
	%	49.6	44.8	5.6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빈도	60	58	7	125
	%	48.0	46.4	5.6	
문화유산 보존·활용	빈도	91	35	0	126
	%	72.2	27.8	0	
문화기반시설 조성	빈도	88	37	1	126
	%	69.8	29.4	.8	
예술인 지원(창작여건 개선 등)	빈도	58	55	12	125
	%	46.4	44.0	9.6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구 분		중앙정부 책임	지자체 책임	정부의 책임 아님	N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기업육성	빈도	102	16	6	124
	%	82,3	12,9	4,8	
근로자 휴가지원	빈도	83	31	11	125
	%	66,4	24,8	8,8	
관광지 조성	빈도	47	76	2	125
	%	37,6	60,8	1,6	
관광코스 개발/온라인 플랫폼 운영	빈도	21	102	2	126
	%	16,8	81,6	1,6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빈도	83	35	8	126
	%	65,9	27,8	6,3	
지역주민 사업체 육성 지원	빈도	23	89	14	126
	%	18,3	70,6	11,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빈도	78	41	6	126
	%	62,4	32,8	4,8	
시군구 스포츠클럽 운영	빈도	11	95	20	126
	%	8,7	75,4	15,9	
공공체육시설 조성	빈도	54	71	1	126
	%	42,9	56,3	.8	
체육지도자 배치	빈도	39	77	10	126
	%	31,0	61,1	7,9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빈도	22	93	11	126
	%	17,5	73,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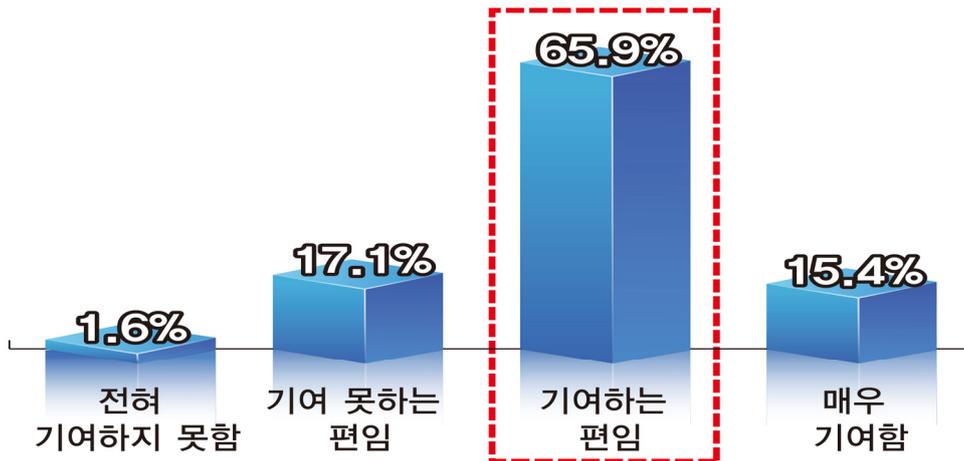
[그림 4-13] 문화분야 사업 추진 주체

4) 문화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의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65.9%가 기여하는 편이라고 응답했고, 17.1%는 기여 못하는 편, 15.4%는 매우 기여함, 1.6%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으로 응답함

〈표 4-19〉 소속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기여도

전혀 기여하지 못함		기여 못하는 편임		기여하는 편임		매우 기여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2	1.6	21	17.1	81	65.9	19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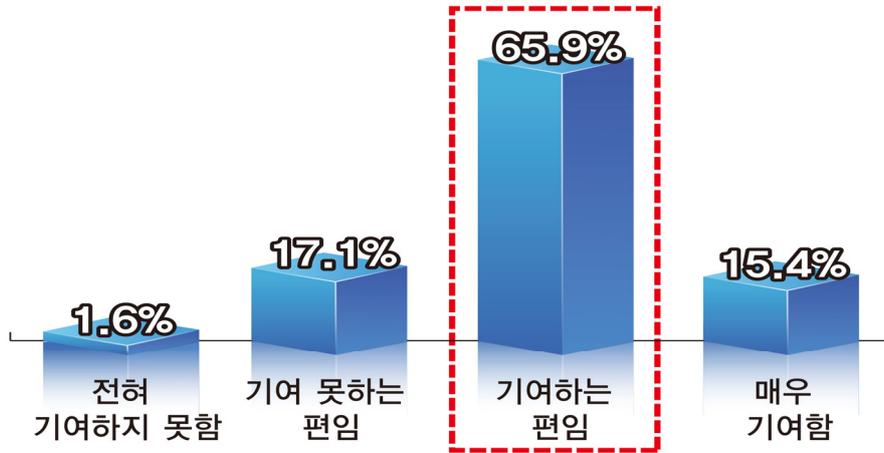


[그림 4-14] 소속 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의 경제적·사회적 발전 기여도

- 현재 지역 간 문화격차가 체감에 대해서는 54.8%가 문화격차가 매우 심함, 43.6%가 문화격차가 약간 있음, 1.6%는 문화격차가 거의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문화격차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없었음

〈표 4-20〉 지역 간 문화격차 체감도

문화격차가 전혀 없음		문화격차가 거의 없음		문화격차가 약간 있음		문화격차가 매우 심함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0	0	2	1.6	55	43.6	69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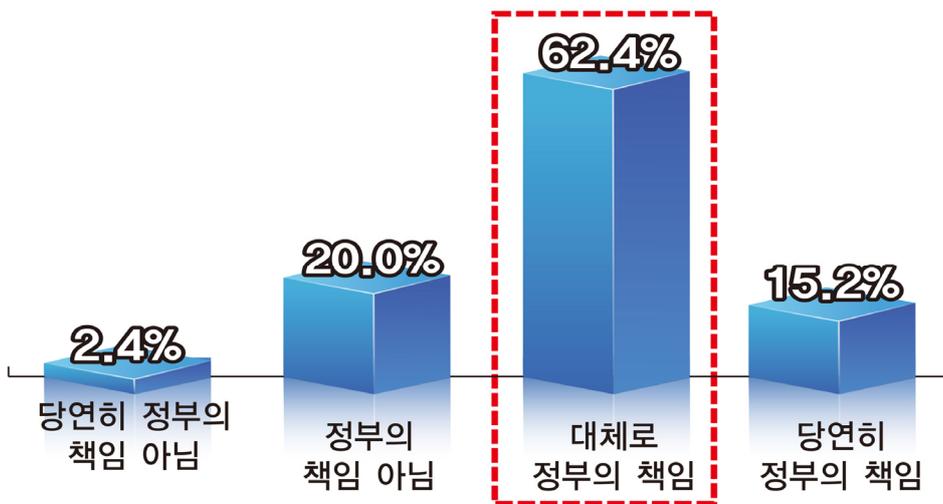


[그림 4-15] 지역 간 문화격차 체감도

-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62.4%가 대체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응답했고, 정부의 책임 아님 20%,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15.2%, 당연히 정부책임이 아니라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표 4-21>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아님		정부의 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의 책임		당연히 정부의 책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3	2.4	25	20.0	78	62.4	19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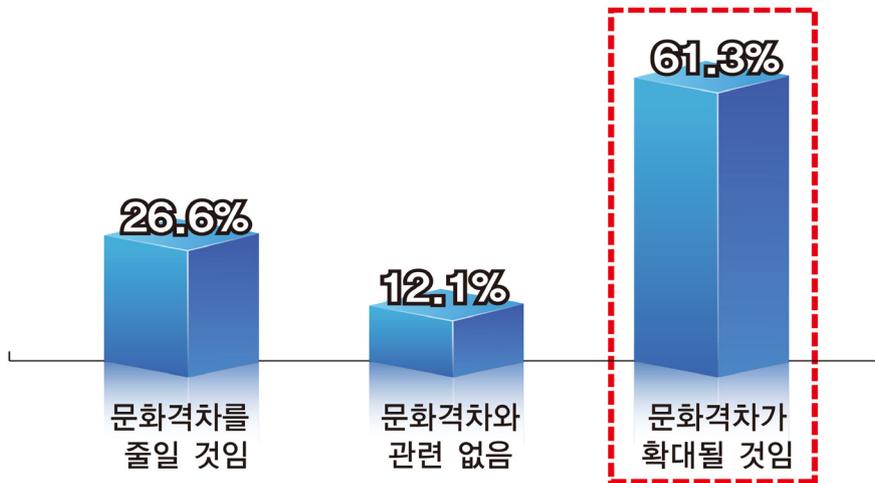


[그림 4-16]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61.3%가 문화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응답하였고, 26.6%는 문화격차를 줄일 것임, 12.1%는 문화격차와 관련 없음을 응답하였음

〈표 4-22〉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문화격차를 줄일 것임		문화격차와 관련 없음		문화격차가 확대될 것임	
빈도	%	빈도	%	빈도	%
33	26.6	15	12.1	76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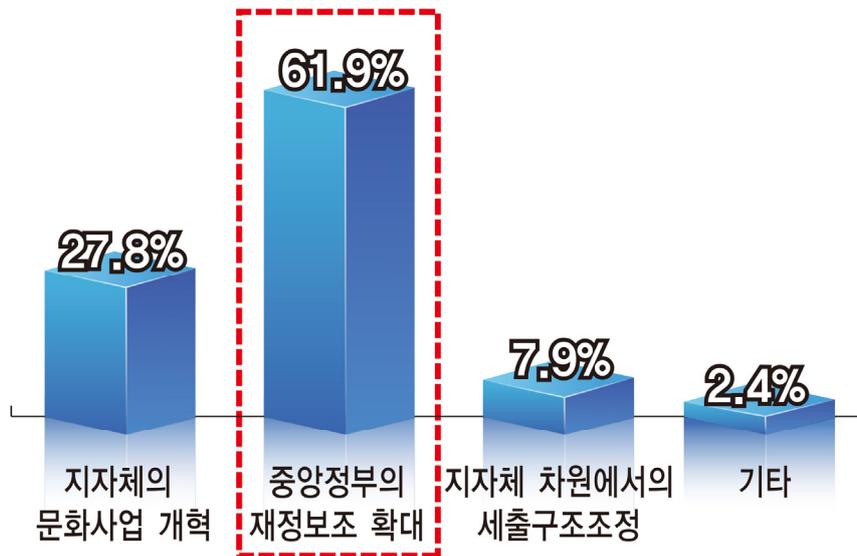


[그림 4-17]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61.9%가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확대를 응답하였고, 27.8%는 지자체의 문화사업 개혁으로 나타났음

〈표 4-23〉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

지자체의 문화사업 개혁	빈도	35
	%	27.8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확대	빈도	78
	%	61.9
자자체 차원에서의 세출구조조정	빈도	10
	%	7.9
기타	빈도	3
	%	2.4



[그림 4-18]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

5) 자유 의견(개방형 응답)

- ☞ 개방형 주요응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지원필요, 가시적 성과창출 어려움 문화예술계의 의존적 보조금 수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이 중점사업 발굴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음

3. 시사점

-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정책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예산,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1순위를 모두 사회복지·보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 ④ 동 질의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순위는 아니지만 의무지출 영역인 사회·복지·보건 분야 다음의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문화 및 관광분야가 재량지출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④ 현재보다 많은 지출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교육이 4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이 42.9%를 차지하면서 문화 및 관광의 규모 확대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함
- ④ 앞서 지출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인식하던 사회복지·보건분야는 31.7%만이 현재보다 많은 지출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56.3%가 현재 지출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④ 즉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지출투자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규모는 현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식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수혜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의무지출 영역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 ④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문화, 체육, 관광 부문에 따라 책임주체를 달리 인식하고 있었는데 체육부문은 대부분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④ 이러한 인식 결과는 앞서 문화재정 세출 부문별(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구성비가 중앙정부는 문화예술이 가장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이 가장 높은 구성을 나타내어 체육이 문화재정 내에서도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결과와 맥을 같이 함
- ④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65.9%가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④ 문화격차와 관련하여서는 54.8%가 지역 간 문화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격차가 대체로 정부의 책임(62.4%)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④ 또한 61.3%는 지방분권화로 지역 간 문화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61.9%가 중앙정부의 재정보조 확대를 응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가 문화격차로 연결될 것을 내포하고 있음



제 5 장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운용 사례

제 1 절 | 프랑스 문화재정운용 사례

제 2 절 | 영국 문화재정운용 사례

제 3 절 | 시사점

제1절 | 프랑스 문화재정운용 사례

1. 프랑스 국가재정체계 및 문화정책 동향

▣ 재정기본법을 근거로 미션-프로그램-액션 체계 성과주의 중심의 예산편성

- 2001년 정부의 과도한 공공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중심의 재정체계를 위한 재정기본법(LOLF, loi organique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을 마련, 2006년부터 예산체계가 개편됨 (정보람, 2016)
 - 재정기본법(LOLF)은 예산을 정책의 미션과 연계하여 예산서를 미션-프로그램-액션 체계로 편성하고 미션별로 예산배분은 부처 단독 또는 부처 공동으로 설정되는 성과주의 중심의 재정체계임
 - 정부 재정사업 관리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이윤식 외, 2006)
- 회계구조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와 유사한 일반예산(budget général)과 부속예산(Budget Annexes), 특별배속예산(Comptes d'Affectation spéciale), 재정적 원조 예산(Comptes de concours financiers)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62억 유로이고, 기능별 예산구분인 32개 미션 중 문화(Culture)분야 예산은 29억 유로임

〈표 5-1〉 프랑스 기능별 세출 현황(MISSIONS DU BUDGET GÉNÉRAL)(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유로)

공공변화정책(Action et transformation publiques)	20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État)	3,001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État)	2,757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429
공공보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701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461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7,227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État)	664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124
문화(Culture)	2,937
국방(Défense)	42,551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480
친환경 및 지속가능개발(É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1,309
경제(Économie)	1,865
정부재정관리(Engagements financiers de l'État)	41,777
교육(Enseignement scolaire)	71,558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10,859
이민 및 통합정책(망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381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1,080
법무부(Justice)	8,722
언론(도서, 문화산업)(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555
균형발전정책(Outre-mer)	2,067
의회, 헌법위원회(Pouvoirs publics)	992
연구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7,669
은퇴와 사회적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32
지방정부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662
환급과 공제(Remboursements et dégrèvements)	119,967
건강(Santé)	1,376
안전(Sécurité)	19,753
사회통합,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9,651
스포츠, 청소년, 협회활동(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959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5,362
총 예산(Total pour le budget général)	446,248

자료 : 재정부 MEF(2018), Le budget de l'état voté P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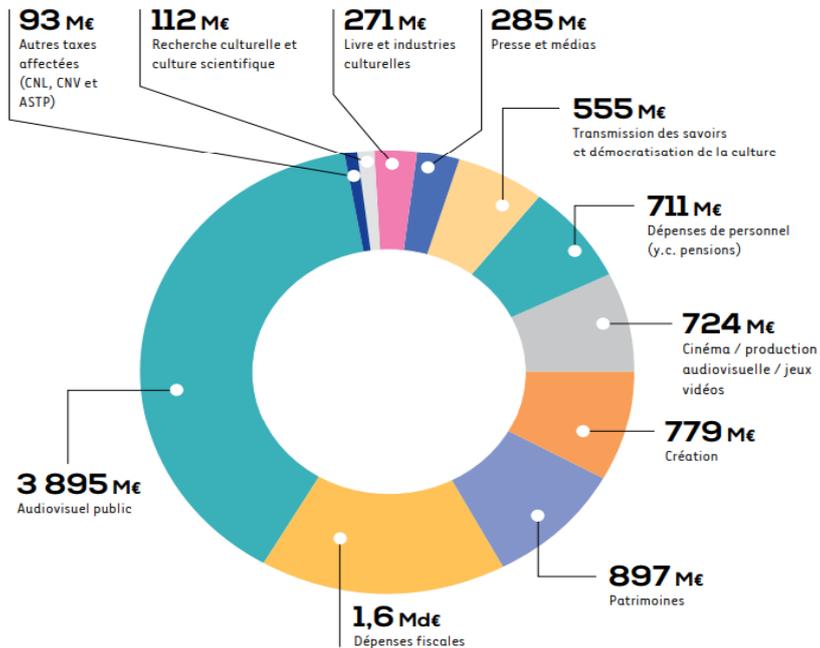
주 : 일반예산(budget général) 기준

■ 2018년 기준 문화관련 예산은 총 100억유로, 전년대비 2,400만유로 증가

- ④ 2018년 프랑스 정부의 문화 관련 총 예산(기금 포함)은 100억 유로로 정책적으로 문화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며, 문화부 예산 총액은 36억 유로로, 작년 대비 총 2,400만 유로 증액
 - 공영시청각 분야 진흥에 투입 될 공적자금은 39억 유로로, 작년대비 3,600만 유로 삭감되었으나 이는 전체예산의 1%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창작 및 문화산업 진흥 예산은 16억 유로로 전년대비 3,600만 유로 증가
 - 국립영상센터(CNC)를 통해 영화산업진흥 예산은 7억 2,400만 유로로, 특히 영상제작 및 비디오 게임에 지원할 계획임
 - 그 외, 국립도서센터(CNL), 국립버라이어티뮤직&재즈센터(CNV), 사립극장 지원협회(ASTP)에 9,300만 유로 배정할 계획임

LES CHIFFRES CLÉS

UN BUDGET CONFORTÉ POUR LA CULTURE : 10 MDE



자료 : 문화부 PLF(2018), 2018 un budget de transformation¹³⁾

[그림 5-1] 프랑스 문화부 소관 문화 미션 프로그램 예산(2018년 기준)

13) 재정법안 PLF는 정부가 제시하는 법규집으로 정부가 매 회계연도를 위해 국가의 수입과 지출 전체를 제시하는 문서, 당초재정법률(LFI, Loi de finances initiale)은 의회가 매 회계연도를 위해 국가의 수입, 지출 전체를 예견하고 승인하는 PLF에 기초하여 표결함

■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분야를 소관**

☞ 프랑스의 문화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분야를 소관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은 문화부 이외 타 정부 부처(ministère), 지방통합 행정청(préfectures régionales et/ou départementales)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함

- 2016-2017 예산에서 문화부는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위해서 타 부처에서(외교부, 교육부, 내무부, 환경부, 법무부, 총리실, 관광청 등) 40억1천4백3십만 유로를 할당 받았으며, 이는 문화부 예산보다 많음

- 문화부와 타 부처 간의 협약은 예를 들어 교육부에 관해서는 학교 문화에 관련하여, 복지부(건강부)에서는 공공 의료 구조, 법무부에서는 수감자에 대한 문화적 권리 등의 사업내용임

☞ 문화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공공 문화 기관(박물관, 국립 극장, 고등 교육 학교 등)의 운영관리와 타 부처와의 협력, 지역 및 지방 당국의 문화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며,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 문화적인 삶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유럽연합과 국제사회와의 문화교류
 - 프랑스 문화모델 보존과 창작활동과 예술가 지원(프랑스에서 예술가지원은 분야별로 기금을 운영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를 지역이 교부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음)
 - 공영방송
 - 공공법인 지원
 - 타 정부부처와 공조
-

■ **문화정책의 미션은 개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접근성(Accessibilité) 강화**

☞ 문화정책은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 ‘문화분권화(décentralisation culturelle)’, ‘문화다양성(diversité culturelle)’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오늘날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개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접근성(Accessibilité) 강화를 미션으로 함

☞ 문화부 장관 프랑수아즈 니센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강조하고, 6개 항목

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함

-
- 정부차원에서 학교 및 공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문화 접근성 향상 지원
 -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문화”를 유럽 재건의 핵심 주제 및 방법으로 부상
 - 예술창작과 프랑스식 문화 다양성 모델 보존 지원
 - 미디어의 독립 및 다양성, 역동성 보장 및 지원
 - 문화부 및 관련 공기관 구조개혁
-

■ 문화정책을 국가차원의 역할로 인식, 지방분권에도 국가적 책임을 유지

- ④ 프랑스는 문화권을 사회권으로 간주하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1946년 10월 27일 헌법전문(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에 명시하면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

국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상태,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특히 어린이, 부녀자, 노근로자 등에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건강권, 기초생활보장, 휴식권 그리고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어린이나 성인에게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접근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리고 공공교육 기관은 국가의 의무이다.

- ④ 문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부여된 배경으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문화나 교육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접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그 책임의 주체가 국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음(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2)
- ④ 한편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형 국가인 프랑스도 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80년대부터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건강, 교육 등이 분권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문화분야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보기 어려움
- 자크 뒤아멜(Jacques Duhamel) 문화부 장관(1971-1973)은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국가의 활동만으로 문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주요한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다’라고 강조.(Xavier & Sylvie, 2009)

- ④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나, 문화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역과 혹은 지역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함
- ④ 즉 국가가 문화정책 분야에 크고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도시나 지역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국가가 공공재정을 관리하고 규제 등을 통하여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④ 문화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어려운 이유는 1)문화정책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2)문화에 대한 국가의 철학(모든 국민이 동등한 문화를 공유해야 함. 문화권)과, 3)지방정부의 재정불충분에 의해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원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 프랑스 문화분야 재정운용 체계

□ 지방정부 및 민간과 수평적 협력을 위한 협약(conventions) 형태의 관계

- ④ 프랑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대체로 ‘계약이거나 ‘협약의 형태로 ‘임시협력(coopération ponctuelle)’, ‘공동자금조달(cofinancement organisé)’, ‘관 공동관리(cogestion d’institution)’, ‘계약정책(politiques contractuelles)’ 등 (Mario, 200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익을 상호 조절함
- ④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상급자치단체¹⁴⁾가 하급자치단체를 감독·통제하는 권한이 없고, 동등한 관계이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겸하는 기관통합형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동일체로 간주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권한을 갖는 모든 집행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가 허용됨
- ④ 문화헌장정책(Charte cultruelle)은 1974년에 처음 시작되어 1979년까지 지방자치단체들과 5년 동안 총 27개의 협정체결로 지역문화 발전에 노력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1981년 자크 랑(Jack Lang)이 문화부 장관이 되면서 문화발전협약제도로 발전함
 -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마르세이유, 그르노블, 보르도 등 몇몇 도시와 도, 레지옹은 정부와 ‘문화 헌장Chartes culturelles’을 맺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자 하였으나 행정 지원체계의 한계와 중앙정부

14) 지방 행정구역은 ‘레지옹(région)’, ‘도(département)’, ‘시(코뮌, commune)’으로 구성

의 의지 부족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함(Poirrier & Rizzardo, 2009)

- ④ 최근 프랑스 지방정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정책을 위한 예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협약은 지방정부 간 협력체 형성과 행정, 재정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15-2016년 문화예산은 레지옹은 4%, 데파르트망(département)은 5%가 감소되었고, 문화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최대 10% 감소된 지역도 있음(L'Observato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2017)

■ 지방분권화에서 문화 불균형을 우려, 재정책방안을 마련

- ④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문화 분야에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특별문화보조금(Dotation¹⁵⁾ culturelle spéciale)을 설치함
- ④ 특별문화보조금은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해 1982년부터 1985년까지 내무부예산 중 매년 5억 프랑을 지방공공기관(Établissements publics régionaux)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하였음¹⁶⁾
- ④ 구체적으로 특별 문화보조금의 70%(3억 5천만 프랑)는 지방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 활동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사용하고 각 지역에 대한 특별문화기금의 배분은 의회의 결정에 따르며 나머지 30%(1억 5천만 프랑)는 특별 문화개발보조금으로 자유롭게 배분하도록 하였음
- ④ 또한 광역단체들은 국가와 함께 문화분야의 기금인 FRAM(Fonds Régionaux d'Acquisition des Musees: 박물관구매레지옹기금)과 FRAC(Fonds Régionaux d'Art Contemporaine: 현대미술레지옹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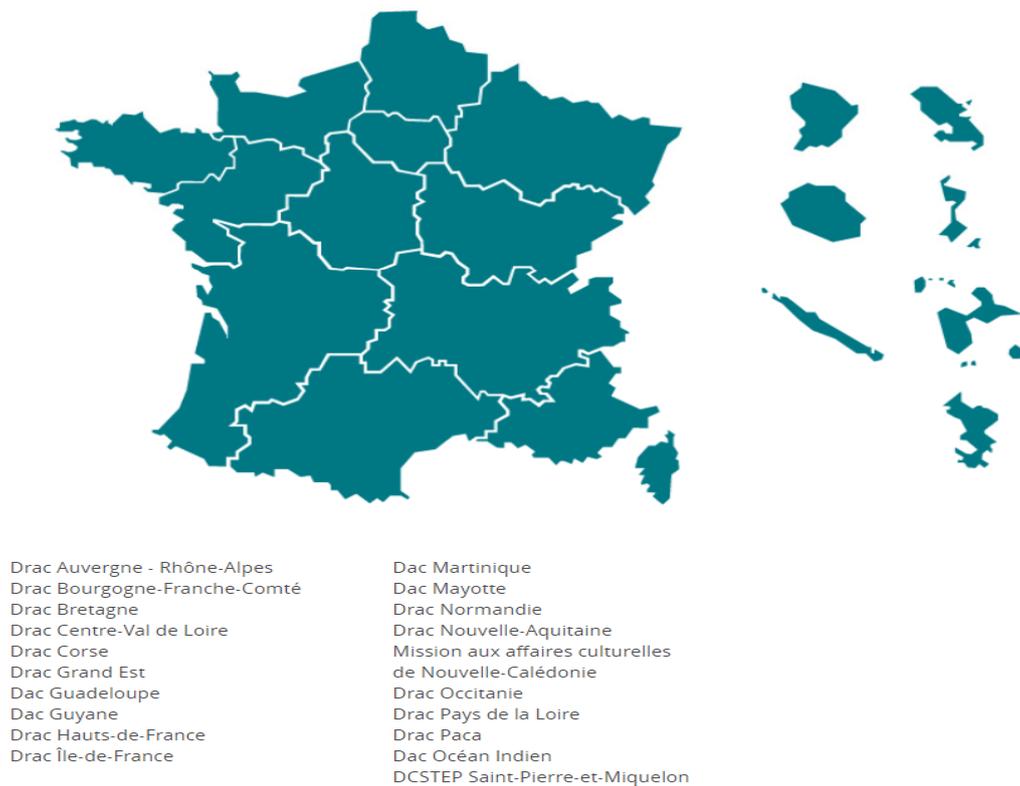
■ 지역의 문화행정 분산을 위한 기구 운영 : DRAC

- ④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실행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즉 문화통신부와의 사이를 연계하는 지방문화사무국(DRAC : 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을 설치

15) dotation : 교부금, 이전재원을 자치단체 자유롭게 사용

16) 1982년 3월 2일의 [레지옹, 데파르트망, 꼬뮌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 중 제93조의 문화정책관련부분조항에 명시

- ④ 문화부 소속의 DRAC은 문화 부문의 지방 분권화(Décentralisation)와 함께 프랑스 문화 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문화 행정의 현지화(Déconcentration)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1977년부터 현재 각 레지옹(광역단위 지자체)마다 설치됨



[그림 5-2] 프랑스 Drac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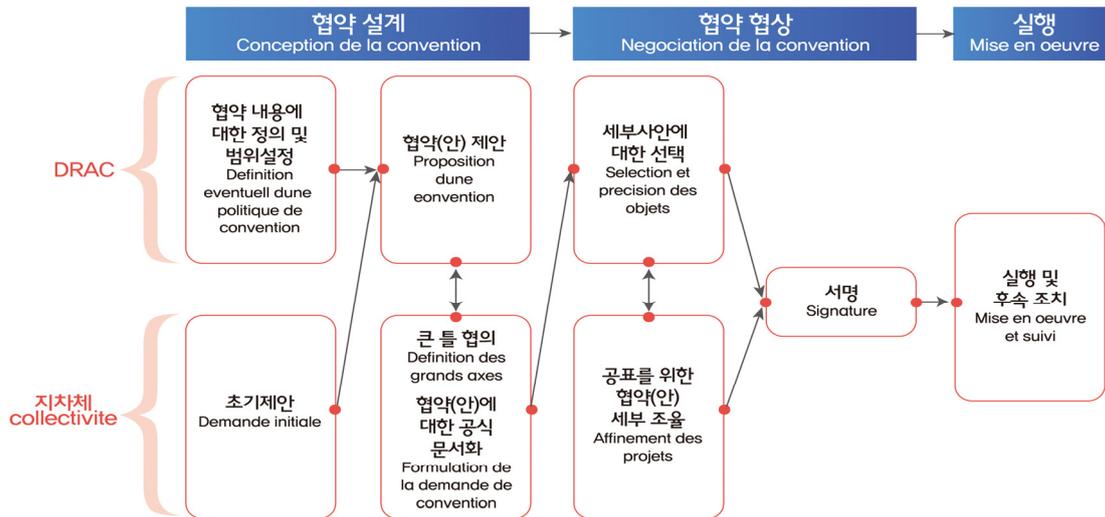
- ④ DRAC은 문화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각 지방의 상황에 맞게 실행에 옮기고, 전문가 양성, 문화행사 기획, 문화유산 관리 등의 업무와 지역사회에 자문 역할(독서, 음악, 시각 예술, 무용, 연극, 영화 및 시청각, 과학 및 기술 문화, 박물관, 기록 및 유산 등)을 수행함
- ④ DRAC은 문화부로부터 지방정부 보조금 예산 배분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관할구역의 프로젝트(문화, 예술, 교육 및 지식의 전달, 문화 다양성과 확장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예술 관련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예산을 정부부처에 요구함

- ④ DRAC의 주요사업은 1)문화재복원 및 건축, 2)창작(민간에 공모,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 공모에 대한 심사는 정부관계자, 전문가, 기자 등으로 구성) 3)문화 민주주의임

□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재정 배분을 위해 문화발전협약 제도 운영

- ④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맞물려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분권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문화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위해 계약(협약)으로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형성하는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 제도를 운영함
- ④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사업의 균등분배와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문화정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재정 협약임
- ④ 중앙정부인 문화매체부와 지방정부 간에 협정으로, 3년 동안 지역의 음악 프로젝트, 문화유산, 독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하며,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지역문화사업국(DRAC)과 지방정부가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은 1년을 기본기간으로 하고 1년에서 2년을 갱신할 수 때문에 대부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3년간 계약관계에 있음
- ④ 문화발전협약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예술교육만 관련된 예술 교육 계약(CLEA), 지역 독서 계약 (CTL), 도시 그리고 예술과 역사의 협약(VPAH), 농촌과의 협약 등을 들 수 있음
- ④ 정부와 레지옹, 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등이 다자간 협약,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한 단체와 협약을 맺는 양자간 협약 등 여건에 맞춰 협력대상과 협약을 맺음
 - 문화발전 협약은 법에 의한 의무계약이 아닌 협약관계로 중앙정부와 지역의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함께 사용하고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조정함
 - DRAC과 레지옹의 협약은 다년간(3년, 5년 등) 추진을 기본으로 하며, 레지옹이 DRAC에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DRAC의 검토에 의해

협약이 체결됨(DRAC은 레지옹과 협의 혹은 단독적인 판단으로 예산배분을 결정함)



자료: DRAC(1993), Les 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 : un milliard en dix ans.

[그림 5-3] 프랑스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의 절차

- ☞ 즉 DRAC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협약을 통한 수평적 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DRAC이 협약내용을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하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협약내용을 초기제안하고, 이를 서로 문서화하고 세부 사안에 대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후속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협약함
- ☞ ‘문화발전협약’은 82년부터 9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28건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500여개의 기초단체(communes), 80여개의 도(Departements), 50여개의 기초단체조합(syndicate de communes), 10여개의 레지옹(regions)의 문화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음(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cultur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3)
- ☞ 2015년 기준으로 351개의 협약 중에서 40%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는 작은 지역의 지방정부와 체결하고 있음

〈표 5-2〉 연도별 프랑스 문화발전협약의 현황

(단위: 개)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합계
협약 수	78	113	117	119	72	95	124	174	176	161	1,228
총 협약											
départements	10	20	19	13	18	34	28	23	26	23	224
villes	68	87	85	91	49	52	88	121	130	119	890
pays	-	6	13	13	5	7	5	12	14	15	90
régions	-	-	-	2	-	2	3	8	6	4	25

자료: DRAC(1993), Les 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 : un milliard en dix ans.

■ 자자체의 재정적 축소를 막기 위한 예산협정(Pactes culturels) 체결

- ④ 문화협정(Pactes culturels)은 2015년 1월에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재정적 축소를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Etat)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산 지원을 협정하는 것을 의미함
- ④ 문화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2013년 올랑드 정부에서 문화예산에 대한 축소를(2013년 -4%, 2014년 -2%) 해오면서 발생했던 문제(시민들의 문화접근권과 문화향유권에 부정적인 영향)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④ 협정 내용은 중앙정부 즉 문화통신부가 3년 동안 지방정부의 문화와 관련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협정이며, 3년 동안 문화예산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동의를 해야 함
 - 문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전년도 문화예산지출을 명시하고 이에 준하는 예산을 향후 3년(2015, 2016, 2017)간 유지할 것을 협정에 명시함
 - 문화와 관련된 예산은 예술 창작, 보급을 위한 조직 지원, 양질의 문화 양성(특히 예술교육), 문화유산의 보전과 증진 등에 해당되는 사업임
 - 1년의 협약기간을 유지하는 '문화발전협약'은 1년이나 2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정부와 레지옹, 도,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등이 다자간 협약, 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한 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도 있는 등, 정해진 틀 없이 상황에 따라 협약을 맺음

④ 문화협정은 다음의 4가지를 강조하고 있음

-
- ① 예술 창작, 확산, 혁신에 기여하는 우호적인 환경 조직
 - ② 문화·예술 교육의 범주 안에서 좋은 문화교육의 발전
 - ③ 현재는 많은 대중들이 접근을 가능하게 그리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해 질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
 - ④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식
-

④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60개가 넘는 문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3억4천7백만 유로 수준의 연간 문화예산을 유지하고, 국가는 1억1천만유로 지원을 약속함

④ 문화협정은 '재정협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지방정부도 지출이 발생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지역민의 문화서비스 수요가 커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가 문화인 경우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있음

■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 협약(convention de subvention)기준을 마련

④ 문화부는 협회, 지역 사회, 공공 기관, 민간 기업 및 개인에 의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금 유형별 협약기준을 두고 있음

- 보조금은 공공 영역(지자체, 공공 기관), 민간 법인을 포함하여 개인(역사적 기념물의 소유자, 예술가 등)도 지원받을 수 있음

④ 23,000유로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보조금 협약”의 형식을 통해 지급하도록 법률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협정상에는 목적과 지급되는 보조금의 사용조건 및 총액이 명시되어야 함

④ 보조금을 협약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인에게는 보조금 목적에 따른 사용의무가 부과되고,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부처에 '재정보고서(compte rendu financier)'를 제출해야만 함

④ 보조금 유형별로 기준이 상세하게 제시되는데, 보조금 유형은 부서 정책별로 구분되며 정책의 목표, 자격 기준, 자격 대상, 보조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설명문이 포함되어 있음

- ④ 보조금 협약 내용은 예를 들면 오페라, 연극 등의 공연은 연간 5회 이상 개최하고 이 중 하나는 새로운 창작극으로 해야 하거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작품을 학교, 병원, 수용소(감옥)에서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거나, 영화는 프랑스에서의 제작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함

제2절 | 영국 문화재정운용 사례

1. 영국 국가재정체계 및 문화정책 동향

■ 공공서비스협약(PSA)과 서비스전달협약(SDA)으로 부처의 재정성과 관리

- ◉ 영국은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과 서비스전달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SDA)을 통해 정부부처별 재정투입과 성과를 협약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
 - 1998년 블레어(T. Blair) 정부에 의하여 각 부처의 목적과 목표 체계를 검토하고 이 목표 체계를 위한 지출계획의 효과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분석하는 CSR(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와 부처별 임무 및 전략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PSA(Public Service Agreement) 작성이 제도화됨(이윤식 외, 2006)
 - 영국은 정부의 성과관리에 관한 운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재정법(Finance Act, 1998),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예산책임 및 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국고 및 감사부처법(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s Act, 1866 and 1921), 의회법(Parliament Acts, 1911 and 1949) 등 재정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6)
- ◉ 예산은 3년 단위 부처별 지출상한을 결정하는 부처별할당예산(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과 연간운영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으로 구분되고 지출 성격에 따라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뉨
- ◉ 회계구조는 조세와 기타 정부수입인 통합국고자금(Consolidated Fund)과 투융자 회계에 해당하는 국가융자회계(National Loans Fund), 그 외 다수의 펀드 혹은 기금(Fund)과 계정(Accounts)으로 구성(정보람, 2016)
- ◉ 영국의 2016-17년 총관리지출(TME)은 총 772,525백만 파운드인 이 중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부처 예산은 7,188백만 파운드임

〈표 5-3〉 영국 정부 기능별 세출 추이(2012-13~2016-17)

(단위 : 백만 파운드)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Defence	41,584	40,789	42,729	47,148	40,405
Single Intelligence Account	2,073	2,081	2,198	2,478	2,537
Home Office	13,405	13,183	14,141	12,973	13,619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2,111	2,181	1,800	1,932	1,941
International Development	7,943	10,129	9,801	9,906	10,465
Health and Social Care	124,101	127,899	135,292	165,784	148,380
Work and Pensions	173,158	170,598	174,734	179,729	179,129
Education	79,717	82,347	88,095	81,532	89,730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16,312	12,665	18,850	113,017	16,218
Transport	12,687	7,037	18,289	20,138	20,321
Exiting the European Union	7	7	7	7	23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7,640	6,423	7,348	6,455	7,188
MHCLG – Housing and Communities	3,781	5,638	6,551	6,285	7,739
MHCLG – Local Government	23,329	27,605	25,319	22,932	20,642
Scotland(3)	30,858	31,354	33,206	33,421	33,855
Wales	15,003	15,339	15,643	14,434	15,182
Northern Ireland	18,541	18,543	19,592	19,647	19,642
Justice	9,558	7,695	7,444	7,643	7,881
Law Officers' Departments	598	584	564	533	537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360	2,143	2,437	2,529	2,297
HM Revenue and Customs	46,319	46,208	46,357	46,723	46,213
HM Treasury	-22,482	-5,776	-62,468	-43,385	-45,040
Cabinet Office	9,731	8,912	11,011	10,717	9,616
International Trade	149	207	279	340	349
Small and Independent Bodies	1,222	1,322	1,148	1,064	1,663
Total departmental expenditure	619,707	635,113	620,366	763,984	650,530
Central government gross debt interest	48,983	48,797	45,371	45,127	48,658
Locally financed expenditure	29,391	30,064	32,238	39,014	42,934
Public sector depreciation	36,565	37,940	39,026	40,131	40,780
Net expenditure transfers to the EU	11,529	11,879	11,658	11,253	9,160
Public corporations' own-financed capital expenditure	14,660	14,384	18,007	14,615	16,689
Accounting adjustments	-29,005	-44,306	-15,264	-156,987	-36,226
Total other expenditure	112,123	98,758	131,036	-6,848	121,995
Total Managed Expenditure	731,830	733,871	751,402	757,136	772,525

자료: HM Treasury(2018),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MAY 2018

■ 문화분야 정부조직은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2017년 문화미디어체육부 내의 디지털 관련 부서를 증설, 부처명이 디지털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로 변경되고 디지털 분야 성장에 집중하고 있음
 - 2017년 문화미디어체육부에서 디지털 분야가 추가되면서 직원은 약 2배 증가하여 총 1,000여명이며 여기에는 Brexit의 영향도 있음

■ DCMS는 2018년 글로벌, 성장, 디지털, 참여, 사회 5가지 목표를 수립함

- DCMS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영국을 해외에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문화 예술적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며, 혁신에 투자하고 영국 이미지를 높여 기업과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시민 사회와 문화 예술 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등 GDP가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혁신과 창조적인 능력을 미래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세계를 연결시키고자 함
- DCMS는 미래의 도전 과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전략 목표를 “유연성&효율성”로 뒷받침되는 글로벌, 성장, 디지털 연결성, 참여 및 사회로 수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 확대, 창조산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초고속 광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사회적 행동을 향상 시키며, 예술,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참여를 넓히는 등 영국 전역의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함

-
1. 글로벌: 국제적 무역을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세계와 공유된 가치- 영국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방문하기 좋은 장소임을 홍보한다.
 2. 성장: 모두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성장시킨다.
 3. 디지털 연결성: 계속적으로 영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분야를 촉진시킨다.
 4. 참여: 사회적 활동을 극대화 하며 문화, 스포츠 신체활동에 참여시킨다.
 5. 사회: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회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정보가 잘 제공되는 사회로 만든다.
 6. 유연성&효율성: DCMS가 미래에 걸맞는 능력, 문화, 커넥션을 가지도록 한다.
-

■ 영국의 DCMS는 43개의 공공유관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 ④ DCMS는 1개 비각료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 1개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31개 집행 NDPB(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3개 공기업(Public corporation), 3개 기타기관(Other), 4개 자문NDPB(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y) 총 43개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5-4〉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공공유관기관(Public Bodies)

비각료부처 (Non-ministerial department)	1. The National Archives		
책임운영기관 (Executive agency)	2. Royal Parks		
집행 NDPB (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3. Arts Council England	18. National Museums Liverpool	
	4. Big Lottery Fund	19. National Portrait Gallery	
	5. British Film Institute	20. Natural History Museum	
	6. British Library	21. Royal Armouries Museum	
	7. British Museum	22. Royal Museums Greenwich	
	8. Gambling Commission	23. Science Museum Group	
	9. Geffrye Museum	24. Sir John Soane's Museum	
	10. Heritage Lottery Fund (administered by the NHMF)	25. Sport England	
	11. Historic England	26. 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12. Horniman Public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27. Tate	
	13. Horserace Betting Levy Board	28. UK Anti-Doping	
	14. Imperial War Museum	29. UK Sport	
	15.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30. Victoria and Albert Museum	
	16. National Gallery	31. VisitBritain	
	17.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32. VisitEngland	
	공기업 (Public corporation)	34. BBC	36. Historic Royal Palaces
		35. Channel 4	
기타기관 (Other)	37. English Institute of Sport	39. S4C	
	38. Ofcom		
자문 NDPB (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y)	40. The Advisory Council on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41. The Reviewing Committee on the Export of Works of Art and Objects of Cultural Interest		
	42. The Theatres Trust		
	43. Treasure Valuation Committee		

자료: UK government 홈페이지 Departments, agencies and public bodies(<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 또한 DCMS 예산에 포함되어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산하기관 (ALBs)이 36개 있음

- 공영방송, 시민사회, 문화·예술 도서관, 유산, 스포츠, 박물관 및 갤러리, 데이터·디지털 및 통신, 미디어 및 창조산업, 관광, 도박 등의 정책영역을 지원하고 있음

〈표 5-5〉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산하기관(ALBs)

공영방송 (Public Broadcasting)	1.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 S4C - Welsh Fourth Channel Authority
시민사회 (Civil Society)	3. Big Lottery Fund	
문화 예술, 도서관 (Arts, Culture and Libraries)	4. Arts Council England	5. British Library
유산 (Heritage)	6. Churches Conservation Trust	7.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8. Historic England	9. The Royal Parks (TRP)
스포츠 (Sport)	10. Sport England	11. UK Anti-Doping
	12. Sports Grounds Safety Authority	13. UK Sport
박물관 및 갤러리 (Museums and Galleries)	14. British Museum	15. National Portrait Gallery
	16. Geffrye Museum	17. Natural History Museum
	18. Horniman Public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19. Royal Armouries Museum
	21. Imperial War Museum	20. Science Museum Group
	23. National Gallery	22. Sir John Soane's Museum
	25. National Maritime Museum	24. Tate Gallery
	27. National Museums Liverpool	26. Victoria and Albert Museum
데이터, 디지털 및 통신 (Data, Digital and Telecoms)	29.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30. Phone-paid Services Authority
	31.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미디어 및 창조 산업 (Media and Creative Industries)	32. British Film Institute (BFI)	
관광 (Tourism)	33. British Tourist Authority	
도박 (Gambling)	34. Gambling Commission	35. Horse race Betting Levy Board

자료: DCMS(2017),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2. 영국 문화분야 재정운용 체계

□ 문화부와 산하기관은 협약(Management Agreements)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

- 문화부와 산하기관은 다년협약을 기본으로 하며, 약 20페이지 분량의 협약서(Management Agreement)을 작성하며, 협약 사항에는 우선순위, 성과지표(KPI), 의무, 책임 및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조건이 명시됨

PART A Priorities, Funding and Engagement

국무 장관의 우선권 Secretary of State's Priorities
재정 할당 Financial Allocation
성과 측정 Performance Measures
관여 방식 Engagement

PART B Financial Controls

위임된 재무 제한사항 Delegated Financial Limits
지출 통제 Spend Controls
조달 Procurement
효율성 Efficiency
경영정보 Management Information

PART C Governance Framework

개괄
관리 방식과 책임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DCMS 재무 책임자의 책임 DCMS Principal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해당기관재무 책임자의 책임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y
이사회/위원회 The Board
의장의 책임 Chairs responsibilities
개인 위원회 멤버의 책임 Individual Board members' responsibilities
출판과 정보 전략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trategy
내부 감사 Internal Audit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접근 권한 Right of Access
공적 자금 관리 및 정부 차원의 기업 지침 Managing Public Money and Other Government-wide corporate guidance and Instructions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비즈니스 플랜 Business Planning

직원Staff
 평가Review
 Arrangements in the event that an Arm's Length Body is wound up
 예산과 Grant-in-aids Budgets and Grant-in Aid
 Grant-in aid 와 보호된 보조금Grant-in aid and Any ring-fenced grants
 보조금 외의 수입 투자 Investing non grant income
 부처 성과 보고 Reporting Performance to the department
 위임된 권한Delegated Authorities
 정부 은행 서비스 이용 면제Exemption from using the Government Banking Service
 Borrowing Voted Loans
 Capital Projects
 2010 평등법 준수Compliance with the equality Act 2010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

-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약 4-5개로 소속기관과 의논을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과 타겟을 설정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하기관의 재량으로 추진함
 - 예술 위원회(ACE)가 2012-15년 경영 계약(Management Agreement)에서 설정한 3가지 KPI는 ①NPO의 기여 소득 증가, ②NPO/MPMs에서의 지속적인 관람객 숫자, ③NPO/MPMs를 통한 디지털 관람객 활동의 증가임
- 성과 측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기관에 따라 모두 다르나 공통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

-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관리가 우수하고 지원에 합당한 가치가 있음
- 향후 경영 전략
- 지속성에 초점을 두며 Lottery Funding의 요구사항을 만족함
- 인력에 있어서 사회적 배경의 다양성 (BAME, 성, 장애, 지역을 고려한 인력)
- 다양성의 촉진, 관리 및 평가
- 어린이, 청년들 대상의 사업
-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
- 시기적절하고 질 높은 문화 프로그램 제공
- 공공 지원금의 지역별 분산 지원
- 기간 준수 및 높은 고객 만족 달성
- DCMS 및 다른 정부 부서와 효과적인 협력

☞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성과측정은 다음의 성과지표를 포함

-
- ① 접근성
 - 박물관/미술관 실제 관람자 수
 - 웹사이트 방문자수
 - ② 관람자 프로필
 - 16세 미만 영국 국적 어린이 관람자 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관람자수
 - 16세 이상 영국 국적 소수민족 관람자 수
 - 16세 이상 장애가 있거나 만성 중증 질환이 있는 관람자 수
 - 해외 관람자 수
 - ③ 교육/ 원조
 - 정규 교육과정의 16세 미만 어린이 직접 방문수
 - 현장의 교육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 수
 - 외부 봉사 활동에 참여한 16세 미만 어린이 사례 수
 - 교육 및 참여 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의 성인 수
 - 외부 봉사 활동에 참여한 16세 이상 성인 사례 수
 - ④ 고객만족
 - 몇 %의 방문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방문을 추천하는가
 - ⑤ 수입창출
 - 관람티켓수입
 - 기타 상품 판매 (대관, 라이선싱, 컨설팅, 머천다이징을 포함)
 - 기부
 - ⑥ 지역관계
 - 장소 대여 횟수
-

▣ 산하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Tailored review(산하기관 운용평가) 실시

- ☞ Tailored review는 영국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 공공기관의 지속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조직의 기능, 형태, 성과 및 관리방식을 평가하고 있음
- 영국정부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대중의 증가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과제에 직면(Leslie and Massey, 2015)하는 한편 국가 채무의 증가로 2010년부터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 실시

- Tailored Review 대상은 영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 정부 공공 기관(이하 NDPBs :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책임 집행기관 (이하 EAs: Executive Agencies), 비정부기관 (이하 NMDs : Non-ministerial departments) 임
- ④ DCMS에서도 산하기관의 예산운용 내용에 대해 Tailored review를 하고 있으며, ACE의 경우 2016년 처음 Tailored Review를 받았고 정부에서 정한 타겟, 기준, 목표에 대한 ACE의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평가를 받음
- Tailored Review에서 ACE의 KPI 달성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 ①스폰서쉽, 기부를 포함하는 NPO의 기여소득은 2012/13년도 £174,825,607에서 2014/15년도 £ 184,859,942로 증가, ②영국에서 퍼포먼스, 전시, 영화관람 참여가 2012/13년 91,842,784명에서 2014/15 97,940,610명으로 증가, ③NPO/MPMs를 통한 디지털 관람객 활동은 2012/13년 39.3%에서 2014/15년도 54.4%로 증가했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NPO는 37.2%에서 41.7%로 증가 등 KPI를 만족시킴

〈2016년 ACE의 Tailored review 개요〉

1. ACE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및 문화적 경험을 옹호하고 개발하며 이에 투자한다”는 기초 아래 왕실 헌장에 의해 1946년 설립되었다. ACE는DCMS로 부터 Grant-in-aid를 받고 1993년 국가 복권법에 따라Lottery Funding 을 분배 받는다. ACE는 또한 음악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부의 기금을 받고 있다.
2. ACE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 및 문화적 경험을 개발하며 투자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을 표명하며, 이를 위한 다섯 개의 주요 목표들을 설정했다. (우수한 문화 예술; 모두를 위함; 탄력과 지속력; 다양성과 기량; 어린이와 청소년)
3. ACE는 Grant-in-aid 와 Lottery Funding의 투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의 개발 활동; 예술과 문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의 특수한 기능을 한다.
4. 모든 Tailored Review와 마찬가지로 리뷰의 첫 단계는 ACE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에 질문하고, 다른 NDPB와 같이 계속해서 정부 기금을 제공받아야 하는지 조사되었다. 검토 팀은 ACE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며, 그들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하고 일관된 평가를 내렸으며 리뷰는 또한 정부 지원을 받지만 Arm’s Length 에 작용하는 NDPB 모델이 ACE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5. 검토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ACE의 효과 효율성 및 관리방식을 검토했다.
6. 전반적으로, 평가 팀은 주요 이해 관계자와 면담과 일반 설문조사를 통해 ACE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설문 응답자의 82%는 ACE가 지원 금액에 비해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했고, 89%는 ACE가 해당 분야에 상당한 가치를 더했다고 응답했으며 75%는 이 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9%는 “우수한 문화 예술”이라는 목표를 매우 잘 또는 잘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 기관의 이해관계자들은 70년 이상의 명성을 쌓아온 이 기관이 현재 역사상 최고의 순간에 달아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7.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가시성과 참여에 높은 평가를 받은 의장과 최고 책임자부터,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접촉에 개방적이고 도움이 되며 협조적이라는 지속적인 평가를 받은 Relationship Manager 까지 ACE직원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8. 리뷰는 ACE가 강하고 건강하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Grant-in-Aid 의 50% 절감 요청을 받은 뒤, 직원 수를 줄이고, 보조금 관리 제도를 개정했다. ACE는 향후 몇 년간의 추가적인 절감 계획을 세웠으며 이 효과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리뷰 팀이 발언한 ACE의 제약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감했다.
9. ACE가 높은 평가를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개선할 방법이 있다. ACE는 교육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며 변동 가능한 우선순위와 문화 예술 분야의 니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리뷰는 ACE가 그들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가지 권고사항들을 수록하였다.

- Development Agency

우선, DCMS는 ACE와 협력하여 ACE의 ‘Development Agency’로서의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 그들의 10년간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보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과 판단에 대한 체계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들은 ACE의 Development Agency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이 도서관과 박물관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 전 국에 걸쳐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 할 것; 문화 예술 분야의 교육과 공유를 촉진할 것; 디지털, 재정 탄력, 리더십 등의 분야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추천하였다.

- Grant Making and Investment

리뷰는 ACE가 어떻게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투자가 ACE의 더 넓은 전략을 반영하는지 명확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ACE는 자체 투자와 다른 보조금 기부자들이 투자 하는 것에 교훈을 얻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보조금 투자의 결과와 그것이 청중과 실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ACE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ACE에 투자를 신청하는 기관과 혜택을 받는 기관 모두의 관점에서 보조금의 접근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 Performance

리뷰는 ACE가 조직적이고 도전적인 전략적 성과 프레임 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의 성과를 더욱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Governance

리뷰는 적재적소에 책임 분배가 되어 있는 우수한 조직구조에 대한 몇몇 증거들을 확인했다. 이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주요 분야는 ACE의 리스크 수용 범위로 더욱 강화된 평가와 공식적 표현에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투명한 조직구조를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가. 리뷰는 ACE와 DCMS사이의 관계의 몇몇 변화를 권고한다. DCMS는 ACE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ACE가 정부로부터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ACE는 11 billion의 정부 자금을 받고 있으며, 최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만 한 기관임을 표명해야 한다. DCMS는 ACE의 성과를 감시하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the Culture White Paper(문화 백서)에 기술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정부의 예술 및 문화 우선순위를 전달하기 위해 ACE와 협력해야 한다.

나. ACE는 6월 중에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공식 반응을 발표 할 것이다.

▣ 문화예술분야에 계약을 통한 다년지원 추진 : NP(National Portfolio)

- ④ ACE 예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1) National portfolio (2) Project funding system (3) Development funds ACE) 이 중 지원금을 기관 혹은 단체에게 4년간 장기 지원하는 예산은 NP(National portfolio)임
- ④ NP예산은 ACE 예산의 3가지 구분 중 가장 큰 규모로 2018년 현재 831개의 조직이 ACE와 다년간 예산 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183개가 증가한 규모로 ACE의 NP 지원 역사상 가장 큰 지원 금액이 분배됨
 - 연간 £409 million 의 지원금이 NP로 지원되며, 이중 £383 million 은 정부의 Grant-in-Aid로 부터, £71 million 은 National Lottery로 부터 분배됨.
- ④ NP 계약의 주요내용은 지원금 사용 방안, 주요 사업, 예산편성 등 다년간의 비즈니스 플랜을 중심으로 하며, 계약사항 준수와 활동내용은 ACE 직원(Relationship manager)이 모니터링 함
 - NPO 모니터링은 기관의 목표, 조직 경영 구조, 재무로 평가되며, 조직 경영 구조, 재무 모니터링은 모든 NP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기관의 목적 및 계획 달성에 관한 평가는 기관이 NPO신청 시 제시한 비즈니스 플랜의 달성 목표에 따라 다름

〈NP 계약시 비즈니스플랜 사례(Bridge Organisation)〉

ACE는 10개의 Bridge Organization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과 문화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지역 학교, 미술 기관, 박물관, 도서관, 음악 교육 허브, 지역 당국, 추가 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 그리고 많은 다른 파트너들과 문화적 제공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일하며 Artsmark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들과 예술 상을 수여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ACE는 매년 10m파운드를 Bridge Organization에 투자하는데 이는 문화 교육 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하도록 쓰인다. Bridge Organization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원된다. 다음은 이 기관들의 목표 달성 평가 항목이다.

- 이 기관은 대상이 되는 학교, 문화 단체, 음악 교육 허브에 보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이 기관은 ACE와 협의한 장소에서 특정 네트워크와 문화 교육 파트너십을 통합하고, 개발하여 목표로 하고 있는 제안을 제공하였는가?
- 이 기관은 ACE 연간 파트너십 투자 예산의 목표와 100% 일치 하였는가?
- 이 기관은 이 기관이 담당하는 지리적 영역에서 Artmarks(ACE가 인정한 학교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품질 기준, 학교는 성과에 따라 Silver, Gold, Platinum 등급이 부여) 의 50%를 달성하였는가?
- 이 기관은 Arts Award 조정에서의 30%의 연간 성장률을 달성하였는가?

- ④ 다년지원이 정부의 Spending review 기간과 매치가 안 될 때가 있고 정부가 바뀌어 ACE에 할당되어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Development funds에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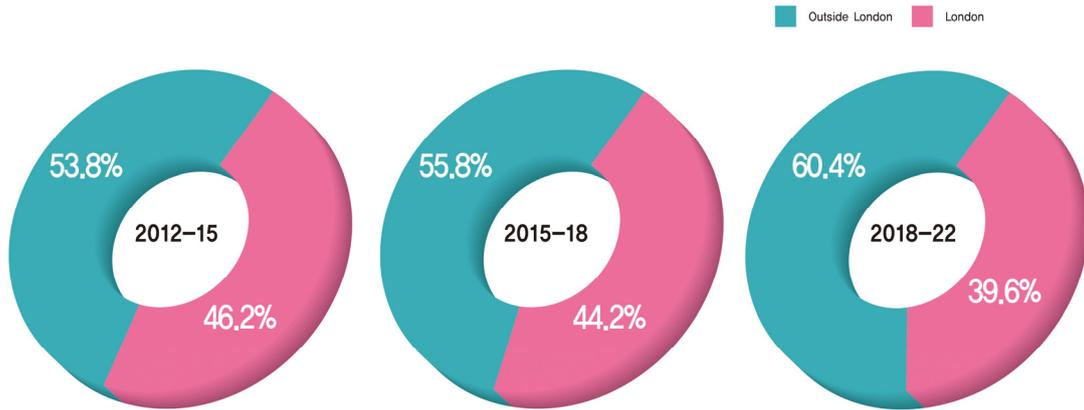
- 정부정책이 바뀌어 NP 계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될 때에는 기관과 단체들에게 통보함(ACE 에서 지원을 멈추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관과 단체는 이를 수용함)

■ NP 대상을 지역 간 균형분배, 더 작고 다양한 기관 지원, 자생력 확보로 설계

- ④ ACE는 2022년까지 기금의 재조정 일환으로 소규모 기관과 런던 외에 위치한 문화 예술 기관으로 지원의 폭을 늘리고, 2018년부터 고품질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을 NP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힘

- 2018년 66개의 박물관과 7개의 도서관이 새로운 NPO 협약을 맺었으며 이 협약은 기존 3년간의 협약 기간에서 1년 더 들어난 4년의 펀딩 협약으로 계약됨
- 2022년까지 문화예술계의 다양성 향상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연간 £ 212.5 million가 투입 될 계획이며, 특히 역사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문화 클러스터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을 분배할 예정임

- NP 예산은 지역별로 런던에 가장 집약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그 집중도는 꾸준히 하락세이며, 2022년 까지 런던에 집중되는 지원이 약 7% 가량 줄어들 예정으로 런던 지역이 39.6%, 타 지역 60.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ACE(2017), Our National Portfolio in numbers, 2018-22

[그림 5-4] 런던 및 타 지역 NP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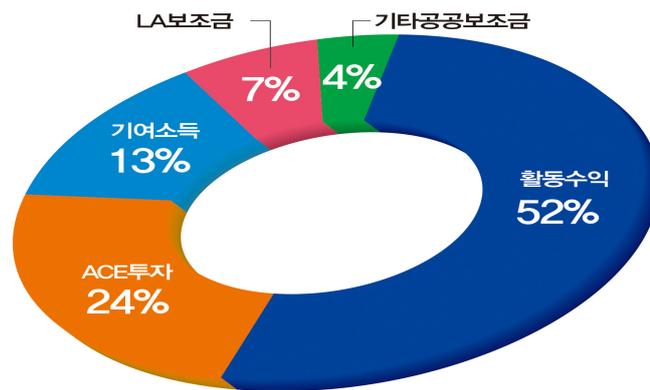
- 또한 연간 £ 2.5 million의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NPO인 로얄 오페라 하우스, 사우스뱅크 센터, 로얄 국립 극장, 로얄 셰익스피어컴퍼니 등에는 기금을 평균 3% 인하하였고, 더 작고 다양한 기관을 NPO로 도입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 NPO는 조직의 규모별 구분은 수익을 기준으로 하며, 소규모 기관(연 수익 £250,000 이하), 중형 기관(연 수익 £760,000이하), 대형 기관(연 수익 £760,000 이상)으로 분류하며 2016/2017 규모별 예산 분배는 다음과 같음

<표 5-6> ACE 규모별 NPO 예산 현황(16/17)

규모	기관 수	%	ACE NPO Grant 16/17 (£)	%
소규모	144	22	13,234,897	4
중규모	216	33	35,943,314	11
대규모	289	289	287,097,865	85
합계	649	100	336,276,076	100

자료: ACE(2017), Annual Report & Accounts 2016/2017

- ACE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NPO의 수입구조는 정부지원금보다 활동수익금(티켓 판매, 워크샵, 머천다이징 및 멤버십 등을 포함하는 핵심 활동) 규모가 큼
-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NPO 회계정보를 분석해 보면 활동수익 52%, Art Council의 투자 24%, 스폰서십, 신탁금, 기부 등의 기여소득 13%, LA보조금(Local Authority Grant, NPO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7%, 기타 공공 보조금 4%를 차지함



자료: ACE(2017), Annual Report & Accounts 2016/2017

[그림 5-5] 2016-17 영국 문화예술위원회(ACE) NPO 회계정보 분석

- 특히 ACE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관객 데이터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한 관객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Sector Support Organizations (SSO)를 새로운 범주의 NPO를 지정하여 문화예술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
 - 현재 58개의 SSO가 있으며 이 중 24개가 NPO로 지정됨

□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발전기금(CDF, Cultural Development Fund)을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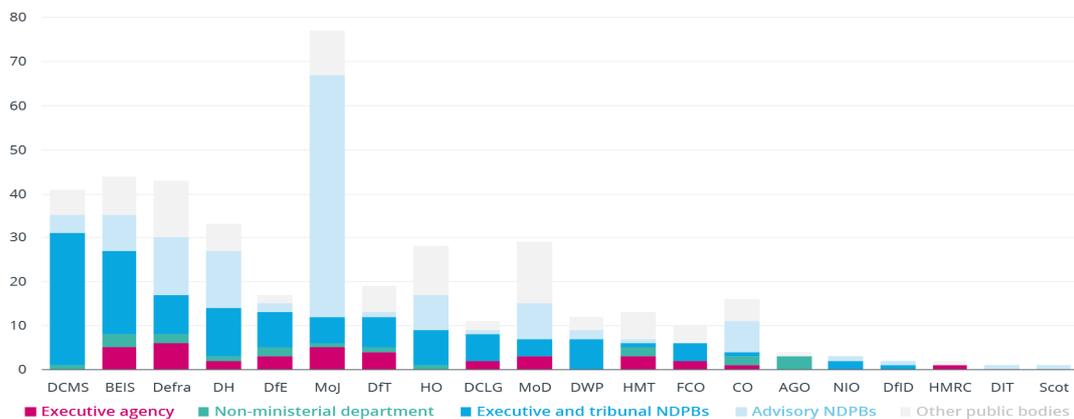
- 2018년 영국은 지역의 도시가 창조적이고 문화적으로 성장하는데 투자하기 위해 2천만 파운드 규모의 문화발전기금(CDF, Cultural Development Fund)을 설치함
 - 2018년 초 창의산업 분야 협상(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문화를 통한 지역성장을 위해 향후 2년간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문화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 ④ 문화발전기금(CDF)의 목표는 지역기반 문화 이니셔티브와 창의적인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문화 중심의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전략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살고, 일하고,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 ④ 문화발전기금(CDF)은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소관으로 설치되었고 전략적 기금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위원회(ACE)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금을 관리함
- ④ 문화발전기금(CDF)은 2천만 파운드 중 1,850만 파운드는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평가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임
- ④ 지역은 재생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여러 프로젝트에 7백만 파운드까지 입찰 할 수 있으며, 창조적 인 사업을 위한 새로운 공간, 역사적인 건물을 다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사용하거나 재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④ 또한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발전기금(CDF)은 런던 이외의 도시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어 런던지역과 런던에 주소지가 등록된 단체는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는 최소 20%의 부담금을 확보해야 함



제3절 | 시사점

- 본 연구에서 주요국 사례분석의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중앙집권형 국가이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한 프랑스와 중앙정부에서 다수의 공공유관기관을 통해 문화정책을 전달하고 있는 영국임
 -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을 시작하면서 문화사업을 포함한 많은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며, 문화사업의 경우 쇠퇴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함께 추진하였음
 - 영국은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인 DCMS 예산의 90% 이상이 공공분야 기관(ALBs : Arm's-length bodies)에 배정되고(DCMS, 2017), DCMS가 소관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Executive and Tribunal NDPBs)은 영국의 전 부처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Cabinet office, 2017), 전달체계가 복잡한만큼 성과관리를 중시하고 있음



자료 : Institute for Government analysis of organisations listed on gov.uk; Cabinet office(2017), Public Bodies

[그림 5-6] 영국 부처별 공공영역 기관(public body) 현황(2017년 기준)

- 주요국가의 정부간 문화분야 재정 제도와 사업을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개괄적인 예산제도를 확인하고, 문화관련 조직(부처)의 역할과 정부간 관계, 문화분야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살펴봄

〈표 5-7〉 한국 영국 프랑스 국가별 문화소관 부처 비교

	영국	프랑스	한국
기관명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	문화부 (Ministre de la Culture)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위상	장관부처	장관부처	장관부처
공무원 수	684명*(산하기관 포함 33,836명)	정규직 14,400명(2018년 기준)	2,760명(2016.12.31.기준)
관련기관	비장관부처(Non-ministerial department) 1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 1개, 비부처 공공법인(Executive non-departmental public body) 31개, 비부처 자문기관(Advisory non-departmental public body) 4개, 공기업(Public corporation) 3개, 기타기관(Other) 3개	문화지방사무국(DRAC, DAC)19개, 문화지방서비스(Nouvelle- Calédonie, Mayotte et Saint-Pierre et Miquelon)3개 공공기업(établissements publics) 76개, 행정을 위한 공공건물(établissements publics administratifs) 56개(지역의 건축학교 20개, 예술학교 5개 포함), 공공상공기관(établissements publics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19개, 과학, 문화, 직업을 위한 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culturel et professionnel)1개, 국내관할 서비스(Services à compétence nationale) 24개	소속기관 (국립문화예술기관) 16개, 산하기관 33개
2018년 예산	6,539백만 파운드	9,906백만 유로	5조 2,578억 원
주요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 영국이 살기 좋은 곳이며, 일하고, 방문하고, 투자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영국을 홍보 - 성장 :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에 대한 접근 제공 - 영토의 사회적 응집성과 경제적 역동성 촉진 - 유럽, 프랑스 및 국제 문화 활동의 재건에 기여 - 창조와 예술가를 지원하고 프랑스의 문화적 다양성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균형있는 문화 :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문화 기초 강화, 지역간 균형 발전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 문화의 일상화 실현, 생활문화 거점 확충, 기초 문화생활 보장

	영국	프랑스	한국
	- 디지털 : 영국을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제로 만들고 디지털 전환 추진 - 참여 : 문화 및 스포츠 참여 및 사회적 행동 극대화 - 사회 : 미디어, 자유 언론 및 공동 사회 지원	델 보존 - 언론 및 공공 방송의 독립성, 다원성 및 역동성에 기반한 민주적 모델 강화 - 행동 양식에 글로벌하고 혁신적인 문화 정책 실행	-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신규 서비스 창출, 해외시장 확대, 문화행정 혁신

자료 : DCMS(2016),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영국 정부 홈페이지(www.gov.uk), Ministre de la Culture(2018), PROJET DE LOI DE FINANCE 2018,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http://www.culture.gouv.f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인사혁신처(2017) 2017 인사통계연보

주 : 영국 예산은 복권기금을 포함

- ④ 국가의 재정운용 체계, 특히 중앙과 지방 정부간 관계는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
- ④ 주요국(프랑스, 영국)의 문화재정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족, 사회문제 해결비용, 경기침체 등으로 문화재정 지출 효율화 요구를 겪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 효과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음
- ④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사업 축소와 쇠퇴, 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문화관련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추진하고 있음
- ④ 첫째, 프랑스와 영국은 재정적으로는 문화관련 중앙부처에서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혹은 기금, 교부금)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문화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였음
 - 프랑스는 82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특별교부금(dotation culturelle spéciale)’을 설치
 - 더하여 프랑스는 2013년 올랑드 정부에서의 문화예산 축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협정(Pactes culturels)을 체결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
 - 영국은 2018년 지역 간 문화적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발전기금(CDF, Cultural Development Fund)을 설치·운영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세입보다 세출이 항상 많고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도록 되어있어, 지방분권 시 사무이양과 재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함
- ④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문화격차 보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④ 둘째, 프랑스와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협약이나 계약 방식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프랑스는 문화부를 대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DRAC에서 지자체 및 민간과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eveloppement culturelle)을 맺고 있음
 - 일반적으로 DRAC이 협약내용을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하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협약내용을 초기제안하고, 이를 서로 문서화하고 세부 사안에 대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후속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협약함
 - 영국은 문화부와 산하기관 간에 사업운영협약서(Management Agreement)을 작성하며, 협약 사항에는 우선순위, 성과지표(KPI), 의무, 책임 및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조건이 명시됨
 -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약 4-5개로 상호 협의하여 실현가능한 계획과 타겟을 설정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하기관의 재량으로 추진하되, 산하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Tailored review(산하기관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함
- ④ 다만 협약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업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단계 역시 단편적인 재무활동에 대한 평가를 넘어 조직단위에서의 목표달성을 측정하고 있음
- ④ 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단순한 지원 관점이 아닌 재정사업의 성과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임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top-down식 보조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협약형태의 파트너십을 고려할 경우 실행사업별 다양성과 신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책방향과 목표치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 하에 수평적 관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④ 셋째, 문화사업의 성과주기를 고려하여 다년간(3년~5년) 사업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프랑스 DRAC과 레지옹의 협약은 다년간(3년, 5년 등) 추진을 기본으로 하며, 레지옹이 DRAC에 문화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신청하고 DRAC의 검토에 의해 협약이 체결됨
 - 영국 ACE 예산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며((1) National portfolio (2) Project funding system (3) Development funds ACE) 이 중 지원금을 기관 혹은 단체에게 4년간 장기 지원하는 예산은 NP(National portfolio)임
- ④ 긍정적인 점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3년이상 중장기 시각으로 사업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때문에 실행조직은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관리 관점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제 6 장

문화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 1 절 | 문화재정운용 개선 원칙과 방향

제 2 절 |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 개선방안

제 3 절 | 재정 및 정책사업 전달 단계 개선방안

제1절 | 문화재정운용 개선 원칙과 방향

- ④ 주 52시간제도 도입으로 적극적인 시간정책(노동시간 축소, 여가시간 확대 등)이 추진됨에 따라 여가시간을 채우고 삶의 질 향상 영역과 인접한 문화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정교한 정책 디자인이 요구됨
- ④ 한편 오늘날 정부의 재정운용은 단순 공급이 아닌 다양한 국민의 수요에 맞춰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방식을 요구받고 있음
- ④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해지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은 투입 위주에서 성과와 책임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 ④ 그러나 문화재정의 81.4%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칸막이식 재정 구조와 보조사업 전달 체계의 복잡화 등 재정구조 상 비효율성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음
- ④ 또한 지방분권화 움직임에 따른 지역의 충분한 재정적 대응 역량에 대한 고려, 중앙정부 문화재정의 역할 변화 등 중앙정부가 효율적, 효과적인 문화정책 실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재정운용 상의 과제가 있음
- ④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정 지출효율화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움직임에 따른 쟁점사항(지역 간 문화격차 확대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분야 재정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주요국의 문화재정운용 상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④ 본 연구에서 문화재정운용 개선의 원칙은 첫째, 지출의 효율성 강화로, 지난 10년이상 양적확대에 중심을 둔 문화사업에 대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함

- ④ 둘째, 재정사업 성과기반 확충으로, 보조사업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성 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재정투자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인식해야 하며 지자체 및 민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함
- ④ 셋째 지속가능한 재정 보장으로, 여러 정책분야 중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투자 당위성에 의견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 변화에 따라 문화재정이 종속적으로 따라가기에 경도되기 보다는 정책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④ 이러한 원칙 하에 문화재정운용 개선 방향은 첫째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 개선방안으로 문체부 예산편성 조정 및 성과관리, 지속가능한 문화재정 확보 노력이 필요함
- ④ 세부과제로 ①문체부의 전략적 재정투입 구조와 원칙 설계 ②예산편성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 강화, ③문체부 내 성과목표 설정과 공유, 확산 ④기금 융합계정 운용, ⑤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함
- ④ 둘째, 재정 및 정책사업 전달 단계 개선방안으로 전달체계 기능 재조정, 성과관리 중심의 정책사업 지원이 필요함
- ④ 세부과제로 ①전달체계의 사업영역과 역할 재정립, ②지역의 문화서비스 전달조직 진단과 정보시스템 구축, ③문체부와 공공기관 간 KPI 협약, ④보조금 배분기관의 민간단체 성과관리 강화 등을 제안함

제2절 |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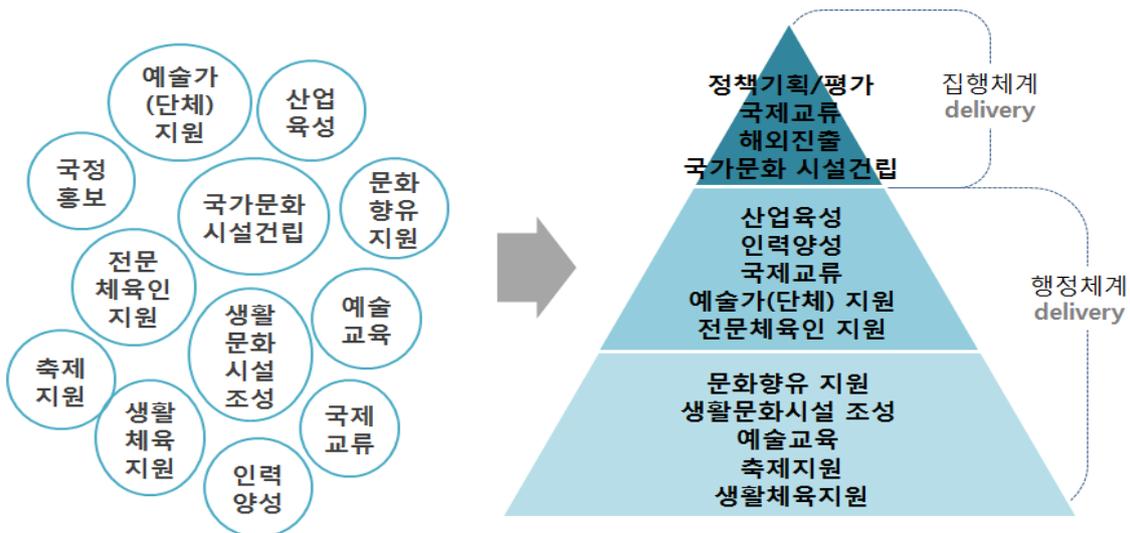
1. 문체부 예산편성 조정 및 성과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액다건형 지원체계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추진, 중앙부처 행정인력 낭비 등의 지적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간 사업 구조조정, 유사사업 통폐합 등을 추진해 왔음
 - 소액다건형 보조사업은 세분화된 사업 건건이 사업대상 선정, 집행, 성과관리 및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비 보다 간접비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예산계산, 정산 등)이 더 필요로 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존재
 - 중앙정부의 역할인 정책 수립, 평가, 조정 등 정책적 지원에 집중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자를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함
 - 또한 실·국에 소관 된 사업이 비슷하게 추진되어 유사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지원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지원 금액으로 인해 동일한 아이টে서 다른 회계(기금)를 통해 중복 지원 신청을 야기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 그러나 유사사업에 대해 부분적·미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통폐합은 단기간에는 사업개수 감축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신규 사업 등 자연발생적으로 다시 유사한 사업이 빈번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통제하지 못함
- ◉ 따라서 정책설계 및 조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함
- ◉ 사업관리의 효율성(사업관리 행정비용 절감, 정책수립 및 성과확산 업무 집중), 예산분석 및 통계관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2) 과제 1 : 문체부의 전략적 재정투입 구조와 원칙 설계

- ④ 재정 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특성상 진흥적 성격에 의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SEED 사업으로 소액다건 지원이 불가피한 구조일 수 있음
- ④ 오히려 무조건적인 통합 구조조정은 소액다건이 타당한 사업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와 소액다건이 필요한 분야를 분류하여 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④ 즉 ‘선택과 집중(탁월성, 전문성)’, ‘다수의 보편지원(다양성, 보편성)’ 유형별로 구분 접근하여, 배분원칙과 성과측정 기준을 설계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사업 성과관리를 도모함
- ④ 전략적 사업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사업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집행체계에 배부하고 다수의 보편지원 사업은 보조금을 배분하는 행정체계에 배부함
- ④ 단 현재의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원칙 없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전달체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그림 6-1] 문체부 재정투입 전략(예시)

- 이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유형별 사업을 구분하고, 정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큰 틀의 방향이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략유형별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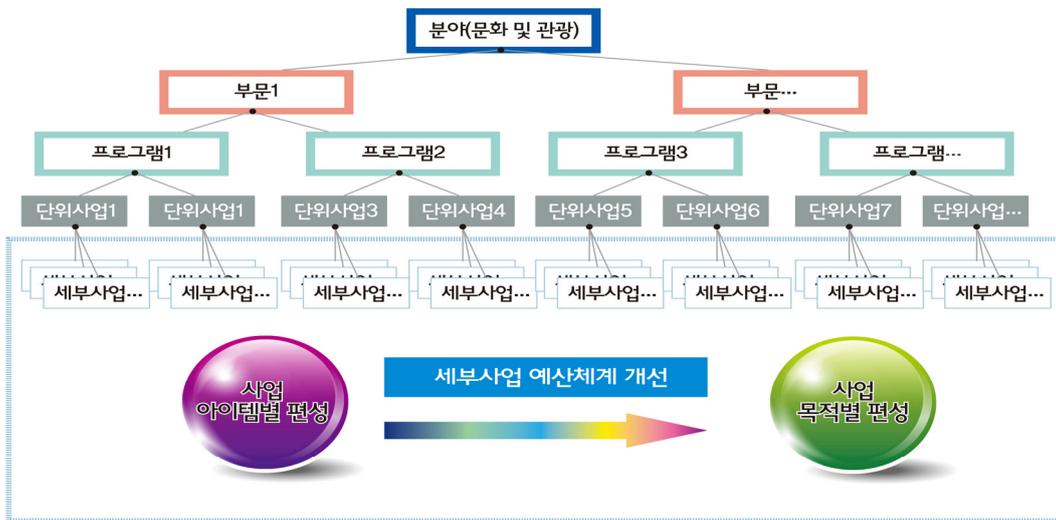
〈표 6-1〉 문체부 재정투입 전략(예시)

선택과 집중(탁월성, 전문성)	다수의 보편지원(다양성, 보편성)
-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뛰어난 예술가나 단체, 관광 대상지 혹은 상품, 전문체육인 등은 대상이 제한되기에 단순한 개발 및 활성화 목적이 아닌, 전문적 무대화나 국내외 진출·활동 등에 집중 지원	-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작품개발 및 보급, 전 국민 여가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

- 재정투입 전략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일정 합의가 된 다음단계에서는 문체부 내 각 실국의 사업담당부서에서 기존의 사업영역 내에서 ‘선택과 집중’, ‘보편적 지원’이 구분되는 가를 점검 및 재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연계해야 함
- 동일한 사업영역에서 ‘선택과 집중(대규모, 탁월성, 전문성)’과 ‘보편적 지원(소규모, 다양성, 보편성)’으로 예산규모와 투자전략이 구분 설계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목표와 지향점이 달리 요구되어야 함
- 예를들어 선택과 집중의 경우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전역량이 충분해야 하고 사후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하고, 보편적 지원의 경우 다수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사업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함

3) 과제 2 : 예산편성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예산의 연계 강화

- ④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액다건 지원이 필연적이라면 세분화된 사업들이 부서 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현재의 사업 아이템 중심의 예산편성 구조를 정책사업 목적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체부 예산편성은 개별 부서에서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접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간 연계성 및 포괄성이 떨어지기 쉬운 구조임



[그림 6-2]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조정(안)

- ④ 세부사업의 정의와 범위, 특징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한 수준에서 유사·연계 사업은 통합하는 등 예산과목 구조 상 사업의 연계성과 체계성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
- ④ 즉 예산서 내에서 최하위 분류체계이자 문체부 관리영역인 세부사업 단위를 일정규모의 중분류 단위로 단순화하여 정책목표 달성에 용이한 성과관리 단위로 예산을 편성함
-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원칙에 따르면 프로그램(program)은 문체부의 기능과 문화, 체육, 관광부문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단위사업(activity)은 상호 배타적이고 차별화된 명칭으로 특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세부사업(task)은 예산분석 및 통계기능이 적합하도록 중분류 체계로 단순화되어야 함

- 재정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기능중첩 배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축소, 세출규모 감축, 지출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예산집행 경로를 (세부사업 단계) 축소시키는 것이 유리함
- 세부사업 중분류로 중앙부처인 문체부는 소액 보조사업까지 직접 교부하거나 소규모 민간단체를 지정, 관여할 필요 없이 세부사업의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본연의 업무인 정책결정 및 사업평가·관리에 능률을 올릴 수 있음
- ④ 이에 세부사업은 기반, 창작, 매개, 인력, 향유, 지역 등의 배타적인 기준의 큰 틀을 설정하고, 틀에 맞춰 각 부서의 목표에 따른 정책사업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음

〈문체부 세부사업 분류 판단기준(예시)〉

기반 : R&D, 정보화, 통계 및 평가, 제도운영 등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창작 : 예술인, 전문체육인, 전문단체 등에 대한 보호와 활동 지원하는 사업
 매개 : 시설건립 및 운영, 국제교류 등 문화·체육·관광과 국민을 매개하는 사업
 인력 : 인력양성, 인력교육, 예술교육, 기업 및 산업,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사업
 향유 : 문화복지, 축제, 생활체육 등 정부가 생산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사업
 지역 : 정책적 목표와 수혜대상이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

- ④ 다만 예산편성 조정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조직구조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조직구조 내에서 실국의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업무영역을 재배치해야 하며, 조직개편 시에는 정책목적과 예산과목 구조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4) 과제 3 : 문체부 내 성과목표 설정과 공유, 확산

- ④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이행 결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
- ④ 문체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5개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과제별 성과목표를 측정가능하게 설정하고 이를 부처 내 부서별 성과와 연결하고 전달체계와의 목표치 공유가 중요함

- ④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조직구조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별 담당부서를 명확히 확정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천과제를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동일 국정과제 내에서 실천과제별 성과의 효과성과 시너지가 부족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를 통해 목표 달성치 점검 및 환류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필요
- 현재의 조직구조가 국정과제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할 필요도 있으며, 국정과제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

〈표 6-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시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별 책임성과제가 가능함 - 국정과제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국정과제 내의 실천과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동일한 국정과제 내에서 실천과제 간의 융합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가 변경 및 수정될 경우 다시 조직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정분야의 사업이 많을 경우 특정정책실이나 특정 정책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 현재의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④ 국정과제별 주요사업의 국정목표 달성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실행 부서와 협의하여 측정 가능하고 성과 창출에 적절한 목표 달성치를 결정할 필요
- ④ 성과 목표치 설계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바람직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왜곡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측정치가 구체적, 체계적,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가 중요
- 국정과제별 실천과제에 대한 성과 목표치가 불분명하거나 부적합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정과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
- ④ 앞서 문체부가 이행해야 하는 국정과제의 실천과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목표치가 추상적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설정이 요구되며 다음과 같음

〈표 6-3〉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정과제의 성과목표치 구체성 검토

국정과제	실천과제	성과 목표치	지표 구체성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17년 6만원→ '21년부터 10만원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22년 360만명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
	예술인복지 강화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방안 강구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공정한 제작·유통환경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	뉴콘텐츠 육성·확대	△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한류팬17년 6천만명→ '22년 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학당 지속 확대	◎
국정과제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생활체육 환경 조성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	△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홍보	◎

국정과제	실천과제	성과 목표치	지표 구체성
국정과제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대체공휴일 확대('18년 관련 규정 개정)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지속 관광품질인증제 법적근거 마련('18년 적용)	△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육성	◎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3대 전략시장(일본, 非중국 중화권, 아중동) 향한 관광객 850만명,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

* 주 : ◎ 목표치가 구체적, △목표치의 구체성 부족

- 이 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정책 목표와 대상의 변화, 사회변화에 맞
춰 기존의 공급중심의 총량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정책 목표와 대상의 변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나 방법론은 기존의 총량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지표와 방법론 수준에 치
중되고 있음
 - 과거 문화정책은 시설확충이나 공급지표를 통해 정책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
으나, 삶의 질이 국정 전반의 가치로 부상하고 보편적 문화향유, 생활문화 활
성화 등이 문화정책 목표로 강조되면서 수요지표 필요
 - 현재의 기반시설 수, 관람률, 인력배치율 등 총량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지표
만으로 문화정책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로 정책성과에도 국민이 체감
하지 못하는 한계

2. 지속가능한 문화재정 확보 노력

1) 현황 및 문제점

- ④ 문화사업은 의무지출과 같은 필요조건이 아닌 목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에 대한 당위성에도 입장에 따라 의견차가 있으며, 재정 배분 역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특징을 보임
 - ④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문화적 수요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에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중요함
 - ④ 이것은 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공공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 분야 투자와 비교할 때 반드시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예술에 대한 수요가 전 국민 보편적 수요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임
 - ④ 즉 재정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사회 수요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인데 즉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지하고 그 편익이 전국적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임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국가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 정서적 교감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데 효과적이며,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순기능에 의해 반드시 확산되어야 하는 분야이자 미래세대에 더 큰 수요와 가치가 있는 분야임
 - ④ 이러한 당위성 충돌에 의해 문화사업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사업에 수혜를 받는 대상에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기금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회계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비중이 높음
 - ④ 문체부 재정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6개 기금으로 복잡한 재정구조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융합·연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직된 재정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재정의 경직성 심한 상황
- 전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사업성기금을 소관¹⁷⁾,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1.23% 소규모 수준인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다

소 복잡한 칸막이식 회계구조를 나타냄

- ④ 그러나 기금 간 여유재원(적립금) 형편에도 격차가 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자체 세입원 없이 내부전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체육기금과 관광기금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창설된 이래, 우리나라 기초문화예술의 뿌리를 40여 년간 지탱해온 대표적인 공적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함
- ④ 기금 간 재정격차로 인해 재정배분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나뉘지 못하고, 부처 내 국별 가용예산에 따라서 재정이 배분되도록 유도되고 있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됨

 - 기금이 부족한 경우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고 중요한 분야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반면, 기금이 풍부한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발생
- ④ 또한 회계 간 구분은 근본적으로 재정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사업의 지원내용이 다르게 편성되어야 하지만, 기금간의 여유자금 격차와 문화사업의 정책목표의 다원적 성격에 의해 실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사업 성격이 중첩되어 수행되기도 함

 - 부처 내에서도 더 풍부한 재정창구에 맞춰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사업이 왜곡되기도 하고,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기금간 잦은 이동으로 사업 이력관리를 저해시키기도 함
 - 이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사업목표가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형태의 경계가 불명확한 이유와, 재정 칸막이 내에서 가용자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보다 재정보호가 유리한 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임
- ④ 즉 불안정한 재정상태가 사업의 양(Quantity)과 질(Quality) 모두에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문화재정운영과 문화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17) 농림축산식품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개수인 6개 사업성 기금을 소관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18년 예산은 14조 4,996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2.6배를 초과하는 예산 규모임

2) 과제 1 : 기금 융합계정 운용

- ④ 기금은 법적 설치근거와 지출목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 내 기금 개수가 많더라도 모두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고 개별 설치근거에 부합하는 사업목적이 존재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부출연금, 타기금출연금 등 정부수입금과 민간출연금 등 자체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8년기준 수입원의 66.7%는 정부전입금(일반회계 출연, 타기금 전입금)으로 구성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근거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부출연금 등 정부수입과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등 자체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8년기준 수입원의 46.6%는 법정부담금으로 구성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복권기금 전입금 등 정부수입과 법정부담금(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경륜·경정 수익금 및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 등 자체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8년 기준 수입원의 76.1%(12,002억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구성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부출연금 등 정부수입과 법정부담금(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등 자체수입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8년기준 수입원의 대부분인 71.6%는 여유자금 회수, 15.5%(여유자금 제외시 54.4% 수준)는 법정부담금으로 구성
 -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18년 기준 정부전입금은 없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신문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18년 기준 수입원의 93%는 정부전입금(일반회계)으로 구성

〈표 6-4〉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영화발전 기금	언론진흥 기금	지역신문 발전기금
설치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지역신문발전지 원특별법 제13조
설치 목적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스포츠산업진흥,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	신문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성 채원	-정부출연금 -타기금전입금 -민간출연금(건축 주미술작품설치 대신출연금, 기부 금품) -기금운용수익금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카 지노납부금, 출 국납부금) -옹자이자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 수익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골프장 부가금) -기금운용수익금 -사업수익금	-정부출연금 -법정부담금(영 화관 입장권 부 과금) -기금운용수익 금	-정부출연금 -재산수입 및 경 상이전수입 -기금운용수익 금	-정부출연금 -재산수입 및 경 상이전수입 -기금운용수익 금
자체 채원	-경륜경정 판매금의 24.5%, -뉴서울골프장 입장료 -아르코예술극장 대관료	-카지노사업자 매 출액의 10% -출국납부금	-경륜경정 판매금의 42%,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금의 33% -회원제골프장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3%)	-	-
18년 수입 구성	-총 수입: 3,481 자체수입 : 614(17.6%) 정부수입 : 2,321(66.7%) 기타 : 546(15.7%) * 66.7% 정부전입금	-총 수입: 12,113 자체수입 : 8,860(73.1%) 정부수입 : 250(2.1%) 기타 : 3,003(24.8%) * 46.6% 법정부담금	-총 수입: 15,764 자체수입 : 13,518(85.8%) 정부수입 : 743(4.7%) 기타 : 1,503(9.5%) * 76.1% 투표권 판매수익금	-총 수입: 3,262 자체수입 : 605(18.5%) 정부수입 : 322(9.9%) 기타 : 2,335(71.6%) * 15.5% 법정부담금	-총 수입: 331 자체수입 : 206(62.2%) 정부수입 : 0 기타 : 125(37.8%) * 0% 정부전입금	-총 수입: 86 자체수입 : 1(1.2%) 정부수입 : 80(93%) 기타 : 5(5.8%) * 93% 정부전입금

- ④ 그러나 문화, 체육, 관광이 연계 혹은 융합된 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업용도가 복수의 분야에 관련되어 있기도 함
- ④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보다 실제 사업이 포괄적인 용도로 추진되는 사례인데, 주로 문화, 체육, 관광 영역을 연계하는 사업이면서 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등 특정기금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임
- ④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1인당 연간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예기금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관광기금, 체육기금에도 사업용도가 연계되어 있음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은 2014년 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각각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에 대한 3개 바우처 사업이 통합되었고, 각 기금에서 마련되던 재원은 문예기금으로 일원화되었음
- ④ 관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문화관광축제지원’, ‘공예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해외교류’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는 사업용도가 문예기금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음
 - 축제를 지원하는 관광기금의 ‘문화관광축제지원’은 문예기금의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의 축제지원과 사업 속성이 유사하고, 이외 문화예술관련 컨텐츠육성, 해외교류 등 사업이 문예기금의 용도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 ④ 체육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전문인력양성 내 문화예술분야 사업’,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체육·문화예술 진흥 내 문화예술분야사업’ 등은 문예기금의 용도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등과도 관계되어 있음
- ④ 이와같이 특정 기금에서 타 기금 영역을 포함하거나 분야를 통괄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문예기금과 관광기금은 법상 규정된 기금의 사용용도가 다소 추상적이고 개방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부처 내 모든 정책영역을 망라할 수 있기 때문임
 -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출을 하기위해 별도로 설치 및 운영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의 설치목적은 수입원과 관계되는 지출분야로 보다 한정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 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체육기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상 기금의 사용용도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취약(소외)분야 및 문화예술 진흥을 포함하여 관련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일정배분 비율 범위 내에서 '체육·문화예술분야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 ④ 즉 국민체육진흥법 상으로 체육기금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및 취약분야 육성, 진흥 등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여 법상 설치목적과 용도 간의 연계성은 충족되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유사한 사업용도가 규정되어 있어 기금 간 중복수행의 여지가 있음
- ④ 설치목적이 기금 간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기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금은 분리되어 있으나 목적이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
- ④ 따라서 특정 목적을 위해 각각 별도로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목적은 중첩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④ 복권류로 분류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공익사업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투자하는 요지라면 체육기금의 문화예술관련 투자금액은 문예기금으로 전출하여 문예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2개 기금을 통합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 ④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78.7%로 체육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상황에서 체육기금과 문예기금과 통합할 경우 통합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문예기금의 중요한 설치목적 중 하나인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위험을 고려해야 함
- ④ 관광기금의 경우 주요 수입원인 부담금의 운영목적과 사업용도가 통합 수용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함(납부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범위)
- ④ 2017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서 관광기금의 출국납부금은 부담금 부과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2002년 현재 판결을 고려하여 존치하되 부담금 운영원리에 부합한 지출과의 연계성 검토와 제도 개선을 공론화하는 것을 전제로 존치로 평가하였음

 -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관광수지 적자를 억제하고 국내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출국자라는 특정집단에게 부과하는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의 부담금으로 '97년 신설, '98년부터 모든 국외여행자에게 1만원을 부과
- ④ 관광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출국납부금의 부과원리가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 부담금인데, 국내 관광을 유도하는 주요 유인원이 문화적 콘텐츠임
- ④ 즉 관광이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험을 수반하므로 국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담하는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광의의 문화사업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④ 실제로 관광기금의 사업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은 사업실행 영역에서 공예산업 지원, 예술인 국제교류 지원, 축제지원 등 문화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일부 배정하고 있는데 문예기금 사업 영역과 중첩될 여지가 있음

구분	기금용도 및 수입원	사업용도(검토사례 사업)
문화예술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주요 수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6.7% 정부전입금(일반회계,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82,103백만원)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당 연간 7만 원,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24,707백만원)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제(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육성과 국민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외 전략적 진출 도모
관광진흥 개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 관광상품개발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 국내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 -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등 용자지원 등 ○주요 수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6% 법정부담금(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축제지원(5,539백만원)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공예관광산업 육성(4,510백만원)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예산업 조사, 연구, 상품개발, 공예마을 육성, 유통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등 지원 ○문화예술 해외교류(3,541백만원) 우리문화 해외소개 및 교류를 위해 국제문화예술 해외교류, 해외전통문화예술인파견지원 등 추진
국민체육 진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체육활동 및 사업지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체육단체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 지원 - 청소년육성기금, 경륜·경정사업, 종합유선방 송사업 등 출연·출자 등 ○주요 수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7% 투표권 판매수익금(스포츠토도 수익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양성 내 문화예술분야(4,329백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양성, 작은도서관 인력지원, 건축, 공예, 미술, 출판 등 인력양성, 박물관·미술관 교육아카데미, 문화이모작, 국제교류 전문인력양성 등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11,961백만원) 문화소외계층·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 출판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지원, 작은미술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 ○체육·문화예술 진흥 내 문화예술분야(2,820백만원) 문화예술 행사, DB구축, 공예활성화, 아트페어, 청년예술인력양성 및 창작활성화 등

- ④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지출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 내에서 고유목적 달성이 못할 수준의 자금상황과 필요 이상의 여유자금 보유에 대한 재정활용 검토가 요구됨
- ④ 국가재정법 제5조 및 제62조에 의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되어야 하며, 기금의 목적사업과 용도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금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④ 이에 현재의 기금들의 법률에 의한 용도제한과 실제 사업 달성여부, 재원조성(수입원)과 지출목적의 범위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지출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면 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종합적인 재정 활용 혹은 연계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④ 현실적인 수요가 문화, 관광, 체육의 융합적 사업으로 확대 전환됨을 고려할 때 기금 간 중복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의의 문화사업(문화, 체육, 관광이 연계) 추진에 단일화된 계정이 필요하고, 그 재원도 관계된 기금을 연계 및 통합하여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임
 - 검토에서 문화복지(바우처사업), 인력양성 사업, 축제지원 사업, 문화예술프로그래밍 및 해외교류 사업 등 일부 사업에 있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과 중복 추진될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④ 국가재정법에는 재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국가재정법 제5조)와 각 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에 관한 근거(국가재정법 제13조)가 마련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기금 간 여유자금의 격차가 심하여 내부거래가 복잡한 점, 기금 간 사업범위가 중첩되는 점 등의 재정간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금통합임
- ❖ 그러나 기금통합은 개별 기금의 부담금 사용에 있어서 위헌¹⁸⁾ 소지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
 - 부담금은 납부의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금 통합시에는 개별 기금의 부담금의 납부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범위가 합의되어야 함
 - 또한 각 기금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상당한 이견 상존하고 있고, 주체들이 수입원 발굴과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력의 격차가 있는 기금들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자체수입 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 ❖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문예기금 안에 융합 혹은 통합 계정(가칭, 문화체육관광 융합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은 여가사업으로 용도를 포괄하며, 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전입금으로 재원 확충하는

18) 헌법재판소에서는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①집단적 동질성(납부의무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닌 특정집단이어야 함), ②집단적 효용성(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③객관적 근접성(특정집단이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공익적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 ④집단적 책임성(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특정집단이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등 4가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④ 국가재정법상 '계정'은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는 개념(국가재정법 제21조제1항)으로 세입세출예산은 필요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연계,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위해 현실 수요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융합 및 연계사업을 특정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금의 재원이 통합된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지출하는 방안임
- ④ 혹은 예산총칙에 융합계정제도를 명시하고 유사·동일 목적의 사업을 융합계정 예산으로 편성, 국회심의를 받은 후 예산집행 시 이체·이용 등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④ 계정신설은 기금통합보다 탄력적 재정운영에 소극적인 대안이나,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를 관통하고 융합된 사업의 특정기금 지출로 인한 기금의 설치의도와 기금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기금통합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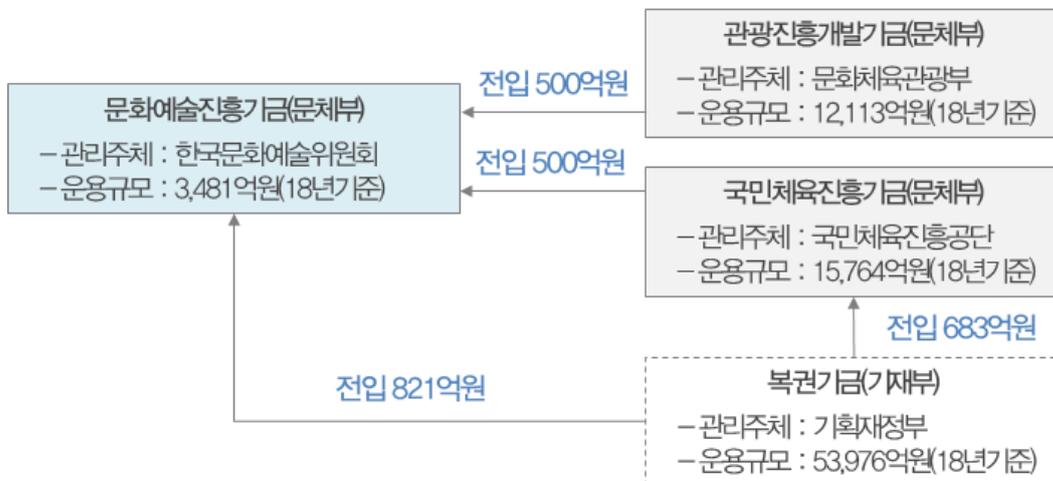
3) 과제 2 :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 모색

■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방안

- ④ 지난 20여 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기초예술을 지원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주요 수입원의 자원조달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타 기금 전입금에 매년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 영향에 노출된 상태임
- ④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1973부터 우리나라 예술진흥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며, 지금까지 기초예술을 위한 지원과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해 왔음
- ④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1년 이후 정부 출연금이 중단되고 2004

년 이후 기금 조성 재원 중 이자수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기금의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자체 수익원이 없이 타 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④ 국정과제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기금의 전입,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국정과제 68번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명시
- ④ 이에 2018년에는 2001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출연금을 재개하여 50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부터 문체부 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50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0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입하였음
- ④ 그러나 타 정부출연금과 부처 내 타 기금의 전입은 범정부에 의한 전입이 아니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고갈에 따라 임시방편 대책으로 재원을 이전한 것으로 불안정한 재원임
- ④ 따라서 현재 임시적으로 타 기금에서 전입하고 있는 수입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타 기금의 전입 법정화를 검토하며,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타 기금은 다음 [그림 6-3]과 같음



[그림 6-3]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타 기금 전입 현황(2018년 기준)

- ⑤ 첫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전입하는 방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근거와 배분비율을 직접 규정하는 방안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의 목적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문화적 경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업에서 공예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해외교류와 같은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 기금운용원리 상 타당함
 -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의 전체를 면밀히 검토할 경우, 본 연구에서 사례로 제시한 사업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게 더 합당한 사업이 다수 확인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간의 유사중복형 사업을 재배치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⑥ 둘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전입하는 방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사용하는 배분비율만큼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에 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 단체 지원 및 투표권 비발행 대상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 사업에 10%, 체육·문화예술 사업에 5%를 지원하도록 배분비율을 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 ...
-

- 18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추진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 내 문화예술분야(4,329백만원),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11,961백만원), 체육·문화예술 진흥 내 문화예술분야(2,820백만원) 등이 있음
- 기금의 운용원리는 특정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지원사업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출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위해 정하고 있는 배분률만큼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출연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④ 셋째,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법정배분사업으로 전환하고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임
- 복권기금은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약 50%)과 운영비(약 10%)를 제외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복권기금의 35%는 법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사용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5%의 공익사업 5가지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①저소득층의 주거안정, ①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③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④문화·예술 진흥사업, ⑤기타 대통령령 사업 등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4. 문화·예술 진흥사업
-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정배분사업은 각기 발행되던 10개 기관의 복권기금이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하에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의 복권수익금을 보존하기 위해 배분률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임
- 법정배분사업 중 기금으로 전출되는 분야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법정배분률이 10.371%로 명시되어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 ...

- 문화예술 정책이 과거보다 보편적 문화정책으로 확대되는 정책환경의 흐름과 「예술인 복지법」 등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호, 복지증진 등이 중요한 공익사업 영역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의 배분비율을 총액 대비 10% 이상 수준으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 모델인 영국을 비롯하여 호주는 복권기금 수익금을 문화예술분야에 25% 이상을 배분하고 있음

■ 신규재원의 조성방안¹⁹⁾

- ④ 앞서 문체부 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용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문예기금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부담금 신설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 세원 발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④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원천 자산을 문화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문화사업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의 세금을 전입하는 방안임
- ④ 첫째, 예술활동 관련 부가가치세를 문예기금에 전환하는 방안으로 공연산업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문예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 예술분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임
 - 문화산업 분야, 특히 공연산업 분야는 예술창작품의 발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의 간접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공연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순수예술 분야에 유입할 필요
 - 기존에 공연관련 수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문예기금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세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증세 논란에 부담이 적음
- ④ 둘째, 담배세 재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임
- ④ 담배의 중독적 습관이나 관련 질병치료의 사회적 비용 저감, 심리적 공허함 또는 무료함에 대한 예술의 정서적 위안 효과 등을 고려한 방안임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기금의 성격과도 연계되어 있음
 - 담배소비의 사회적 유해성과 문화예술의 연관성이 있고 2016년 담배세 인상으로 여유재원이 있다는 점과 미국, 호주 등에서 담배세를 문화목적세로 부과한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문예기금으로 유입
 -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의 일부를 문예기금에 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저항 위험에 노출되지 않음

19) 문예기금 신규재원 조성 관련한 내용은 ‘한국재정학회(2016)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음

- ④ 셋째,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과세 등 문화세를 신설하여 문예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익 창출함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임
 - 프랑스는 2014년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콘솔, 전자책 단말기 등 인터넷 기반 전자단말기에 대해 1%에서 최대 4%까지 점차 확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은 문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보류상태임
 - 한편 프랑스는 2017년 영상물 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외 모든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의 문화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국립영상센터(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에서 프랑스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사용함

제3절 | 재정 및 정책사업 전달 단계 개선방안

1. 전달체계 기능 재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 ④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전달체계를 통해 실현되므로 재정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는 전달체계의 역할이 큼
- ④ 그러나 현행 문체부 전달체계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이원화되어 유사한 보조사업이 각각 전달되거나, 서비스 형태나 기능, 내용, 수혜 대상이 중복될 여지와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한계점을 내포
 - 지자체를 경유한 민간단체는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문화예술 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시설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경유한 민간단체와 문화시설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범위 내로 사업을 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전국적인 범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최종 사업실행자가 두 개의 행정체계에 속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임
- ④ 또한 사업 수행주체 결정을 개별 사업마다 상황에 맞춰 지자체나 민간으로 결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사업들이 지자체나 민간으로 각각 전달되기도 하고, 지자체를 통해 민간으로 혹은 민간을 통해 지자체로 다시 재교부 되는 복잡한 구조를 야기하게 되었음
 -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지역의 문화재단으로 재교부하거나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서 지역의 문화재단으로 재교부하거나, 지역과 문화예술위원회가 상호 재교부하는 등의 복잡한 전달체계 사례 발생
 -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의 조직구성도 1/3은 정규직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구조

〈표 6-5〉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전달체계 유형별 주요 사업

구분	전달체계	주요 사업
직접	중앙정부 →	-정책기획/소속기관 운영 -국가단위 문화시설건립 -국정홍보 및 소통
지자체 보조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시설확충/재생/정비 -관광기반/자원개발 -컨설팅, 축제, 국제대회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사업자)	-문화진흥(지역/전통) -창작, 해외진출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주관처(읍면동) 지역 문화시설 학교	-통합문화이용권(복지) -문화 향유권 -교육(강사파견)
민간 보조	중앙정부 → 민간단체(사업자)	-종교문화활동 -기타 문화진흥/육성
	중앙정부 → 공공기관 →	-연구개발, 국제교류 -복지, 공간운영, 저작권 -인력양성, 산업육성
	중앙정부 → 공공기관 → 민간단체(사업자)	-예술창작/향유 활동 -예술교육, 산업육성 -문화진흥, 관광 활성화
	중앙정부 → 공공/민간기관(중앙) → 공공/민간기관(지부) 지역 문화시설	-문화 향유권 -생활체육 활동 -전문체육(인) 육성

- ☞ 한편 민간전달체계의 경우 문화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전달조직의 수가 늘어나 현재 33개의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능별, 장르별로 복잡하게 구성되면서 역할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재정사업은 환경변화와 현장수요에 따라 기민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분야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장 수요를 반영하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민간전달체계가 필요
- ☞ 전달체계의 복잡성은 문화정책서비스가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분산된 전달체계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서비스 전달에는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의 검토가 필요

- ④ 특히나 재정전달 기관이 복잡하게 구성될수록 관료화주의 행태로 인한 사업의 경직성 및 획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정 매개기관이 관련 사업 서비스를 수요자(단체)들에게 적절하게 지원·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2) 과제 1 : 전달체계의 사업영역과 역할 재정립

- ④ 공공전달체계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사업과 민간전달체계인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의 영역을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가 가진 이점을 종합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건립·소유하고 주민욕구에 맞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행정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
 - 공공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전문성이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을 민간에서 생산·공급하는 경우 민간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
- ④ 민간전달체계는 사업을 지원,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실행, 공급하는 집행체계의 두 가지 역할을 개별 사업 단위에서 역할을 결정하고 있으나, 행정체계와 전달체계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관의 미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체계는 정책서비스를 기획 및 지시, 지원 관리하는 역할이고 집행체계는 정책서비스를 직접 실행 및 공급하는 역할을 의미함
- ④ 왜냐하면 행정체계과 집행체계의 역할에 원칙이 없다보니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재교부, 재재교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의 중복수혜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임
- ④ 즉 보조사업을 재교부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능과, 사업의 기획, 수행하는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민간기관 전달체계의 미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공기관 간 기능 검토가 필요함
- ④ 영국의 경우 DCMS의 지원을 받는 36개 산하기관(ALBs)을 ①박물관 및 갤러리, ②규제기관, ③보조금 분배 기관, ④관광증진을 위한 기관, ⑤일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⑥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⑦방송국으로 구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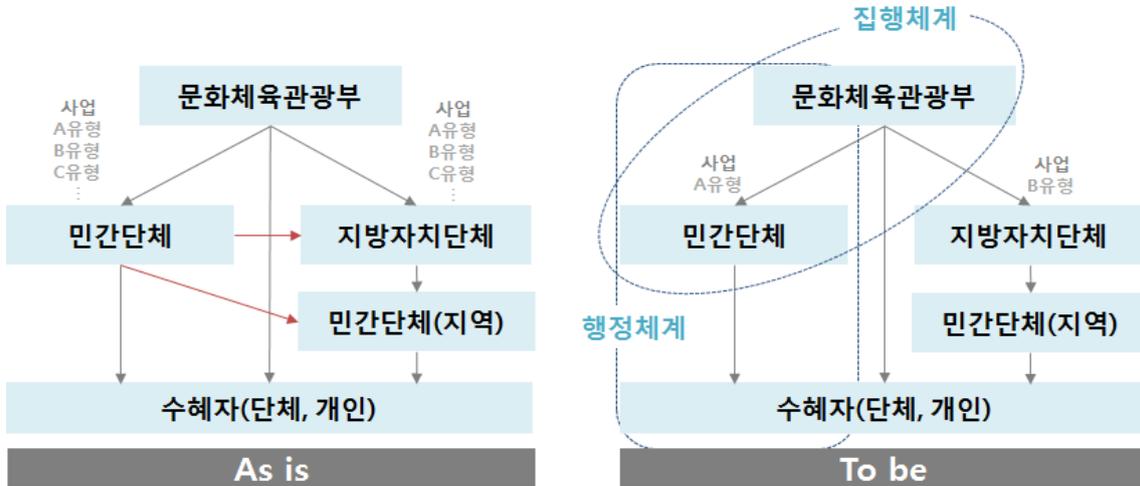
〈표 6-6〉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산하기관(ALBs)

박물관 및 갤러리	1) British Library 2) British Museum 3) Geffrye Museum 4) Horniman Public Museum and Public Park Trust 5) Imperial War Museum 6) National Gallery 7) Natural History Museum 8) National Museums Liverpool	9) National Portrait Gallery 10) Royal Armouries Museum 11) Royal Museums Greenwich 12) Science Museum Group 13) Sir John Soane's Museum 14) Tate 15) Victoria and Albert Museum 16) Wallace Collection
규제기관	1) Gambling Commission 2)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3) Ofcom	4) Phone Pay Plus 5) Sports Ground Safety Authority
보조금 분배 기관으로 각 영역별 증진이 목적	1) Arts Council England 2) British Film Institute 3) Heritage Lottery Fund 4) Historic England	5)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 6) Sport England 7) UK Sport
관광 증진을 위한 기관	1) Visit Britain	2) Visit England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	1) Churches Conservation Trust	2) The Royal Parks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 Horse race Betting Levy Board	2) UK Anti-Doping
방송국	1) BBC	2) S4C

자료 : DCMS(2016),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5/16; 정보람(2016) 재인용

- ④ 보조금 배분기능과 집행기능의 역할구분에는 우선 기금운용기관은 중앙관서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재정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전달 주체이므로 행정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미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④ 이외의 민간보조의 경우 민간전달체계의 운용 원리가 사업실행 영역에서의 전문적 개입이므로 회계 상의 이유 혹은 기관설립 근거 상에 사업배분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통한 배분을 엄격히 금지하고 사업 실행기관으로서의 집행체계 역할을 부여해야 함

- 현재는 장르별, 기능별 각종 연합회 및 협의회(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박물관연합회 등)에서도 회원사에게 보조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수직화, 관료화를 가중시키고 있음



[그림 6-4] 지자체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 사업영역 재정립(안)

3) 과제 2 : 지역의 문화서비스 전달조직 진단과 정보시스템 구축

- 다양하고 세분화된 문화서비스 수요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향후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문화서비스 주요 제공자로서 지자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과 역량에 차이가 심한 실정임
 - 중앙정부 자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역사전통, 자연환경적 지역여건을 고려한 재정투자가 중요한 문화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임
 - 지자체 의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일선(시군구, 읍면동)에서 지역민에게서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매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문화재단은 18년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7개소(광역 16개소, 기초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자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문화재단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등의 위탁으로 시설운영이나 축제 운영 등의 대행 역할에 그치기도 함
-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각기 다른 것은 지역간 문화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국민 문화생활의 균질한 성장과 균등한 제공,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진단 및 분석이 필요함

- 지자체 중심의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역별, 개인별로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맞춤형 접근의 서비스가 해당 정책의 질과 효과를 담보하기 때문임
- ④ 전달조직 진단은 지역의 문화서비스 전달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유형화하여 바람직한 생활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조직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함
- ④ 구체적으로 지역의 문화재단 기구와 정원, 기능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문화재단의 효율적 조직운동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자체 조직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
- ④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단과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인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수평적 측면에서 어떻게 협력하게 할 것인가(주체, 서비스 제공 협력방법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 내 문화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자원의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음
- 생활권과 밀접한 문화사업은 지역의 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과 지역기반 문화예술조직간에 긴밀한 소통과 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과정이 중요함
- ④ 한편, 지역 내에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기반시설에서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중첩과 보조사업 수주를 위한 조직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함
- 일부 지역 내에서 문화재단보다 오래 전부터 문화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해 온 조직이 있기도 하며(지방문화원, 문화예술회관 등), 이들 조직 간에 역할 중복, 경쟁구도에 대한 지적이 있음
- ④ 기능중첩의 배제, 지출관리 효율성 제고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과 재정의 흐름이 눈에 보이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임
- ④ 재정의 흐름에 대한 정보는 성과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사업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유사·중복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협업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음
- ④ 또한 재정사업의 생성부터 환류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투자이력이 누적되면 다년간, 주기별 성과평가 등 사업의 성과추적과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단년도 사업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집행위주의 관리방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성과관리 중심의 정책사업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④ 문체부는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개수가 많고 전달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간 개별 사업단위에서 집행관리와 사업별 투자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④ 그러나 집행 중심의 사업관리는 단순 예산투입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왜곡된 사업방향으로 치우치더라도 보정이 어렵고 보조 수혜자는 예산수급에만 관심을 가질 우려가 큼
 - 재정사업의 결과는 단순 예산투입에 대한 결과(output)가 아닌 사업운용에 대한 성과(outcome)를 요구함
 -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단년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사업 특성에 맞지 않는 왜곡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사업의 목표와 무관하게 참가율, 집행률 등 경직된 지표를 적용할 수밖에 없음
 - 이렇다 보니 사업수혜자 입장에서는 성과 창출을 통한 자생력 확보보다 일회성 예산 수급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높음
- ④ 보조사업이 많은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를 주요한 부처 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함
- ④ 중앙정부에서는 문화정책 본연의 역할 등을 고려한 투자 목적이나 방향을 보여주는 비전, 지표 설정 필요하고, 사업 실행기관에서는 정책목표와 사업수행 특성에 적절한 지표를 발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이 필요함
- ④ 또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 강화 등 성과평가를 통해 실행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학습할 있도록 유도하는 문체부 자체적인 성과제고 노력이 중요함

2) 과제 1 : 문체부와 공공기관 간 KPI 협약

- ④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인 정책적 의사결정과 광역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 전달체계인 공공기관은 정책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④ 이러한 역할분담을 위해서는 문체부와 공공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합의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지금보다 세세한 사업에 대한 관심은 줄이고 성과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 ④ 한편 공공기관은 문체부에 대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사업에 대한 제안과 기획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단순한 사업실행을 넘어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데, 문체부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협력강화 기반으로 협약제도 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음
- ④ 협약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민간에게 재정을 보조하는 단순한 지원 관점이 아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위한 협력을 조율하는 성과 관점의 사업추진 기반을 의미함
- ④ 즉 사업의 전달방식이 공권력에 의한 top-down식 행정행위가 아닌 실행사업별 다양성과 신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책방향과 목표치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 하에 수평적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④ 앞서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협약이나 계약 방식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프랑스는 문화부를 대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DRAC에서 지자체 및 민간과 문화발전협약(conventions de developement culturelle)을 맺고 있음
 - 일반적으로 DRAC이 협약내용을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하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협약내용을 초기제안하고, 이를 서로 문서화하고 세부 사안에 대하여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후속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협약함

- 영국은 문화부와 산하기관 간에 사업운영협약서(Management Agreement)을 작성하며, 협약 사항에는 우선순위, 성과지표(KPI), 의무, 책임 및 모니터링 활동 등에 대한 조건이 명시됨
- 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약 4-5개로 상호 협의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과 타겟을 설정하며,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하기관의 재량으로 추진하되, 산하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Tailored review(산하기관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환류함
- ④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협약 사례에서 중요한 발견은 상호 협약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세부 실행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사후 평가단계에서 단순 재무활동을 넘어 조직단위에서의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점임
- ④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협약단계에서 중앙부처의 정책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성과를 협의하고, 공공기관은 사업실행과 함께 평가를 기관 업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top-down식 보조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협약형태의 파트너십을 고려할 경우 실행사업별 다양성과 신축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책방향과 목표치에 대해서 명확한 협의 하에 수평적 관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④ 구체적으로 문체부와 공공기관 간 협약체계는 먼저 문체부가 공공기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당해연도 정책방향 및 중점사업 방향을 시달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및 협약계획을 제출함
- 공공기관은 성과지표 설계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문화정책 방향과 목표를 이해하게 되고 조직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게 됨
- ④ 문체부와 공공기관 간에 성과협약이 체결되면 공공기관은 협약을 이행하고 문체부와 공공기관 간에 정기회의를 추진하여 협약이행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함
- ④ 회계연도 사업 종료 시점에서 문체부와 공공기관 간 협약내용 이행상황과 핵심성과지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와 차년도 예산을 연동함

3) 과제 2 : 보조금 배분기관의 민간단체 성과관리 강화

- ④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동시에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장애로 인한 문화향유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문화정책은 예술과 관계된 대상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인 문화서비스 영역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범위가 보다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④ 특히 생활권 내의 다양한 여가서비스의 보편화는 기존의 공공조직을 통한 서비스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 영역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실제 문체부 사업의 2/3는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④ 이에 따라 정책사업에서 민간영역과의 협업과 민간단체의 성과관리가 한층 복잡하고 중요한 영역이 되었으며,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조치가 필요함
- ④ 그동안 문체부는 민간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의 투명성에 방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왔으나, 이와 맞물려 민간단체들이 적절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이 중요함
- ④ 사업을 설계 및 추진하는 조직 단위에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이 성과관리체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실행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사업 추진방법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임
- ④ 따라서 사업실행 조직에서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성과주기, 성과목표 등에 대한 사전 협약 과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④ 앞서 프랑스와 영국 사례에서는 협약 혹은 계약 관계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3년 이상 중장기 시각으로 사업의 목표와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기 때문에 실행조직이 성과관리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가능하였음
- ④ 성과협약은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시적인 목표치 설정 자체가 사업의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사업 실행 조직의 기능과 역할,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음

- ④ 또한 협약을 통한 관계는 다년 지원으로 단계적 성과관리와 사업의 이력 관리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④ 이 과정에서 단기간 성과측정이 어렵고 중기적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인 문화 사업의 성과주기를 고려하여 성과주기가 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 다년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재정, 사업기간, 조직경영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가능함
 - 유형적인 산출물에 대하여 가성비로 성과가 측정되는 제조업 분야와 비교할 때 문화분야 사업의 산출물은 무형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측정이 어렵고 성과주기가 일정치 않음
- ④ 단 협약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업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초기부터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협의한 다음 강도 높은 사업평가와 컨설팅이 연결되어야 함
 - 사업의 효과성 제고, 불합리한 지원의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와 의사결정을 위한 민관합동 평가단을 구성
- ④ 즉 협약 체결 시 정책의 목표를 공유하고 지자체 및 산하기관과 성과목표를 협의하여 명확하게 설계하여 사업의 성과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속지원을 제공하고 엄밀한 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해야 함
- ④ 평가 역시 단편적인 재무활동에 대한 평가를 넘어 조직단위에서의 목표달성을 측정하고, 사전에 협약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다년간 지원협약을 하였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그림 6-5] 협약을 통한 사업추진체계(안)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2018), 대한민국재정 2018.
- 국회예산정책처(2016), 주요국의 재정제도.
- 국회예산정책처(2014),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사업평가, 14-08.
- 기획재정부(각 연도), 기금현황.
- 기획재정부(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 김경식, 이루지(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
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424-433.
-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서울 : 코난북스.
-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
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대한민국정부(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예산·기금운용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서우석(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 양혜원(2013),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
정책논총 27(1), 9-29.
- 윤소영, 정보람(2015), 문화융성시대의 문화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세출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9(1), 5-26.
-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
총, 30(2), 264-287.
- 이윤식, 제갈돈, 김주환, 김홍률, 심광호, 윤기석, 박재신(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
가제도, 서울: 대영문화사.

- 인사혁신처(2017), 2017 인사통계연보.
- 정보람(2016), OECD 주요국가의 문화재정 비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성경, 김세준(2012), 공연예술 관람빈도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경영연구, 22, 5-28.
- 최상미, 전재현, 정무성(201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 - 문화접근성과 정서적 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6(4), 177-194.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2015), 장래인구추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
- 한국재정학회(2016)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행정안전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ACE(2017), Our National Portfolio in numbers, 2018-22.
- ACE(2017), Annual Report & Accounts 2016/2017.
- ACE(1998), International Data on Public Spending on the Arts in Eleven Countries.
- Baumol, W.J. & Bowen, W.G.(1966), 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 The MIT Press.
- Cameron, S.(1991), The Socio-economic Effect of the Arts-National Arts and Media Strategy Discussion Document, London: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 Coffman, D. D., & Adamek, M. S. (1999), The contributions of wind band participation to quality of life of senior adul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7(1), 27-31.

- D'Angelo, M., & Vespérini, P. (Eds.). (2000), *Cultural policies in Europe: regions and cultural decentralisation*. Council of Europe.
- DCMS(2017),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6/17*.
- DRAC(1993), *Les conventions de développement culturel: un milliard en dix ans*", n 98 dossier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cultur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Enzo Grossi, Pier Luigi Sacco, Giorgio Tavano Blessi, Renata Cerutti(2010), *The Impact of Culture on the Individual Subjective Well-Being of the Italian Population: An Exploratory Study*,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 HM Treasury(2018), *STATISTICAL BULLETIN: PUBLIC SPENDING STATISTICS MAY 2018*.
- Fujiwara, D.(2013), *Museums and happiness: The value of participating in museums and the arts*, Arts Council and Musuem of East Anglian Life.
- Greffe, X., & Pflieger, S. (2009).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 (No. 5294-5296). Documentation française.
- HM Treasury(2018), *Public Spending Statistics release: May 2018*
- Matarasso, F.(1997), *Use or Ornament? The Social Impact of Participation in the Arts*, Stroud: Comedia.
- Michalos, A. C., and Zumbo, B. D.(2000), *Criminal Victim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245-295.
- Ministère de la Culture(2018), *PLF 2018 un budget de transformation*.
- Ministre de la Culture(2018), *PROJET DE LOI DE FINANCE 2018*.
- Ministère de la Culture(2018), *Chiffres clés 2018*.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1992), *"Patrimoin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coll.
- Musgrave, R.A.(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 McGraw Hill.
- Netzer, D.(1978), *The Subsidized M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O'Brien, D.(2010), *Measuring the Value of Culture: A Report to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London: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OECD(2017), *Employment Outlook*.
- OECD(2016),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 Philippe Poirrier & René Rizzardo(2009), *Une ambition partagée?: La coopération entre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1959-2009)*, Paris : Documentation française.
- Schick, Allen.(1997), *The Changing Role of the Budget Office*, OECD(available on internet, <http://www.oecd.org/puma>).
- Schuster, J.M.D.(1987), *Making Compromises to Make Comparisons in Cross-National Arts Policy Research*,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1, pp. 1 - 36.
- Silverstein, M. & Parker, M. G.(2002). *Leisur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Sweden*. *Research on Aging*, 24(5), 528-547.
- Tepper, S. J., Sisk, B., Johnson, R., Vanderwerp, L., Gale, G., & Gao, M.(2014). *Artful liv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practic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ree national surveys*. The CurbCenter for Art,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at Vanderbilt University.
- Toffler, Alvin.(1964), *Culture consumers*. New York : St. Martin's Press.
- UK government(2016), *Department, agencies and public bodies*.
- Wheatley, D. and Bickerton, C.(2017), *Subjective well-being and engagement in arts, culture and spo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1(1), 23 - 45.
- Wood, N., & Smith, S. J.(2004), *Instrumental routes to emotional geographies*.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5(4), 534-548.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main.jsp>

OECD 통계 <http://stats.oecd.org/index.aspx>.

세계은행 데이터 <https://data.worldbank.org>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ement-for-digital-culture-media-sport>

영국 예술위원회 <https://www.artscouncil.org.uk/>

프랑스 문화매체부 <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hg/hg001/retrieveMain.do>

■ 부록 1 : 설문지

‘문화분야 재정지출’ 에 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분야별 재정 및 문화분야 재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분야 재정지출과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의 견해를 알아봄으로써 문화분야 정책수요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참여자의 신상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으며, 정책자료 목적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문항은 13개이며 약 5분~10분이 소요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

- 조사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 윤소영 연구위원, 정보람 연구원
- 조사담당 : 강다영 위촉연구원
- 제출처 : 112dy@kcti.re.kr
- 문의전화 : 02-2669-8916

※ 본 조사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획 및 재정관련 부서와 문화 및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V표시 혹은 1, 2, 3 으로 우선순위 표시로 응답해주시고, 응답지는 조사담당자(강다영 위촉연구원, 112dy@kcti.re.kr/ 02-2669-8916) 이메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에 관한 인식 ■

1. 올해 국민소득(GDP) 3만달러 달성 전망을 고려할 때, 국민 최소한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해야 할 과제(정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개 중 우선순위 3개를 숫자로 표시)

구 분	(우선순위 3개) 1, 2, 3 숫자표시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2.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개 중 우선순위 3개를 숫자로 표시)

구 분	(우선순위 3개) 1, 2, 3 숫자표시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3.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경제적, 사회적)에 중요한 예산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개 중 우선순위 3개를 숫자로 표시)

구 분	(우선순위 3개) 1, 2, 3 숫자표시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 정책 분야별 재정운용에 관한 인식 ■

4.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바람직한 재정지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현재보다 많은 지출수준, 현재 지출수준 적정, 현재보다 적은 지출수준 3개 중 1개에 V표시)

구 분	현재보다 많은 지출수준	현재 지출수준 적정	현재보다 적은 지출수준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5.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의 자체사무(국고보조→자체예산 필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개 중 우선순위 3개를 숫자로 표시)

구 분	(우선순위 3개) 1, 2, 3 숫자표시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6. 지방분권으로 지자체의 자체사무(국고보조→자체예산 필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후순위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0개 중 후순위 3개를 숫자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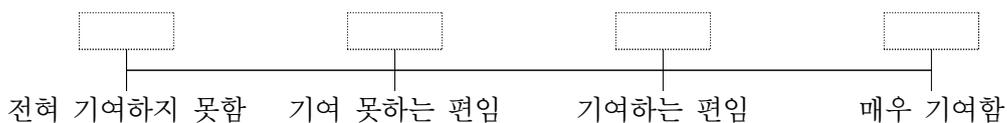
구 분	(후순위 3개) 8, 9, 10 숫자표시
사회복지·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	
SOC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 문화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역할에 관한 인식 ■

7. 다음의 문화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고려할 때,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중앙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아님 3개 중 1개에 V표시)

no	구 분	중앙정부 책임	지자체 책임	정부의 책임 아님
7-1	저소득층 문화생활 바우처			
7-2	문화예술교육			
7-3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7-4	문화유산 보존·활용			
7-5	문화기반시설 조성			
7-6	예술인 지원(창작여건 개선 등)			
7-7	융복합콘텐츠 개발 및 기업육성			
7-8	근로자 휴가지원			
7-9	관광지 조성			
7-10	관광코스 개발/온라인 플랫폼 운영			
7-11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7-12	지역주민 사업체 육성 지원			
7-13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7-14	시군구 스포츠클럽 운영			
7-15	공공체육시설 조성			
7-16	체육지도자 배치			
7-17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8. 귀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관광분야' 재정투자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어느정도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네모안에 V표시)



■ 문화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 ■

9. 현재 지역 간 문화격차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네모안에 V표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격차가 전혀 없음	문화격차가 거의 없음	문화격차가 약간 있음	문화격차가 매우심함

10. 지역 간 문화격차가 있다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네모안에 V표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당연히 정부의 책임 아님	정부의 책임 아님	대체로 정부의 책임	당연히 정부의 책임

11. 지방분권화가 지역 간 문화적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네모안에 V표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격차를 줄일 것임	문화격차와 관련 없음	문화격차가 확대될 것임

12. 지역 간 문화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번)

- ① 지자체의 문화사업 개혁(선심성 사업 퇴출, 부정수급 방지, 성과관리 등)
- ② 중앙정부의 문화분야에 대한 재정보조 확대
- ③ 지자체 차원에서의 세출구조조정으로 문화분야 예산 확보
- ④ 기타 (_____)

13. 기타 문화분야 재정지출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기본 정보 ■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들로서 응답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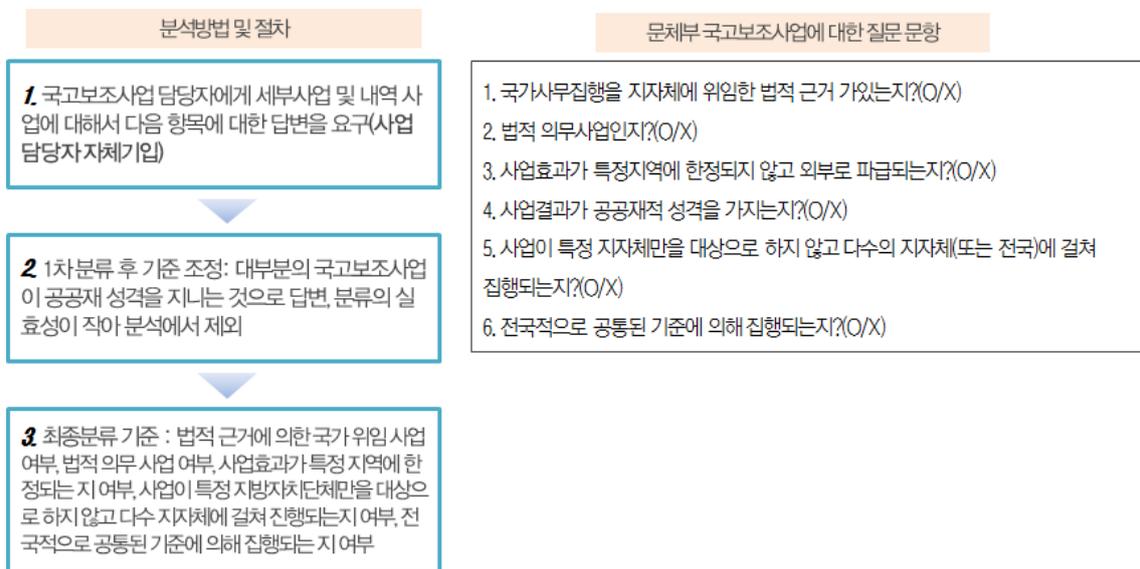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가 근무하는 자치단체 명은?	_____
4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명은?	_____
5	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은?	총 _____ 년
6	현재 직급(업무)의 근무기간은?	총 _____ 년 또는 총 _____ 개월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조사는 통계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 2 : 문체부 국고보조사업 자체점검

- ④ 문체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의 사무 영역을 점검해보고 자 개별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⑤ 이하 내용은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한 작성으로 예산서 상 드러나지 않는 개별사업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나 담당자의 사업이해도에 따라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의 사무구분을 판단하는 예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⑥ 먼저 문체부 내 국고보조사업 담당자에게 각 세부사업 및 내역 사업에 대해서 다음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음
 - 1. (지자체보조사업일 경우) 국가사무집행을 지자체에 위임한 법적 근거 가있는지?(O/X)
 - 2. 법적 의무사업인지?(O/X)
 - 3.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지?(O/X)
 - 4. 사업결과가 공공재적성격을 가지는지?(O/X)
 - 5. 사업이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지자체(또는전국)에 걸쳐 집행되는지?(O/X)
 - 6.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지?(O/X)

- ④ 자료 조사 후 분류를 해 본 결과 소수의 민간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이 4번 항목인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답변하여 분류의 실효성이 작아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④ 따라서 답변 항목은 법적 근거에 의한 국가 위임 사업 여부, 법적 의무 사업 여부,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 여부, 사업이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진행되는지 여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 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였음
- ④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과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분한 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지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분류함
- ④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음

 -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야 하나 사업 집행을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류함.
 - 국가 위임사업이 아닌 법적 의무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도 있음. 따라서 법적 의무사업은 사업의 효과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성격의 사업이고, 사업이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집행되거나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 등 추가적인 사업 성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음
 - 법적으로 국가 위임 사업이 아니고 법적 의무사업도 아니지만, 사업의 효과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성격의 사업이고, 사업이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집행되거나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이면서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류함

■ 국가 위임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 ☞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법에 의해서 국가가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국가 위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은 아래와 같음

〈국가 위임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 전통사찰 보존	22,359
			○ 충청 유교문화원 건립	2,170
			○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000
			○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2,000
			○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900
			○ 세계성모순례성지 및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1,000
			○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1,000
			○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1,600
			○ 고창유교문화체험관건립	900
			○ 전국기독교순교자순례센터 조성	900
			○ 무소유 불교문화기념관 건립	300
	○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800		
	일반회계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지자체)
광고산업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행사지원(지자체)	600
			○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670
기초예술역량강화		평창문화 올림픽 지원	○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10,070
문화예술공간조성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2,689	
박물관 정책 활성화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17,689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 운영	○ 도서관 운영지원	15,917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4,999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중심 도시육성 (지자체)	○ 문화도시환경조성 및 산업육성	9,443
지역발전특별회계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 읽기 쉬운 안내체계 구축	45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지역문화 행사지원	○ 종교문화행사 지원	1,485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제주)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제주)	○ 전통사찰보수정비	232
			○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100
	문화시설확충및운영 (세종)	문화시설 확충및운영 (세종)	○ 전통사찰보수정비	33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생활)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생활)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콘텐 츠 지원	3,900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세종)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세종)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콘텐 츠 지원	870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 개발(생활)	○ 관광지개발	25,223
			○ 문화관광자원개발	181,636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1,914
			○ 광역권관광자원개발	3,857
			○ 관광안내체계구축	3,098
			○ 국민여가캠핑장조성	7,850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470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10,739
	광역관광자원개발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조성 (경제발전)	○ 관광진흥사업(대구)	2,000
			○ 낙동가람 수변문화역사길(대구)	1,000
			○ 관광진흥사업(경북)	3,800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안동)	14,000
			○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봉화)	4,000
			○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	7,000
			○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	10,000
			○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고령)	2,964
			○ 신화랑풍류체험벨트(영천)	2,053
			○ 낙동강이야기나라(상주)	4,225
			○ 황악산하야로비공원(김천)	8,708
			○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	320
			○ 녹색문화상생벨트(예천)	10,000
			○ 신라문화탐방바닷길(포항)	2,025
			○ 초전지역사로드(구미)	6,747
			○ 동의참누리원(영천)	2,946
			○ 동의참누리원(경산)	1,400
			○ 신라본역사지움(의성)	3,626
			○ 솔누리느림보세상(청송)	2,700
			○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영덕)	1,000
○ 금강송예코리움(울진)	1,218			
○ 선성현문화단지(안동시)	6,70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 무섬지리문화경관(영주)	2,947	
			○ 누정휴문화누리(봉화)	6,000	
			○ 산촌문화누림터(영양)	7,000	
			○ 태평성대경상감영(상주)	2,750	
			○ 동해안연안녹색길(영덕)	1,598	
			○ 거꾸로 옛이야기숲(상주)	1,000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경제발전)	○ 동강 녹색모험의 숲(정선)	1,493	
			○ 녹색관광 정거장 조성(영주)	435	
			○ 간현관광지 녹색충전 지대조성(원주)	1,681	
			○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조성(태백)	1,509	
			○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상주)	1,000	
			○ 섬강 감성문화마을 조성(횡성)	1,609	
			○ 소백산하늘자락공원(예천)	270	
			○ 지질예술공원(단양)	500	
		○ 장수발효고택마을(영주)	858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조성 (경제발전)	○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강화)	1,575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	1,000	
			○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옹진)	930	
			○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철원)	1,000	
			○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철원)	1,500	
			○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양구)	1,600	
			○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인제)	1,000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종합관광센터(파주)	1,524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경제발전)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천안)	699	
			○ 논산근대역사문화촌(논산)	700	
			○ 백제역사너울옛길(부여)	1,000	
			○ 매운고추체험나라(청양)	500	
			○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500	
			○ 삼례삼색마을조성(완주)	757	
			○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조성(완주)	250	
			○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진안)	1,500	
			○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순창)	700	
			○ 대장금 테마파크조성(정읍)	208	
			○ 옛 다솜 이야기원(남원)	415	
			○ 무주 태권마을 조성(무주)	1,000	
			○ 태조 희망의 숲 조성(임실)	217	
		○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	154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관광자원 개발(제주)	○ 관광지개발	8,300
				○ 문화관광자원개발	400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100
			제주관광 진흥지원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 제주관광진흥지원	1,200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기초 관광자원개발(세종)	관광자원	○ 관광안내체계구축	80	
		개발(세종)	○ 탐방로안내체계구축	65	
	관광레저 개발 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경제발전)	○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영암-해남)	25,000	
		체육진흥시설지원	체육진흥 시설지원 (생활)	○ 생활체육공원 조성	12,972
	○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2,804	
○ 지방체육시설 지원	91,935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15,160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765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예술지원	○ 지역문화예술 지원	7,389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24,707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82,103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35,336	
		국민체력 인증	○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	8,062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 충주국제무예센터 건립	1,960	
	시도 생활체육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스포츠강좌 지원	20,142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민체육 센터 건립지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31,400
				○ 다목적체육관 건립	23,420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150
		기초생활 체육 저변확산 지원		○ 창원개방형체육관	2,500
				○ 문화체육복합플렉스	5,050
				○ 순천 유청소년다목적수영장	1,500
				○ 금천다목적문화체육센터	750
				○ 성북 체육문화센터	2,000
				○ 창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00
○ 충주시 유소년축구장 조성				1,000	
○ 금촌문화체육센터 건립	600				
공공체육 시설 개보수 지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6,902		
		○ 창원 야구장 건립	5,000		
		○ 광주 축구전용구장 조성	1,80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1,000
	학교체육 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1,817
	시도전문체육	전국(소년) 체전 지원	○ 전국체전 지원	5,798
○ 전국소년체전 지원			9,761	
○ 전국체전시설 건립			18,842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자원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폐광지역 관광상품 지원	13,85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539
		관광레저 기반 구축	○ 관광자원화 지원	9,950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	○ 진도여행종합안내센터 건립	500
	관광인프라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보조)	○ 캠핑산업 관광 활성화 지원	5,569
		전통문화 체험 지원	○ 전통문화 체험시설 지원	8,597
		전통문화 체험 지원	○ 전통문화 관광활성화 지원	3,796
		핵심관광 지 육성	○ 핵심관광지 육성	24,001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보조)	○ 문화관광축제 지원(지자체)	5,039
	국내관광육성지원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 지역관광개선	10,913
	해외관광객유치활동 사업	의료 및 웰니스 관광육성	○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1,500

■ 국가 위임 사업인 민간 국고보조사업

- ④ 민간 국고보조사업 중 법적으로 국가가 민간단체에 위임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음.

〈국가 위임 민간 국고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양성	1,645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력인증	○ 국민체력인증 기반구축	1,020
			○ 장애인체력인증센터운영	651
	생활체육시설 지원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 생활체육 정보제공	5,176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	200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 한류관광 활성화	3,740	
		○ 평창올림픽 관광 활성화	2,72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자원 활성화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생태녹색관광 육성	2,546
			○ 걷기여행길 및 코리아모빌리티	3,159
			○ 코리아 둘레길 조성	3,080

■ 법적 의무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 ④ 법적 의무사업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아래와 같음. 그런데 아래의 법적 의무 사업들은 모두 사업의 효과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성격의 사업이었음. 따라서 아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적 의무 사업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지역·전통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 문화의달 행사지원	300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예술교육 확대	9,495
○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18,352	

■ 법적 의무 사업인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 효과 범위, 대상이 여러 지역인 사업

- ④ 법적 의무 사업인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라도 반드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임.
- ④ 따라서 법적 의무사업인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의 효과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로 파급되는 성격의 사업이거나 특정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집행되거나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집행되고 있어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다음과 같음

〈법적 의무 민간보조사업 중 사업 효과 범위, 대상이 여러 지역인 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양성	1,645
	문화정책지원	국민문화활동지원	○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7,622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25,482
			○ 법난위원회 운영	37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대중문화예술진흥	4,433
			○ 패션산업 육성	3,115
			○ 만화산업 육성	11,123
			○ 이야기 산업 활성화	6,049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인건비	5,806
			○ 경상비	1,925
			○ 고유사업비	4,000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5,261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1,646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5,953
			○ 국내저작권 보호활동	8,118
○ 해외 저작권보호 협력			4,043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664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425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저작권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70	
			○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지원화	4,475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834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구축 (정보화)	○ UCI 운영 및 활성화	1,244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등록저작물 영구보존환경 구축	378
				○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550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3,350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3,945
	미디어산업육성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미디어 시장조사	270
	출판산업육성	출판산업육성		○ 출판산업 육성지원	23,653
				○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2,897
				○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	953
		한국출판산업 진흥원 지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479
	지역·전통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1,716
				○ 문화적 도시재생	400
기초예술역량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 국립한국문학관	3,000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59,779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36,800	
박물관 정책 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특화도서관	5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365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 지원	○ 문학창작육성	3,275	
			○ 시각예술육성	2,801	
			○ 공연예술창작육성	22,085	
			○ 기초예술사이버공간 개척	270	
			○ 국제예술교류지원	5,760	
			○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2,941	
			○ 현장예술인력 육성	10,70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23,813
			○ 예술경영지원센터	4,600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 공연나눔	36,016
영화발전 기금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160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4,900
			○ 충주국제무예센터 운영	703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학교체육활성화	11,505
			○ 학교·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	15,066
			○ 심판 양성 및 지원	5,161
			○ 전문인력 양성	9,064
			○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11,961
	○ 체육·문화예술 진흥	10,992		
	대한체육회 지원	주최단체지원	○ 주최단체 지원	127,409
	체육인복지사업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장애체육인복지사업	4,919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R&D)	○ 스포츠서비스기술개발	1,000
			○ 스포츠융복합 기술개발	4,275
			○ 기획평가 관리비	319
○ 경기력 향상서비스 고도화			450	
○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950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650	
○ 기획평가관리비			106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유원시설 안전관리	1,224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 관광통계개선	1,162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1,020

□ 국가 위임, 법적 의무 사업 아니면서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이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 ☞ 법적으로 국가 위임 사업도 아니고, 법적 의무 사업도 아니면서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이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음

〈국가 위임, 법적 의무 사업 아니면서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이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문화정책지원	문화여가 정책 개발 및 진흥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지자체)	140
	지역·전통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100
		전통문화 진흥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600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 전통생활문화 활성화(지자체)	2,226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도서관 기반조성	4,033
○ 인문정신문화 확산 지원(지자체)			300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생활)	○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지자체)	6,206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1,59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생활)	○ 작은영화관건립지원	5,043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9,832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10,100
			○ 문예회관 건립 지원	12,867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1,740
			○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5,389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1,855
			○ 전통문화진흥 지원	10,072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8,286
			○ 생활문화센터조성	8,036
			○ 복합문화시설 조성	2,800
			○ 지역문화 컨설팅지원	302
			○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	854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316			
○ 문예회관 건립	1,500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725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 육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시도 장애인체육 지원	1,69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734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육성지원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도시관광 육성(지자체)	3,800
			○ 관광 편의성 제고(관광 교통 편의 제고-관광교통안내서비스 개선)	180
	해외관광객유치 활동사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2018 국제와이즈맨 여수세계대회	500

■ 국가 위임, 법적 의무 사업 아니면서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이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 ☞ 법적으로 국가 위임 사업도 아니고, 법적 의무 사업도 아니면서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에 걸쳐 집행되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다음과 같음

〈법적 의무 사업 아니고 사업 효과 및 대상, 범위가 여러 지역이면서 전국 공통 기준 집행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단위: 백만 원)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국립박물관 운영	박물관문화재단지원	○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186
	국제문화 교류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지원	916
		국제문화 정책지원	○ 수교기념 계기 문화행사	3,093
	국어문화진흥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1,554
			○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24,064
			○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150
	기초예술역량 강화	예술창작활동 지원	○ 국립한국문학관	3,000
			○ 예술정책사업 지원	577
			○ 한민족문화예술지원	900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인건비	2,087
			○ 경상운영비	688
			○ 사업비	3,42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5,21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343
		함께누리 지원	○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5,330
			○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1,250
	예술의 산업화 추진	○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2,040	
		○ 예술상품의 유통채널 다각화	859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	140
			○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대규모 작품 제작	2,030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대국민 소통활성화 지원	3,592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개선	○ 도서관 서비스 개선	1,650
		해외작은도서관 조성(ODA)	○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630
	문화산업기관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 인건비	16,680
			○ 경상운영비	4,383
			○ 사업비	99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인건비	3,406
			○ 경상운영비	350
			○ 사업비	7,662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인건비	2,355
			○ 경상운영비	250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 인건비	3,680
	○ 경상운영비		696	
	○ 사업비		4,505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59,779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36,800
		문화예술ODA	○ 문화예술 ODA	200
	국제관광교류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사업연수(ODA)	○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1,425
	문화정책지원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 문화여가 정책개발	1,709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3,033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대중문화예술진흥	4,433
			○ 패션산업 육성	3,115
○ 만화산업 육성			11,123	
○ 이야기 산업 활성화			6,049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조성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콘텐츠분야 기업육성 지원	54,583	
		○ 콘텐츠분야 인재 육성	13,932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 콘텐츠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538	
		○ 기술료 사후관리	123	
		○ 콘텐츠산업정보포털운영	804	
		○ 공정상생 환경조성	135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기반 조성	10,43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 문화콘텐츠 국제교류협력 강화	3,329	
		○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9,291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 조성	1,332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9,100	
			○ 콘텐츠누림터 조성	1,000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영상산업 육성	833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1,897	
			○ 캐릭터산업 육성	8,448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음악산업 육성	7,678	
			○ 건전한콘텐츠이용환경조성	738	
			○ 콘텐츠 인재양성 기반 구축	475	
		게임산업육성	○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	32,700	
			○ e스포츠활성화	2,508	
			○ 건전 게임문화 조성	7,256	
			○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3,000	
		가상현실콘텐츠육성	○ VR 콘텐츠 제작지원	8,200	
			○ VR 콘텐츠 인프라 구축	2,600	
			○ VR 콘텐츠 활성화	1,100	
	미디어산업육성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잡지산업 기반구축	1,737	
				○ 미디어 시장조사	270
	박물관 정책 활성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특화도서관	50	
			박물관 진흥지원	○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1,537
			○ 박물관 운영 활성화	4,626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8,150	
				○ 방송영상콘텐츠창작기반구축	235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204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4,645
				○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지출지원	6,133
				○ 방송영상콘텐츠 행사지원	360
			광고산업 활성화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400
				○ 광고창작 경연지원	200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 공공디자인 인프라 구축	3,469	
				○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1,000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3,581
				○ 대한민국건축문화진흥	181
			미술진흥기반구축	○ 미술품 유통 및 감정기반 구축	2,750
				○ 미술창작 및 향유지원	1,548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 공공미술프로젝트	1,354	
			○ 미술관 활성화 기반 구축	214	
			○ 전통예술의 세계화	705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인문정신문화확산 지원	16,022
				○ 세계평화대회	50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3,231
				○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1,147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지원	929
				○ 기념공원 조성	8,872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1,552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 국민독서문화 확산	3,507
				○ 병영독서활성화	2,983
				○ 인문독서예술캠프	1,000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개발	3,350	
			○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3,945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5,953
				○ 국내저작권 보호활동	8,118
				○ 해외 저작권보호 협력	4,043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664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425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인건비	5,806
				○ 경상비	1,925
				○ 고유사업비	4,0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5,261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1,646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570	
			○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지원화	4,475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834	
	국가디지털콘텐츠식 별체계구축(정보화)		○ UCI 운영 및 활성화	1,244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등록저작물 영구보존환경 구축	378	
		○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550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25,482	
			○ 원불교역사문화체험관 건립	1,380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법난위원회 운영	371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종교문화활동지원	○ 국제종교교류 협력	1,029	
			○ 종교문화활동 지원	8,428	
			○ 종교의 사회적 통합기능 강화	3,361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4,570
		종합정책연구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 문화체육관광 종합 통계 개발 및 운영	1,163
	지역·전통문화 진흥	지역문화 진흥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1,716
				○ 문화적 도시재생	400
				○ 지역문화역량 강화	300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배치	1,528
				○ 생활문화 활성화	1,150
				○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200
				○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사업	10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788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국제분담금 지원	120		
	전통문화 진흥	○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2,812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관리 및 확산(R&D)	○ 도서관 핵심기술 개발	809	
	출판산업육성	출판산업육성		○ 출판산업 육성지원	23,653
				○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2,897
				○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	953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479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국가이미지 홍보		○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4,635	
			○ 해외홍보콘텐츠제작	6,24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 회계	문화중심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 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9,450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25,815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 미얀마 문화예술활용 역량강화	85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창작역량 강화	예술창작 지원	○ 문학창작육성	3,275	
			○ 시각예술육성	2,801	
			○ 공연예술창작육성	22,085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 기초예술사이버공간 개척	270	
			○ 국제예술교류지원	5,760	
		예술인력 육성	○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2,941	
			○ 현장예술인력 육성	10,700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문화예술사회적인식 제고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예술경영지원센터	23,813 4,600	
		소외계층문화역량 강화	○ 공연나눔	36,016	
영화발전 기금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영화제작 지원	○ 영화 제작 지원	10,625	
			○ 국제공동제작 지원	2,468	
		영화유통 지원	○ 영화 유통 및 인프라 지원	5,709	
			○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영화제 지원	4,074 4,623	
	영화산업기초 인프라강화	첨단영화기술육성	○ 첨단영화 제작지원 ○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883 835	
		영화정책지원	○ 영화정책지원 ○ 영화 향유권 강화	2,202 3,331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160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 지원	지역신문발전 지원	○ 지역신문 역량지원 ○ 공익성 활동지원	2,441 3,939
			신문발전지원	뉴스미디어진흥	○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뉴스유통구조개선	○ 뉴스유통 지원		3,755	
언론공익사업	○ 미디어교육사업 ○ 읽기문화진흥사업	3,026 3,017			
	○ 신문윤리심의지원	1,780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 스포츠종목 보급	11,288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스포츠클럽육성 및 리그대회지원	13,370 17,696
		○ 생활체육대회지원 등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2,586 4,131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1,800 410	
		생활체육시설 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 체육인교육센터 설립운영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학교체육 육성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26,972
	도박문제 예방치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 도박문제 예방 홍보 ○ 도박중독 치유 재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2,624 8,221 6,587
	대한체육회 지원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	27,833
○ 체육정보망 구축			1,271	
한국동계스포츠육성		○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	3,184	
		○ 동계종목 우수선수 육성	7,425	
우수선수양성지원		○ 국가대표훈련 지원	42,492	
		○ 선수촌 운영	22,970	
		○ 우수선수육성지원	19,263	
주최단체지원		○ 주최단체 지원	127,409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3,788	
		○ 대한민국 스포츠인 역사 보존	870	
체육인재 육성	○ 체육인재육성재단 기관운영비 지원	259		
	○ 체육분야 현장전문가 교육	1,245		
체육인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 체육인복지사업	12,138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장애체육인복지사업	4,919	
국제체육 지원	국제체육교류 지원	○ 청소년체육교류	1,709	
		○ 국제체육교류	1,337	
		○ 남북체육교류	100	
		○ 국제대회참가	6,390	
	도핑방지활동지원	○ 도핑방지위원회 운영 지원	1,963	
		○ 도핑방지위원회 활동 지원	2,798	
		○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	1,000	
		○ 평창동계올림픽 도핑검사비	4,005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3,573	
		○ 국제대회 유치개최 역량 강화	700	
	태권도 진흥	○ 태권도 세계화	9,750	
		○ 태권도교육 연구지원	1,110	
		○ 태권도 프리미엄 산업 생태계 창출	3,376	
		○ 국기원 명소화	3,000	
		○ 태권도 문화콘텐츠 개발·보급	15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태권도 진흥재단 운영	5,413	
			○ 태권도원 운영 등	12,920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대회 지원	○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4,300
				○ 개도국 선수 합동훈련 과정	623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1,425
				○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2,227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 스포츠 동반자프로그램(ODA)	1,501
	○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			4,046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 올림픽공원 운영지원	23,935	
		올림픽스포츠복합플렉스 조성	○ 올림픽스포츠복합플렉스 조성	27,372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 기업 경영 지원	8,683	
			○ 인력 양성 지원	4,440	
			○ 첨단기술 기반산업 혁신	8,628	
	장애인체육 육성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5,513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 및 건립지원	4,16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5,108	
			○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15,295	
○ 장애인 국제체육 지원			18,798		
○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3,674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자원활성화	관광레저기반 구축	○ 레저관광 활성화	900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162	
			○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16	
			○ 관광투자유치 지원	300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 관광안내소 운영	2,440	
			○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3,745	
			○ 관광경찰 협업	100	
			○ 관광안내표지판 가이드라인 고도화	80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관광산업활성화 기반 구축	6,360	
			전통문화체험 지원	○ 템플스테이 지원	23,000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 (보조)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	500		
관광상품육성 지원	공예관광산업 육성	○ 공예산업진흥기반 구축	4,080		
		○ 공예문화 확산	430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국내관광육성 지원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 양성	207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카지노아카데미	514
			○ 관광숙박종사원 교육 및 진흥지원	60
			○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206
			○ 관광산업 종합 채용박람회	700
			○ 호텔 아카데미 육성지원 등	428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 국내관광 활성화	13,445
			○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	4,914
			○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300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관광기업 발굴 및 지원	2,090
			○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지원	987
			○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2,000
		스마트관광 활성화	○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3,215
			○ 스마트 관광 기반조성	1,404
			○ 관광정보화	2,788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R&D)	○ 관광코스 안전·연계 시스템 개선 기술 지원	1,100
			○ 기획평가관리비	108
		해외관광객 유치 활동사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관광상품 개발 지원			3,170
	○ 고품격 관광활성화			9,500
	○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1,711
	○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3,635
	○ 관광 편의성 제고			2,440
○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1,500			
○ 국제관광기구 협력	1,154			
○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	572			
○ 크루즈 관광 활성화	887			
○ 대국민 국외여행 공적서비스 제공	534			
○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	1,020			
한국관광 해외광고	○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18,800	
	○ 한국관광 외국어 사이트 운영		2,870	
	○ 홍보물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4,074	
	○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2,077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예산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인건비	43,542
			○ 경상운영비	22,992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의료관광육성	4,617
			○ 웰니스관광 육성	1,325
		MICE산업육성 지원	○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2,602
			○ MICE산업 육성	22,376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1,952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1,360
			○ 테마관광 활성화	5,380
			○ 음식관광 활성화	1,800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한스타일 육성지원	○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600
			○ 전통문화 대표분야 육성	2,835
			○ 전통문화융복합 자원발굴	700
			○ 한복진흥센터 지원	360
			○ 한식문화진흥	1,034
문화예술 해외교류		○ 국제문화예술 해외교류	3,427	
		○ 해외전통문화예술단 파견	114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